

AI·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외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정이력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핵심사항 정리

전략물자는 수출자가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음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제도 준수가 필요합니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을 수출하려는 자(기업 등)는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에 두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전문판정, 수출허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전략물자 통제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의 이중용도품목으로써 전략물자로 통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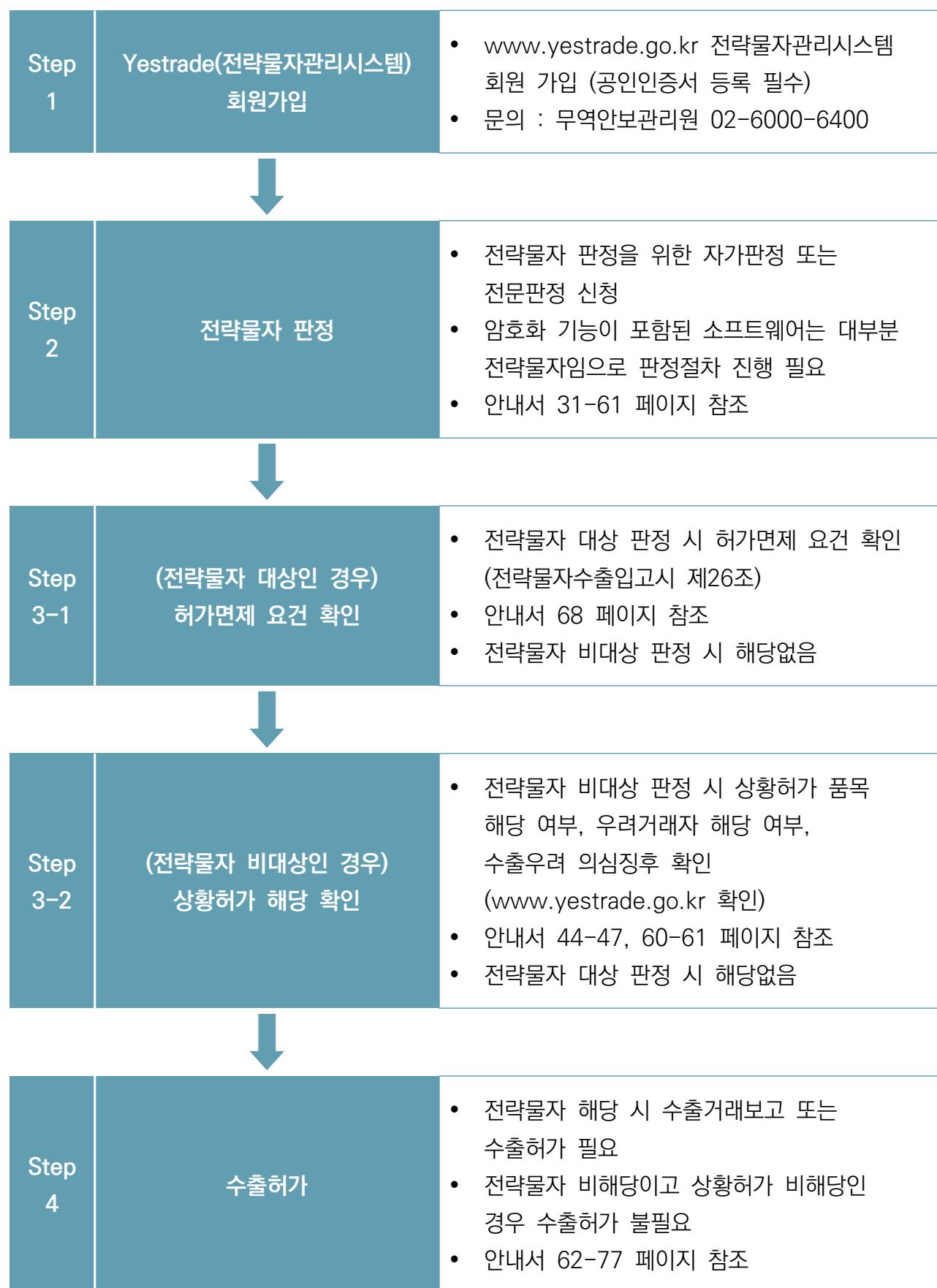
- 모든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보안 프로토콜(예: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예: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 길이가 56비트(bit)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이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허가 대상이 됨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7장(벌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무허가 수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인 경우)
- 과실범에 대한 제재, 양벌규정까지 존재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책 적용 가능)
- 기타 수출허가 관련 서류를 보관(5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 통제품목임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전한 수출을 위해, 수출자는 수출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시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준수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자신신고를 할 수 있음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이 있음
 -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직접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기준, 면제/예외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임
 - 전문판정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명시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판정이며, 소프트웨어 제품과 많이 연관되는 정보보안 분야는 최근 5년간 산업분야별 전문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해당되는 비율이 높은 분야(품목)임
 - 원활한 전문판정의 판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심사판정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전략물자 판정 관련 서류(기술 설명서, 제품 매뉴얼 또는 브로슈어 등)는 심사판정자가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대상국가, 최종수하인, 구매자, 최종사용자, 제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음
 - 최종사용자 확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핵심사항으로, 수출허가 서류인 최종사용자서약서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최종사용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거래의 투명성을 보기 위함임
 - 최종사용자의 국가는 수출 대상국가가 아닌 사용자의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최종사용자인 경우에도 수출로 보고 있음
-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인 Yestrade에서 신청해야 함.
 - 판정/허가신청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신청 가능함
 - 전략물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 확인과 교육신청도 가능함(교육신청은 eclat.kosti.or.kr)
-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의 책임으로, 기업의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준수를 위해 기업 내 관련 부서(경영, 개발, 영업 등)가 함께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부서(개발, 영업 등)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회피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과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확한 기준, 절차, 내용 등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경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함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 시 진행 절차 개요 안내



안내서 요약본

소프트웨어를 수출한다면

-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통제대상인지를 확인(판정)하고,
- 소프트웨어에 암호화 알고리즘이 포함되거나,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 수출(이전) 前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기본
사항



Who : 수출자(기술이전자)
When : 수출(이전) 전에
What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파악 및 허가 신청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알고리즘(AES, RSA 등) 또는 암호화 프로토콜(SSL, HTTPS 등)을 사용
- 이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5부2장의 통제번호 5D002.c.1에 해당 가능성이 높아
- 소프트웨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다면

- 고의성 여부에 따라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의 5배 또는 3배의 벌금과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교육명령, 우려거래자 등재 등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 가능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 특정 품목, 국가(러시아·벨라루스), 의심징후(Red Flag) 등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러시아·벨라루스 向 수출의 경우, 통제품목이 확대되어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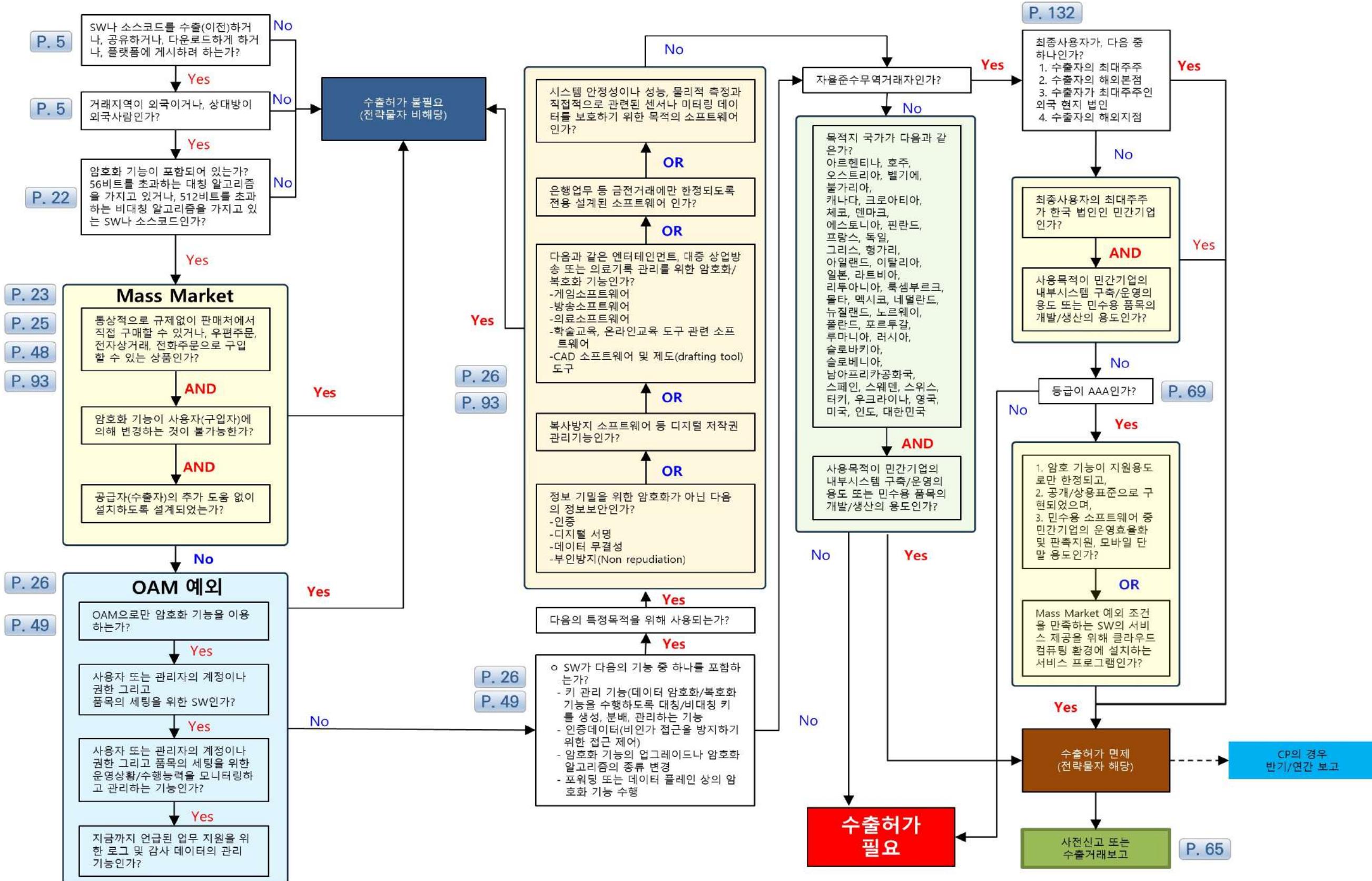
판정, 허가의 신청은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명의의 범용/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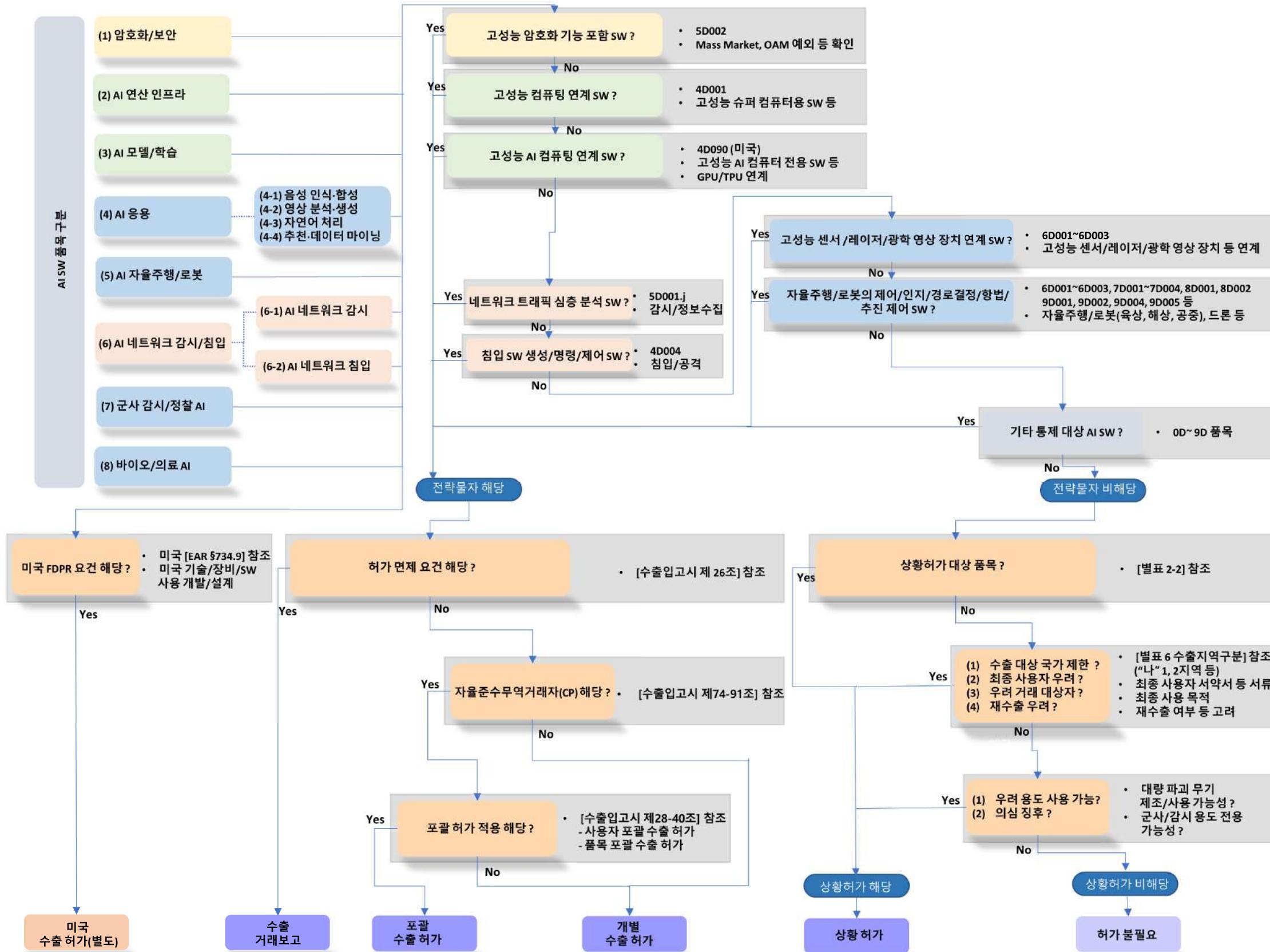
판정, 허가의 처리는

-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 판정서 및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 우리 기업에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판정 및 허가를 신청해야 함

암호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Decision Tree(활용법)



AI 소프트웨어 품목 판정 가이드라인



CONTENTS

I.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1
1. 대응 안내서 목적 및 대상	1
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1
3. 대응 안내서 범위 및 중점사항	2
4. 대응 안내서 시사점	3
II.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5
1. 전략물자 수출통제	5
2. 국제수출통제 체계	14
III.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17
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17
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18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22
4.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의 개념	27
5. AI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통제 가능성	31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35
1. 전략물자 판정	35
2. 전략물자 수출허가	63
부록	84
1. 질의 및 응답(Q&A)	85
2. 판정 사례	94
3. 무역안보관리원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	98
4. 해외 사례(미/일)	101
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137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01 대응 안내서 목적 및 대상

발간 목적

-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중요성에 대한 인지 확산
-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 복잡한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해설

대상

- 소프트웨어 수출, 수출 예정 및 준비 등 소프트웨어* 기업 전체

* 소프트웨어는 일반 기업용(B2B) 또는 개인용(B2C) 솔루션 등을 포함하며, 보안 또는 비보안 제품군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 기준에서 규정하는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0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법 수출 적발 사례 발생

- 전략물자는 정부의 수출허가 대상이며,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 품목에 포함됨
-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수출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현황 단속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됨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하면 ▲수출액 규모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양벌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실무담당자의 처벌 ▲3년 이내의 수출금지 조치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할 수 있음
- 대다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사유는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며, 수출 준비 또는 비정기적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인지가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의 잠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03 대응 안내서 범위 및 중점사항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범위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명시하는 모든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1~9부)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본 대응 안내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내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통제번호 5D002.c.1)」만을 다룬
 -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제5부 제2장 정보보안」 품목에서 통제기준 및 통제 예외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통제번호 5D002.c.1)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서 차지하는 부분(분량)이 적으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여 전문판정 신청 건이 가장 많음
 -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통제번호 5D002.c.1) 이외에도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1~9부에서 통제되는 소프트웨어는 통제번호 xDxxx(예: 3D001, 3D101 등)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전문판정 신청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대응 안내서에서 다루지 않음
 - 전략물자 통제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제번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전략물자 통제번호의 의미는 본 대응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25년 개정으로 AI 소프트웨어 전략물을 포함하여 고성능 컴퓨팅(4D001, 4D090(미국)), 센서, 레이더, 광학 영상 장치 등 연계 소프트웨어(6D001~6D003), 자율주행/로보틱스 관련 소프트웨어(6D001~6D003, 7D001~7D004, 8D001, 8D002, 9D001, 9D002, 9D004, 9D005)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응 안내서의 각 목차에 대해서 아래의 범위로 내용을 구성함(좌우측 대응포인트 확인 유의)
 - 1장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 ▶ **안내서 구성** 본 대응 안내서의 대상 및 범위 등
 - 2장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 ▶ **제도 현황 및 개념 이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배경과 국제수출통제체제, 국내법령, 전략물자에 대한 정의 이해 등
 - 3장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 ▶ **소프트웨어 통제사항**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대상, 통제기준, 예외사항 등 주요 판정 고려사항 안내
 - ▶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 클라우드 법령체계 및 국제 협력 등 설명
 - ▶ **AI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AI 소프트웨어 관련 전략물자 통제대상 가능성 품목 등 설명
 - 4장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해설
 - ▶ **전략물자 관리방안**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유형, 판정 및 허가신청 단계별 이행사항 상세 안내 해설

- 부록 QnA 및 판정사례, 판정기준 해석 세부 지침 등

- ▶ **질의응답**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예외사항, 클라우드(SaaS),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 ▶ **기타** 판정사례,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 클라우드 SaaS 관련 해외 유권해석 사례, 암호화 관련 수출 허가 특례사항 안내

04 대응 안내서 시사점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에 대한 개념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준수를 위한 기본 인식 제고
- 최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내역('23.4.28) 반영을 통한,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행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 안내서 마련으로 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대응 역량 강화
- 새로운 SW 형태(클라우드 SaaS 등) 수출에 대한 제도 분석을 통한 기업의 수출영역과 판로 확대
- AI SW 수출통제 대상 분석을 통한 기업의 AI 분야 전략물자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영역과 대상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0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정의

- 대량파괴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기술)의 수출(경유·환적, 중개를 포함)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함
-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품목별 통제 사양으로 규정함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전략물자를 고시함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의의

안보 측면	■ 국제평화와 국제안보에 기여
외교 측면	■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 방지
수출입 측면	■ 전략물자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및 첨단물자의 수입 촉진
기업보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 차단 ■ 기업의 안전한 수출지원

수출의 개념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수출, 용역제공 및 전자적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수출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기술수출의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민에게 수출하는 것을 허가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적용 중임

수출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礦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대외무역법 제19조	<p>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생략)</p> <p><u>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u></p> <p><u>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u></p>

-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정보처리장치를 매개로 한 이전까지 수출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기술이전의 방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p>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	--

전략물자의 정의

-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하며,
- 구체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3(군용 물품)에 고시된 품목을 말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3(군용물품)으로 지정된 물품
- 전략물자의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이며, 일반 산업용도와 우려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

[대외무역법 제3절 제19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제수출통제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고시함

(수출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제수출통제제 :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금지 및 폐기와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

전략물자 기술의 정의

- 전략물을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 우리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기타 관련 고시에서 명시함

▶ 소프트웨어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 (예: 56비트 초과 대칭 암호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비보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많은 경우 암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기술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대중에 이미 공개되어 수출 또는 이전시 정부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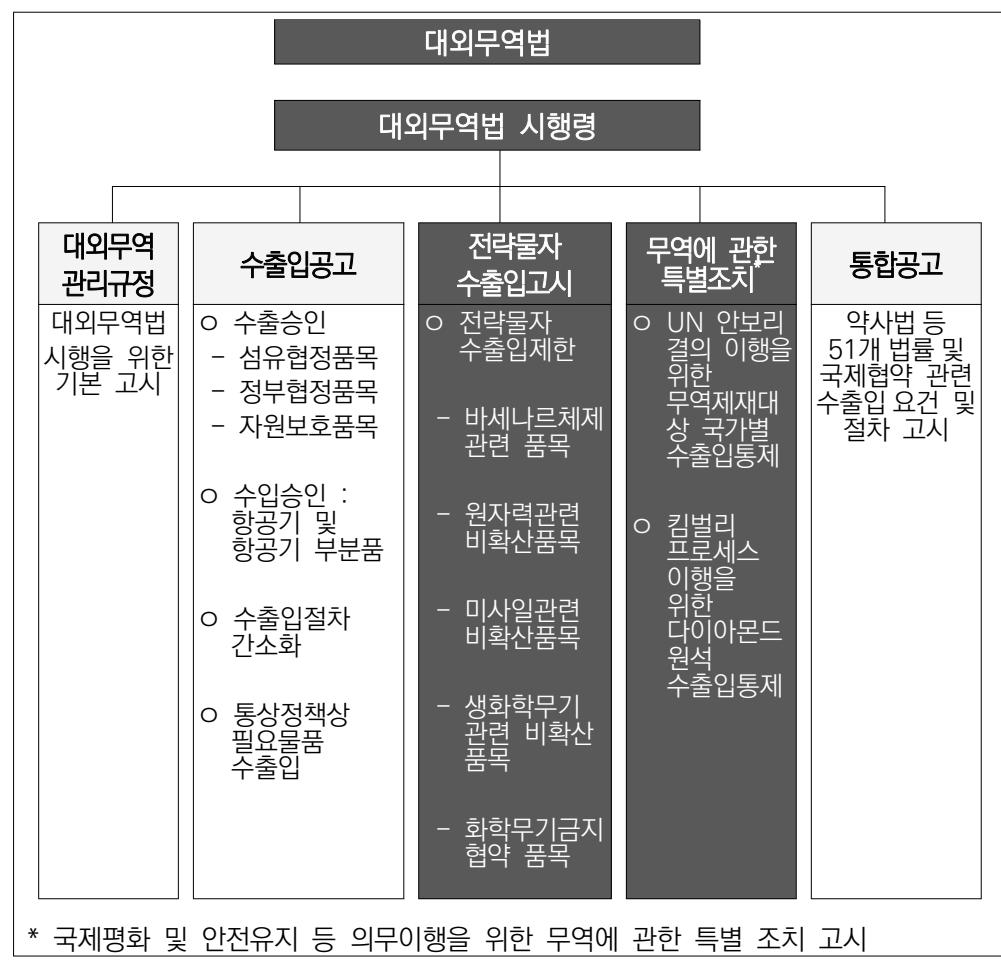
수출허가 예외 기술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 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전략물자 관련 법령 체계

-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있으며, 이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고시」에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전략물자 관련 국내법령 체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관련 국내법령

구분	허가기관	관련법령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원자력전용 품목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반 방산물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대북 반출입물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2015년 방위사업법이 개정되며 일반방산물자 허가기관이 산업통상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처벌규정

-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하면, 「대외무역법」내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략물을 불법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이 부과, 전략물자 수출입이 최장 3년간 금지될 수 있음
 -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수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최근 5년 간 수출 목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에서 불법 수출 등 수출현황 단속에 대해 경찰청에 의뢰함

- ▶ 양벌규정은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 (영업 또는 수출담당자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등을 과하는 것을 말함.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함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구분	조항	조치 내용	위반 내용
형사 처벌	대외무역법 제53조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대외무역법 제53조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 거짓으로 수출 또는 중개 허가 받은 자
	대외무역법 제5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고 면제 또는 수출입한 자
	대외무역법 제59조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보관의무 위반자
행정 제재	대외무역법 제31조①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없이 수출 ■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 질서 위반자

※ 미수범의 경우 : 각각 해당하는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외무역법 제55조)

※ 양벌규정 적용 :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대외무역법 제57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관련 자진신고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시, 단속 외에도 수출자가 위반 사실에 대해 허가기관에 자진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아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기관은 아래의 해당여부를 고려하여 처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음
 -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한 경우
 -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등 위반 자진신고 제도 및 서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자진신고 제도(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7조의2)

- 이미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한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함
 - 고의성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행정처분이 결정될 때 참작 요인이 됨
- 전략물자 제도 위반 자진신고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 재발방지계획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24호, 제25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yestrad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략물자 위반 자진신고 관련 문의 (2025.11 현재)
 - 산업통상부 불법수출 단속 관련 담당자(044-203-4832)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반 자진신고서 양식

[별지 제24호 서식]

자 진 신 고 서

신 고 자	상호			성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신고 내용	① 신고내용			* 1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② 통관일자		③ B/L 번호			
	④ 수출신고 수리번호		⑤ 최종사용용도			
	⑥ 수출품목					
	IB 번호	통제번호	종별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가액
	⑦ 거래 상대방 정보					
구분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⑧ 위반 경위						
첨부 자료	<input type="checkbox"/> 고시 제97조의2 제2항 1호 관련 (자료설명 :) <input type="checkbox"/> 고시 제97조의2 제2항 2호 관련 (자료설명 :) <input type="checkbox"/> 고시 제97조의2 제2항 3호 관련 (자료설명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1조의 위반 사실을 위와 같이 자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재발방지계획서 양식

[별지 제25호 서식]

재발 방지 계획서

신고자	(상호, 성명)		신고일자			
신고내용						
* 신고서에 작성한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재발 방지 계획						
지원 사업 활용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략물자 정규 교육 <input type="checkbox"/> 자율준수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무역안보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타 <small>※ 문의처 :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small>				
실무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small>「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합니다.</small>						
<small>20 년 월 일</small> <small>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small>						

02

국제수출통제 체제



- ▶ 바세나르체제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며, 소프트웨어는 이중용도품목으로 통제됨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

-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함
 -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
-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래식 무기의 과잉 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된 협의체
 - 통제품목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 대표적으로 총기류, 폭탄, 탱크, 항공기 등의 무기와 일반산업용 품목인 소재, 부품, 기계, 장비 등 이중용도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 개관 (2025.11 현재)

구분	WA (바세나르체제)	NSG (핵공급국그룹)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 (오스트레일리아그룹)
설립년도	1996년	1978년	1987년	1985년
회원국	42개국	48개국	35개국	43개국
한국가입	1996년	1995년	2001년	1996년
주요 통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류, 폭탄, 탱크, 장갑차, 항공기, 군함, 군용차량, 군용 탐조등, 무기 제조설비 • 이중용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소재, 소재, 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센서/레이저, 항법, 해양관련, 추진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원료물질, 원자로 및 중수 등 재처리 및 농축시설 • Part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장비·소재, 동위원소 분리장비 시험 및 생산장비, 핵폭발장치 부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km/500kg 이상 로켓장치, 무인항공기 (UAV) • Category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km이상/500kg 미만 로켓장치, 무인항공기(UAV) 추진 및 항법 장비, 구조용 복합체, 생산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원료, 이중용도화학 제조시설 • 생물무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제제원료, 이중용도 제조장비

국가별 수출통제체제 가입 현황

연번	국가	WA	NSG	AG	MTCR
1	그리스	O	O	O	O
2	남아프리카공화국	O	O	X	O
3	네덜란드	O	O	O	O
4	노르웨이	O	O	O	O
5	뉴질랜드	O	O	O	O
6	대한민국	O	O	O	O
7	덴마크	O	O	O	O
8	독일	O	O	O	O
9	라트비아	O	O	O	X
10	러시아	O	O	X	O
11	루마니아	O	O	O	X
12	룩셈부르크	O	O	O	O
13	리투아니아	O	O	O	X
14	멕시코	O	O	O	X
15	몰타	O	O	O	X
16	미국	O	O	O	O
17	벨기에	O	O	O	O
18	벨라루스	X	O	X	X
19	불가리아	O	O	O	O
20	브라질	X	O	X	O
21	사이프러스	X	O	O	X
22	세르비아	X	O	X	X
23	스웨덴	O	O	O	O
24	스위스	O	O	O	O
25	스페인	O	O	O	O
26	슬로바키아	O	O	O	X
27	슬로베니아	O	O	O	X
28	아르헨티나	O	O	O	O
29	아이슬란드	X	O	O	O
30	아일랜드	O	O	O	O
31	에스토니아	O	O	O	X
32	영국	O	O	O	O
33	오스트리아	O	O	O	O
34	우크라이나	O	O	O	O
35	이탈리아	O	O	O	O
36	인도	O	X	O	O
37	일본	O	O	O	O
38	중국	X	O	X	X
39	체코	O	O	O	O
40	카자흐스탄	X	O	X	X
41	캐나다	O	O	O	O
42	크로아티아	O	O	O	X
43	터키	O	O	O	O
44	포르투갈	O	O	O	O
45	폴란드	O	O	O	O
46	프랑스	O	O	O	O
47	핀란드	O	O	O	O
48	헝가리	O	O	O	O
49	호주	O	O	O	O
50	EU	X	X	O	X
합계		42	48	43	35

▶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출지역은 국가가 아닌 최종사용자의 국적이 수출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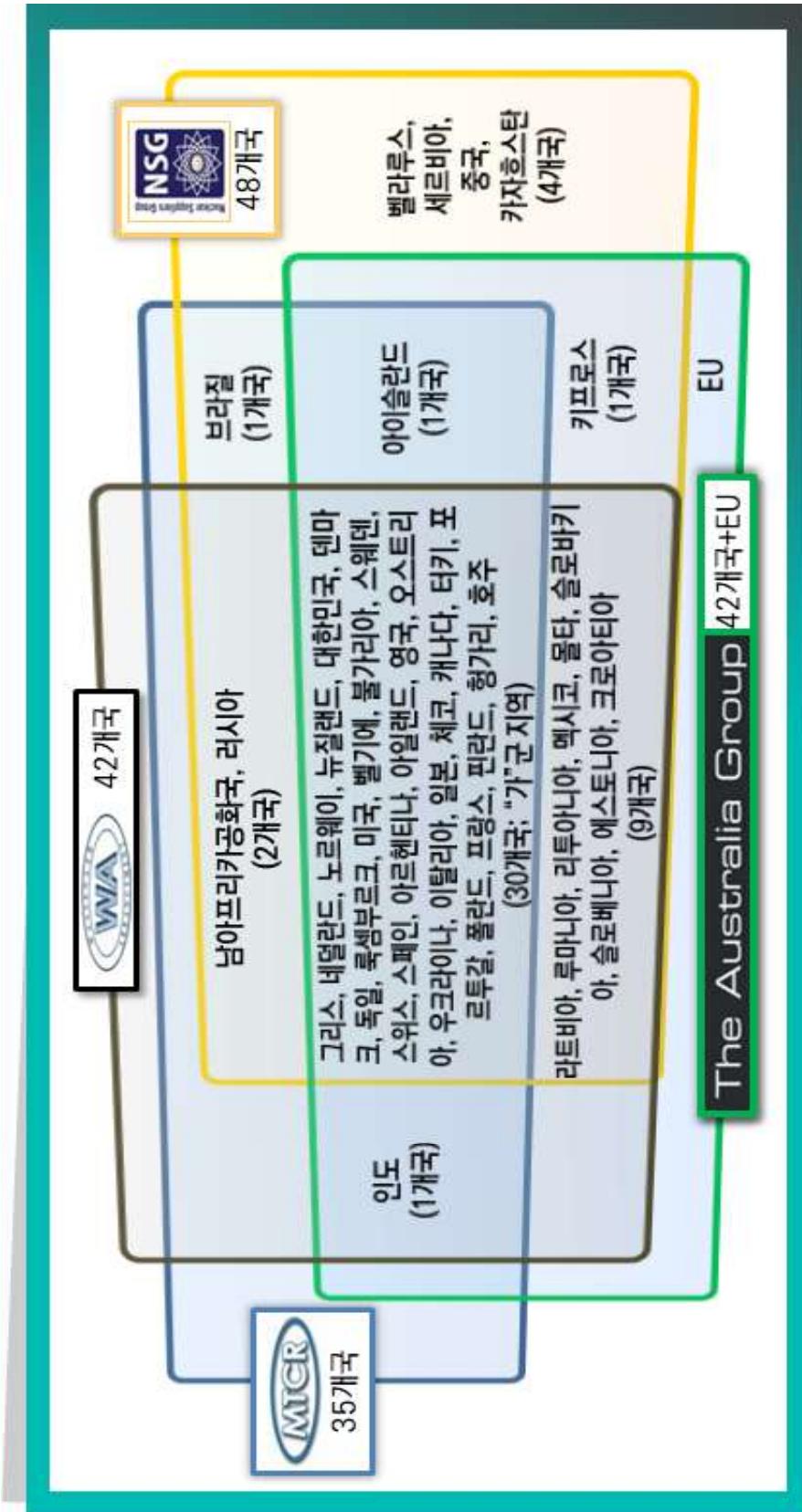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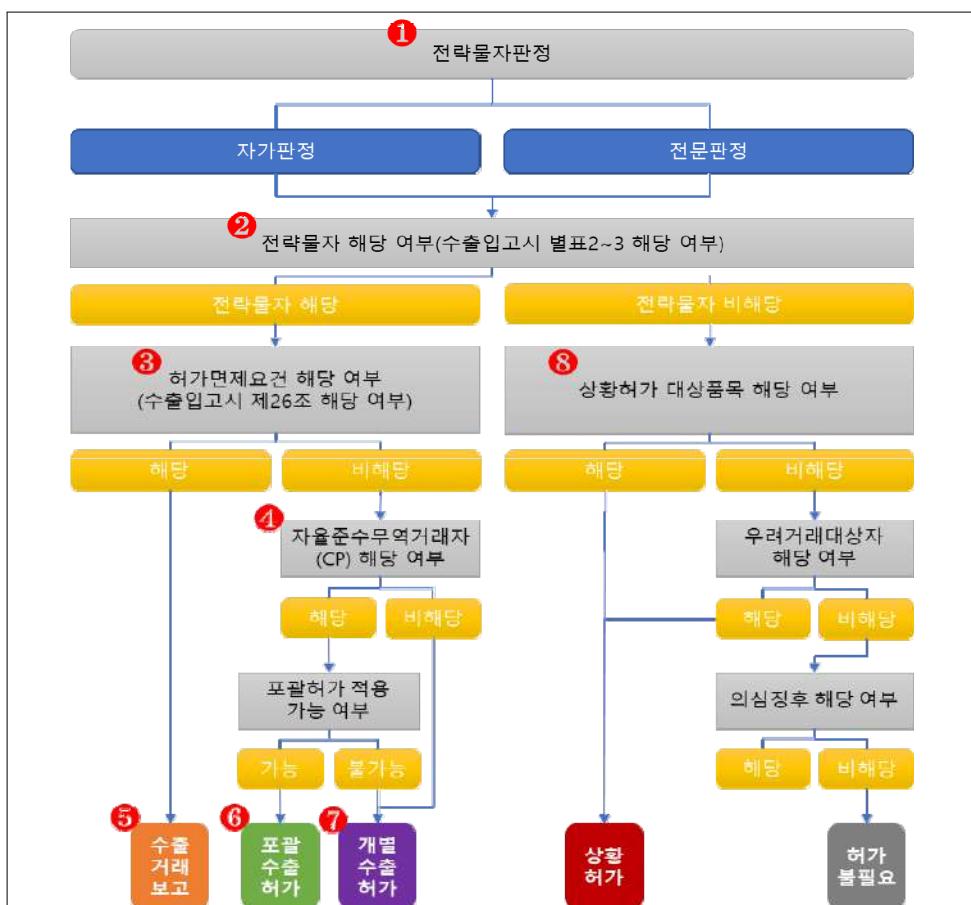
- ▶ (예시1) 베트남에 있는 중국인이 최종사용자인 경우 중국에 수출한 것임
- ▶ (예시2) 국내에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에게 판매한 경우 필리핀에 수출한 것임 (대외무역법 19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가입 현황 구분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0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 ▶ 전략물자 전문판정은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번호	구분	참조
①	전략물자 판정 방법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1. 전략물자 판정 [31~57페이지 참조]
②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	III.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 [22~26페이지 참조]
③	허가면제 요건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64페이지 참조]
④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69페이지 참조]
⑤	수출거래보고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65~68페이지 참조]
⑥	포괄수출허가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69~70페이지 참조]
⑦	개별수출허가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58~63페이지 참조]
⑧	상황허가	IV.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 수출허가 [71~78페이지 참조]

0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전략물자의 이중용도(Dual use)품목

- ▶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내 모든 이 중용도품목에서 다루고 있으나, 본 대응 안내서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내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함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현황 및 구분

통제품목			주요 통제물자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1부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알루미늄 파이프, 티타늄 튜브 등 금속 합금,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탄소섬유 등
	2부	소재가공	베어링, CNC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표면증착장비, 치수측정기, 로봇, 유동성형기 등
	3부	전자	집적회로, 반도체웨이퍼, 축전지, 리튬전지, 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주파수변환기, 반도체 장비 등
	4부	컴퓨터	컴퓨터 및 부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장비 등
	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통신장비, 무선영상수신장비, 교환기, 광통신케이블, 정보보안장비, 집적회로 등
	6부	센서 및 레이저	수심측량기, 지층탐사기, 음향송수신기, 광센서, 열화상카메라, 지층탐사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
	7부	항법 및 항공전자	가속도계, 위성항법시스템, 관성시스템, 자이로스코프, 진동장비, 항해장비 등
	8부	해양	잠수정, 수상선, 수중카메라, 수중로봇, 수중관측시스템, 추진 프로펠러, 펌프제트 추진시스템 등
	9부	항공우주 및 추진	가스터빈엔진, 터보엔진, 진동시험장비, 로켓엔진, 무인항공기, 우주발사체, 로켓 등
원자력전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10부	핵물질 설비 및 장비 등	
군용물자 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	Item 1 ~ 22	활강무기, 탄약, 신관장치, 군용차량, 생화학 독성작용제, 최루가스, 방사성물질,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항공기엔진, 군용 영상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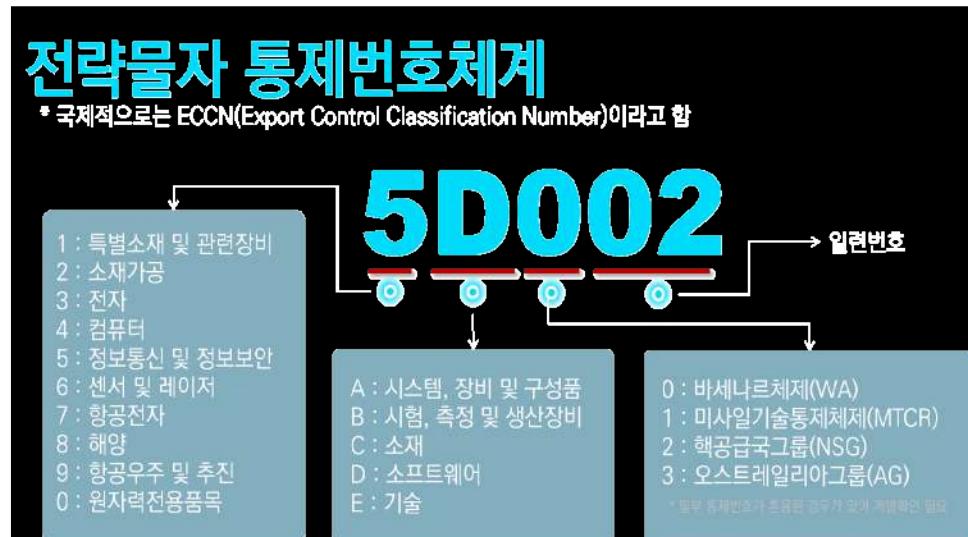
전략물자 통제번호

- 전략물자의 통제번호는 품목의 대부분으로 볼 때 5자리로 구성되며, 첫 번째 자리는 숫자, 두 번째 자리는 영문 알파벳(대문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5자리 이후의 통제번호는 영문 알파벳(소문자), 순자, 영문, 숫자의 형태의 번호부여 형태를 띠며 5자리 하위 번호부터는 점(.)으로 구분되어 구성됨

전략물자 통제번호 부여 형태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
형태	숫자	대문자 알파벳	숫자	두자리 일련번호	소문자 알파벳	숫자	소문자 알파벳	...	
범위	0~9	A~E	0~3	00~99	a~	1~9	a~	...	
예시	5	D	0	02	c	3	a	...	
실제 번호부여 형태 예시 : 5D002.c.3.a									

전략물자 통제번호 체계



- 56비트 초과의 대칭 알고리즘, 512비트 초과의 비대칭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용(B2B) 또는 개인용(B2C) 소프트웨어의 통제번호는 5D002.c.1에 해당함

- 참고로 미국은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이라는 통제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미국의 통제 번호 체계는 한국의 통제보다 넓은 범위이며,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ICT 관련 품목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련품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제번호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5번'대인 품목이 다수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 전략물자 통제번호



- 한편, 5장(통제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5인 경우) 이외의 각 부문에서 통제하는 특성과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분 내 통제번호의 두 번째 자리가 'D'인 소프트웨어 통제번호 확인이 필요함

예) 자동차/항공엔진 구동용 소프트웨어는 9DXXX라는 통제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복합재료의 배합 및 특성에 따른 재료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1DXXX라는 통제번호 확인이 필요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통제번호별 소프트웨어 예제

【 1D002 】

민감

유기“모재”, 금속“모재” 또는 탄소“모재”의 적층구조물(laminates) 또는 “복합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C A T I A V5-6R	· 항공우주, 자동차, 소비재, 조선 등의 산업분야에 활용
--------------------	----------------------------------

【 2D002 】

민감

전자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전자장치 또는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윤곽제어”를 위해 4축 초과를 동시제어 할 수 있는 “수치제어” 유닛으로서 장치 또는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

Y a s k a w a MP3300iec- ER	· 5축 및 6축 제어 자유도 잠금해제 소프트웨어
-----------------------------------	-----------------------------

【 5D002.c.1 】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거나,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수행 또는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5A002.a, 5A002c, 5A002.d 또는 5A002.e에서 통제되는 장비

Symantec Endpoint Encryption	· FIPS-140-2 수준 종단간 암호화, 드라이브 암/복호화 등 및 복구 등
------------------------------------	--

【 6D001 】

민감/초민감

6A004, 6A005, 6A008 또는 6B008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honeywell RDR-84K	· K-Band Radar System Software
----------------------	--------------------------------

【 9D001 】

민감/초민감

9A001~9A119, 9B 또는 9E003에 명시된 장비 또는 “기술”的 개발을 위해 전용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로 9D003 또는 9D004에 명시되지 않은 것

LAFLAS	· 발사체 비행 시뮬레이션, 제어시스템 설계 등
--------	----------------------------

0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 ▶ 소프트웨어에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면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 비보안제품(ERP 등)이라도 대부분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략물자로 해당할 수 있음
- ▶ 오픈소스를 재가공한 소프트웨어(암호화 기능 포함)도 전략물자로 해당할 수 있음
- ▶ 56비트 초과의 대칭 알고리즘, 512비트 초과의 비대칭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용(B2B) 또는 개인용(B2C) 소프트웨어의 통제번호는 5D002.c.1에 해당함
- ▶ 전략물자로 판정된 소프트웨어 경우 대부분 5D002.c.1에 해당함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 ☞ 본 안내서에서는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제품(통제번호 5D002.c.1)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통제번호 5D002.c.1) 이외에도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1~9부에서 통제되는 소프트웨어는 통제번호 xDxxx(예: 3D001, 3D101 등)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전문판정 신청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대응 안내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 ☞ 장비(하드웨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에 해당되는 통제번호에서 확인해야 함

- 56비트 초과의 대칭 알고리즘, 512비트 초과의 비대칭 알고리즘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의 대상임
 -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통제번호 : **5D002.c.1**
 - 5D002.c.1는 5A002.a, 5A002.c, 5A002.d, 5A002.e에서 통제되는 장비 중 하나의 특성을 갖거나, 하나의 기능을 수행 또는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통제번호

통제번호	소프트웨어	설명
5D002.a	암호화 품목 개발, 생산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로딩 시 암호화하는 앱 등
5D002.b	암호 활성화 소프트웨어	암호 활성화 토큰의 특성을 갖는 소프트웨어
5D002.c	암호화, 비암호화, 암호무력화 소프트웨어	
5D002.c.1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본 안내서 대상 소프트웨어
5D002.c.2	비암호화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부정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케이블 시스템, 정보신호의 발산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등
5D002.c.3	암호무력화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암호 분석 및 포렌식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통제기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참조)

상세설명	관련 통제번호
아래 하나의 특성을 갖거나, 하나의 기능을 수행 또는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5D002.c.1
<input type="checkbox"/>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Described security algorithm)을 가지고 정보기밀성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거나, 그 암호화 기능을 사용, 활성화 또는 보안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암호 활성화 수단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아래의 것 ① 주요기능이 정보보안인 품목 ② 상기 1번에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 통신 또는 네트워킹 시스템, 장비 및 구성품 ③ 상기 2번에 명시되지 않은 컴퓨터, 정보저장 또는 처리가 주 기능인 품목/구성품 ④ 상기 3번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Described security algorithm)을 가진 정보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품목의 주요기능이 아닌 것을 지원하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부제2장(정보보안 부문)에 독립된 품목으로 명시될 통합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	5A002.a
<input type="checkbox"/> 양자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5A002.c
<input type="checkbox"/> 초광대역(ultra-wideband) 변조기술 시스템을 위한 채널코드, 스크램블링코드, 또는 네트워크식별코드를 생성하는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① 500 MHz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역폭; 또는 ② “비대역폭”이 20% 또는 그 이상의 것	5A002.d
<input type="checkbox"/>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시스템을 위한 호핑 코드(hopping code)를 포함하여 정보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통제되지 않는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스프레딩 부호를 생성하기 위한 암호화기술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5A002.e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통제품목 해설

-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관련 품목은 통제 예외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품목 용어에 대한 기술해설이 많으니 기술하고 있는 아래 용어에 대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Described security algorithm)
 - : 일정 수준 이상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통제번호 5A002.a 기술해설 2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Described Security Algorithm)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참조)

구분	기술해설	비고
대칭 알고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하는 것 	
비대칭 알고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칭 알고리즘이 다음 중 하나의 사항에 기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2비트를 초과하는 정수의 인수분해 (예, RSA) - 이산(discrete)의 곱셈군(Multiplicative group)에서 이산로그의 계산이 512비트 (예, Diffie-Hellman over Z/pZ)를 초과하는 것 - 상기 통제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Group)의 이산로그가 112비트를 초과하는 것 (예, Diffie-Hellman over an elliptic curve) 	1개라도 해당될 경우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 (Described Security Algorithm)이라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칭 알고리즘이 다음중 하나의 사항에 기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자(lattices)와 관련된 최소 벡터 또는 최근접 벡터를 찾는 문제 (예, NewHope, Frodo, NTRUEncrypt, Kyber, Titanium) - 초특이(supersingular) 타원 곡선들 간의 등원사상(isogenies)을 찾는 것 - 랜덤 코드를 복호화하는 것 (예, McEliece, Niederreiter) 	차세대 양자암호화, 양자-내성 암호화, 양자시대에 안전한 암호화라고 불리기도 함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통제 대상 여부 정리

- ▶ 기술된 암호 알고리즘(예 AES 등)은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Described Security Algorithm)에 해당 하며, 기술된 보안 프로토콜(예 SSL 등)은 기술된 암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품목이 기술된 암호 알고리즘을 포함하거나 기술된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 오른쪽의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통제 대상 여부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전문판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판정 추가답변서의 질의 내용(확인대상)과 동일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참조)

1) 보안 프로토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SSL, TLS, SSH, SSHv2, HTTPS, IPsec, MACsec, VPN, SCP, SFTP, SNMP, v3, LTO, IBM IMM, FDE, PGP, WEP, WPA-PSK, WPA-TKIP, WPA-EAP, AES-CCMP, WPA, WPA2, WPA-2PSK, TKIP, HP Insight control, TrustSec, Supervisor Engine, HP iLO4, GETVPN, LDAP, H.235, EMC OneFS OS, SED, wireless HART, SRTP, ZRTP, S/MIME 등의 사용 또는 지원 여부
2) 정보(데이터) 저장, 정보(데이터) 처리, 통신, 접속 로그 관리, 사용자 이력 관리 등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AES, TEA3, 3-DES, SEED, RSA, ARIA, ECC, ECDH, ECDSA, RC5, Diffie-Hellman over Z/pZ, Diffie-Hellman over an elliptic curve 등의 사용 또는 지원 여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통제 예외상황

1) 5부* 2장 주3 (암호화 기술 해설-Cryptography Note) 예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5부

[1] 대중시장용 소프트웨어

a.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물품:

1.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규제 없이 대중적으로 소매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한 것:
 - a.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거래
 - b. 우편 주문 거래
 - c. 전자 상거래; 또는
 - d. 전화 주문 거래
2. 암호화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것
3. 사용자가 제품공급자의 추가 도움 없이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 그리고
4. 상기 1~3에 서술된 조건의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출국 해당기관이 입수할 수 있고 구체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

[2] 대중시장용 품목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b. a에 기술된 품목의 하드웨어 구성품 또는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executable software)'로 해당 품목을 위해 설계되었고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품:

〈대중시장(Mass Market) 판매제품 충족요소〉

상세설명	참고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대중에게 제공되는 제품을 의미 <input type="radio"/> 소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소비자 위주의 제품을 말하며, 예외사항을 판단하는 기관은 수량, 가격, 제품의 기술, 판매채널, 공급업체의 관행을 포함하여 예외 여부를 판단함	대중 판매시장 관련 예외사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대량판매시장 예외사항에 대한 필요요소 <input type="radio"/> 공장에서 설치된 구성품과 같고 애프터마켓(After Market)에서 같은 기능만 구현될 것 <input type="radio"/> 정보보안이 당해 제품의 주 기능이 아닐 것 <input type="radio"/> 암호화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암호화 기능 추가가 없을 것 <input type="radio"/>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는 고정되어야 하며, 고객 사양에 맞게 설계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	

〈대중시장(Mass Market) 해당여부 정리〉

1)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규제 없이 대중적으로 소매판매처에서의 구입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거래 <input type="checkbox"/> 우편 주문 거래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input type="checkbox"/> 전화 주문 거래
2) 소비자가 신청 품목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에게 가격 및 주 기능 정보를 문의할 필요 없이 해당정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반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및 주 기능 정보가 표기된 Catalog(인쇄물) <input type="checkbox"/> 가격 및 주 기능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URL 주소
3) 암호화 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
4) 사용자가 제품공급자의 추가 도움 없이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대중시장(Mass Market)용 소프트웨어는 좌측 'a'의 1, 2, 3, 4를 모두 충족해야 예외 사항이 충족됨

▶ 다만, 대중시장용 소프트웨어로서,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더라도 우려국가 수출 등의 상황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대중시장 여부를 판단할 때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예: 나라장터), 별도의 권한이 있는 소매상만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중고판매 사이트에서만 가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됨

▶ 단순한 가격문의는 구매자의 제한없이 이메일, 전화등으로 가격을 문의하여 가격을 알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목적, 수량등에 공급자 및 판매자의 가격이 변동하거나, 협상/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 4) 자가설치 가능여부는 제품의 설치 매뉴얼이 공개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공급자의 추가도움 없이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간주함. 단, 단순한 제품 설치 외에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해 공급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방화벽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통제번호 5D002.c.1 주에 의한 예외

[1]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으로만 암호화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정보저장 암호화 및 일반 통신 암호화가 아닌 관리자용만 암호화를 하는 경우)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운영, 관리, 유지보수)〉

다음의 설정이나 관리

1.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계정이나 권한

2. 품목의 세팅

3. 위 1, 2 업무(tasks) 지원을 위한 인증 데이터

품목의 운영상황이나 수행능력 모니터링 또는 관리

위에 언급된 업무(tasks) 지원을 위한 로그(log) 및 감사(audit) 데이터의 관리

* 아래의 업무 또는 관련 키 관리 기능은 미포함

1) 키 관리 기능

데이터 암호화/복호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칭/비대칭 키를 생성, 분배, 관리하는 기능

2) 인증 데이터(Authentication data)

인증 데이터는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함. 인증이란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제어로 사용자 인증(하나의 세션 동안에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서버, 장비 등의 거래 당사자 간 신원 주장(Identity Claim)에 대해 유효성을 성립시키는 것)과 메시지 인증(교환되는 매 정보 마다 진위 확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3) 암호화 기능의 업그레이드

암호화 기능의 동작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 (예 :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변경 등)

4) 포워딩 혹은 데이터 플레이어 상의 암호화 기능 수행

메시지 전달 경로 설정 등의 설정이나 제어를 위한 관리용 데이터 암호화 이외의 사용자가 보내고 받는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수행

3) 통제번호 5A002.a 기술해설 및 5A002.a 주2에 의한 예외

[1] 정보기밀성을 위한 암호화 이외의 정보보안

- a. Authentication: (인증)
- b. Digital signature: (디지털 서명)
- c. Data integrity: (데이터 무결성)
- d. Non-repudiation: (부인 방지)

[2] 디지털 저작권 관리(복사방지 소프트웨어 포함)

[3] 엔터테인먼트, 대중 상업 방송 또는 의료 기록 관리를 위한 암호화 또는 복호화

- a. 오락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 b. 방송 소프트웨어
- c. 의료 소프트웨어 (의료 및 임상 관련 진단, 환자 일정관리 및 의료 데이터 기록 기밀 유지 관련 품목)
- d. 학술 교육, 온라인 교육 도구 및 관련 소프트웨어
- e.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및 제도 도구(drafting tools)

[4] 은행업무와 '금전거래'에만 한정되도록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5] 비-임의 데이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a. '네트워크 연결 민간 산업용 응용'을 위해 전용 설계된 것

→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일반 분야의 민간 산업용 소프트웨어가 비-임의 데이터의 보안에 한정된 경우 (일반 산업용 원격감시/관리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일반 분야의 소비자용 소프트웨어가 비-임의 데이터의 보안에 한정된 경우 (일반 가정용 원격감시/관리 소프트웨어)

예) 스마트 고속도로, 대중교통 운영 및 요금 징수 관련 소프트웨어

예) 로봇공학, 플랜트 안전, 중장비, 화재 경보 및 공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예) 광업, 시추, 대기 샘플링, 기상 모니터링, 댐 관련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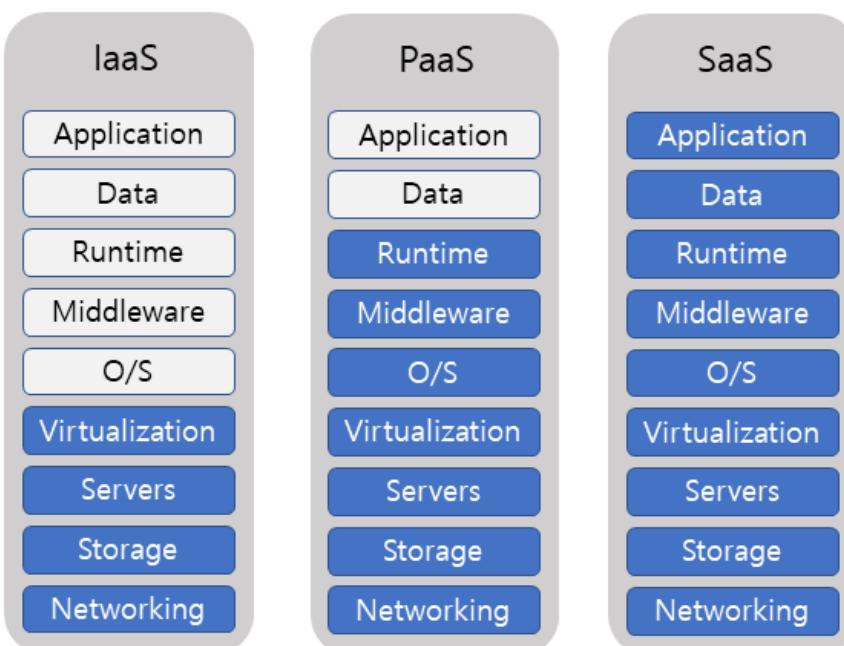
* '비-임의 데이터'는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성능, 물리적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센서나 미터링 데이터(예, 온도, 압력, 유량, 질량, 체적, 전압, 물리적 위치 등)로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04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의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의미(“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서비스 유형에 따른 관리 주체와 수준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됨

서비스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분류



※ 푸른색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하는 영역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유형으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다수의 물리서버를 가상화 제공
 - 가상화 기술에 따라 빠른시간 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가/반납 등이 가능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주요 서비스로 아마존의 AWS EC2와 Google의 GCE 등이 있음
- ⇒ IaaS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로 전략물자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 수출허가 필요

- (PaaS) Platform as a Service
 - IaaS 형태의 가상화된 클라우드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서비스하는 것
 - PaaS 플랫폼에 종속성이 높으나, 인프라 유지 및 운영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이 가능
 - 주요 서비스로 세일즈포스닷컴의 heroku, Redhat의 OpenShift 등이 있음
- ⇒ PaaS 플랫폼을 이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대상으로 수출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단, 개발과정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수출허가(기술)가 필요할 수 있음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IaaS, PaaS 등의 클라우드 환경 위에 이미 구축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서비스하는 형태
 - 라이센스 구매 부담이 적고, 개발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초기 진입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음
 - 주요 서비스로 Slack, Microsoft 365, Dropbox, Salesforce 등이 있음
- ⇒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해외 이전(수출) 시 수출허가가 필요.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서비스되는 SW가 대중시장예외(Mass Market)를 충족하는 경우, 서버SW에 대해서는 허가 면제 가능
- ⇒ 해외의 클라우드 환경에 서비스 SW를 설치하고,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접근권한(라이센스) 등을 부여하는 시점 前 수출허가 필요
-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SW의 수출도 수출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SaaS 의 서비스 수출 시 수출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 SaaS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CSP 등에 서버용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관련법

- 현재 국내법령에는 클라우드 SaaS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를 요하거나 하는 법령이 있는지는 않음
-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상 명시된 국제협력 등의 행위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의3 기술의 이전에 해당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5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 · 기술 · 인력의 국제교류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 · 개발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술 이전의 유형

- 기술의 무형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은 이전 대상과 이전 방식이 물품보다 넓음

「대외무역법상」기술의 이전대상과 이전방식

이전 대상

- 전자매체(이메일, 인터넷 등), 팩스, 전화에 의한 기술자료 이전
- 기술지도, 교육훈련, 컨설팅 등 개인 간 구두이전을 통한 기술지원

이전 방식

-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국경개념)
-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이전 (국적개념)

- 상기 기술 이전 대상과 방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며,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제협력, 공동연구의 경우도 수출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술이전 발생 가능 유형 예제



- 단, 용역 형태가 아닌,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며, 사후거래보고로 갈음됨
- 공동연구 등 계약체결 전후로 수출허가 신청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에 관한 구체적 논의 이전 이행
 - 특별히 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NDA(기밀유지협약), MOU(양해각서) 등에 따라 양 기관간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논의 이전 이행

기술이전 시 수출허가 관련 세부 법령

관련법령	세부 내용
대외무역법	법 제19조(전략물자),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3(기술이전),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허가의 유형), 제4조(허가의 예외), 제5조(허가기관),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제18조의2(수출허가 신청자격), 제19조(개별수출허가),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제84조(등급별 특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제20조(수출승인 결정 및 통지), 제21조(수출신고 대상), 제24조(수출신고 수리 결정 및 통지), 제25조(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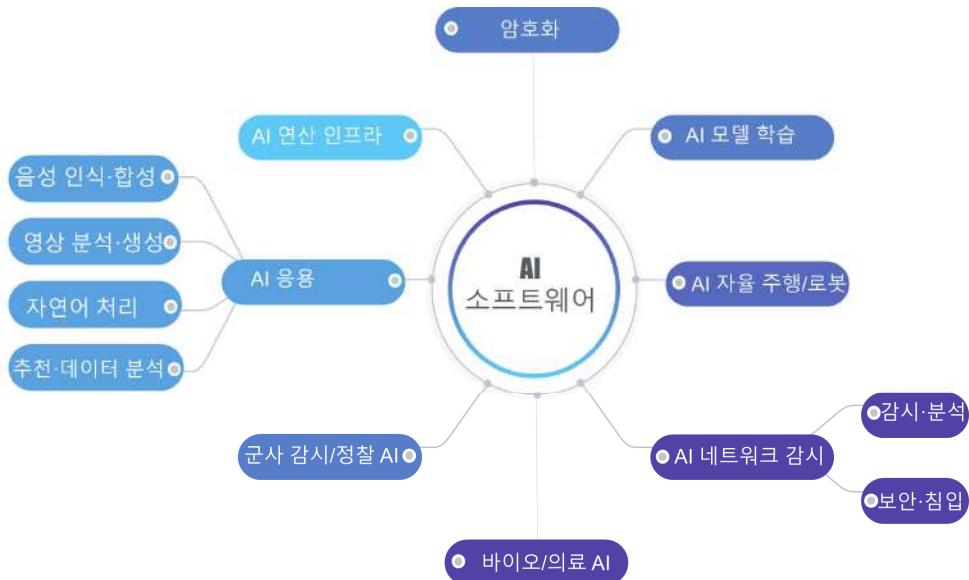
AI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 추론, 인식, 판단 기능 등을 모방하도록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다수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학습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문제를 분석,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AI 소프트웨어는 1) AI 모델의 학습, 추론, 최적화 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레임워크와 같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2) AI 모델을 응용하여 음성, 영상, 데이터 분석,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AI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클라우드, SaaS, API(, 온디바이스 (on-device)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주요 AI 소프트웨어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 기반 생성형 서비스(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대화형 AI 챗봇, 추천 시스템, 위성/의료 등 영상 분석/예측, 자율 무기체계 제어, 자율주행/로봇용 AI 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AI 소프트웨어의 통제 가능성 관련 구분

- 수출통제 대상 가능성 AI SW 품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1) 암호화 – 대칭/비대칭 암호화
 - (2) AI 연산 인프라 –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터/GPU/TPU) 관련
 - (3) AI 모델 학습 –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터/GPU/TPU) 관련
 - (4) AI 응용 –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터/GPU/TPU) 관련
 - (4-1) 음성 인식·합성
 - (4-2) 영상 분석·생성
 - (4-3) 자연어 처리
 - (4-4) 추천·데이터 마이닝
 - (5) AI 자율주행/로봇 – 제어·인지·경로결정·항법·추진제어 등 관련
 - (6) AI 네트워크 감시·분석·보안
 - (6-1) 네트워크 감시·분석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 (6-2) 보안·침입 – 침입 SW 생성·명령·제어
 - (7) 군사 감시/정찰 AI
 - (8) 바이오/의료 AI

통제 가능성 있는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의 통제 조항

- AI 관련 품목 및 기술의 직접적인 통제 조항은 없으나, 정보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HW/SW 품목과 고성능 컴퓨팅 관련 HW/SW 등 기존의 통제 조항으로 AI 관련 품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AI SW 품목의 전용 통제 조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제 대상은 없으나, 암호화 품목 등 기존의 다양한 SW 통제 대상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AI 소프트웨어의 국가별 통제

- WA/유럽/일본/한국
 - WA,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은 기본적으로 WA 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AI 품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다만 별도의 세부 운영 지침 등을 운영하거나, 성능 지표, 민수/연구 용도 예외 등 운용 지침 등을 세분화하여 운영함
- 미국
 - 미국은 WA 통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AI HW/SW 품목의 전용 통제 대상을 신설하여 유럽,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AI 품목을 명시적으로 직접 통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AI 소프트웨어 통제 관련 고려 사항

● 품목의 최종 용도/수출 대상 국가/최종 사용자 검토

- 군사·보안 목적 전용 가능성 등 품목의 용도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식별/추적 등 보안 기능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함
- 별표6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기준으로 국가별 “가”, “나” 지역을 확인하고 국가별 해당 지역 등급을 검토하여 수출 대상 국가의 관리가 필요함
-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여 최종사용자진술서(EUC)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수출 조건 관리를 위해 계약서에 재수출 금지 및 용도 제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대상 여부 검토

- 미국의 AI 반도체 GPU 또는 SW 등 미국의 기술, 장비, SW를 이용하여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으므로 EAR §734.9 FDPR 적용 여부 검토 및 미국 수출통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클라우드/SaaS 등 서비스 형태 검토

- AI SW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나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클라우드/SaaS를 통한 SW 품목의 수출통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미국 EAR — 15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34
- ▶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미국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도 생산과정에 미국의 기술·장비-SW가 사용된 경우 동 외국산 제품에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제도

주요 AI SW 통제 대상

● 암호화 기능 포함

- VPN, TLS 등 암호화 프로토콜, AES, PKI 등 대칭/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등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정보보안 통제 대상 품목(5D002.c)과 직접 연관됨

● 고성능 컴퓨팅 HW 연계

- LLM 등 AI 모델용 고성능 서버,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컴퓨터 (4A003)용 SW(드라이버, 컴파일러,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등)로 컴퓨터 통제 대상 품목(4D001)과 관련됨
- 미국은 고성능 AI 전용 컴퓨팅 HW(고성능 GPU, TPU 등, 4A090) 관련 전용 설계 SW를 독자 통제 대상 품목(4D090)으로 정하여 별도 통제함

● 네트워크 감시, 분석, 침입

- 네트워크의 데이터 패킷을 심층 분석하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서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는 감시·분석 SW로 정보통신 통제 대상 품목(5D001.c)과 관련되며, AI 기능을 네트워크 감시, 분석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침입 소프트웨어의 생성, 명령, 제어 또는 전송을 위하여 전용 설계 또는 개조된 SW로 컴퓨터 통제 대상 품목(4D004)과 관련되며, AI 기능을 침입용 SW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고성능 센서·레이더·광학 이미징 장치 연계

- 고성능 센서·레이더·광학 영상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위성·드론 영상 분석, 표적 추적 기능 등을 AI 기능을 이용해 수행하는 SW의 경우 센서 통제 대상 품목(6D001~6D003)과 관련됨
- 특히 고성능 센서·레이더·광학 영상 장치 수집 데이터의 감시·정찰 용 AI 영상 처리 SW, 감시·표적 탐지용 AI 영상 처리 SW인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자율주행/로보틱스

- 고성능 센서·레이더·광학 영상 장치 수집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자율주행(육상·해상·공중)이나 로봇의 제어나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SW의 경우 센서, 항공, 해상, 항공우주 통제 대상 품목(6D~9D)과 관련될 수 있음
- 성능 센서·레이더·광학 영상 장치 수집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자율주행(육상·해상·공중)이나 로봇의 경로 결정이나 항법 기능, 추진 제어 등을 수행하는 SW의 경우 센서, 항공, 해상, 항공우주 통제 대상 품목(6D~9D)과 관련될 수 있음
- 민수용 자율주행 로봇이나 SW의 경우에도 감시·정찰 등 군사·보안용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략물자 비해당이라도 상황허가 대상 가능성이 있음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01 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판정 방법

- 전략물자 판정은 대상 물품 등이 「전자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2의2, 별표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 별표2 이중용도품목,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3 군용물자품목
 - 전략물자 판정 방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기판정', 전문판정기관(무역안보관리원)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나뉨
 -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 진행 가능

전략물자 판정방법 비교

구분	자기판정	전문판정
의미	무역거래자 스스로 그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 전문 기관(무역안보관리원)이 판정
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자기판정도구(품목명/통제번호/HSK) 또는 직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검색	Yestrade 상의 전문판정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특징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정자(기업 등)에 있음	무료로 공인된 판정결과를 얻을 수 있음(법적 처리기간 15일)
참고	제품의 개발 및 생산 단계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무역안보관리원(산업용 전문판정기관)

(산업용 전략물자) 자기판정

- 자가판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함
- 간접수출의 경우 전문판정을 진행해야 함

- 자가판정이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판정기관에 의한 판정인 전문판정과 구별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2조)

- 전문판정의 경우
판정결과에 대한 공개에 동의할 경우 수출업체(국내 파트너 등)도 판정서의 활용이 가능하여 간접수출(제3자를 통한 수출)이 가능함
- 자가판정은 판정서를 타 업체에서의 활용이 불가능함으로
직접수출(최종사용자에게 직접수출)인 경우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 자가판정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략물자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한 수출을 위하여 전문판정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함
※ 다음 장에서 전문판정 권고 사유 확인

[전문판정 권고 사유]

1. 판정과 관련한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판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정 결과의 위험성 존재
 2. 자가판정 및 수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음
 3.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시 전문판정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4. 자가판정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 전략물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해당 판정을 목적으로 자가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자가판정 검증제도를 통하여 자가판정 시 비해당 판정인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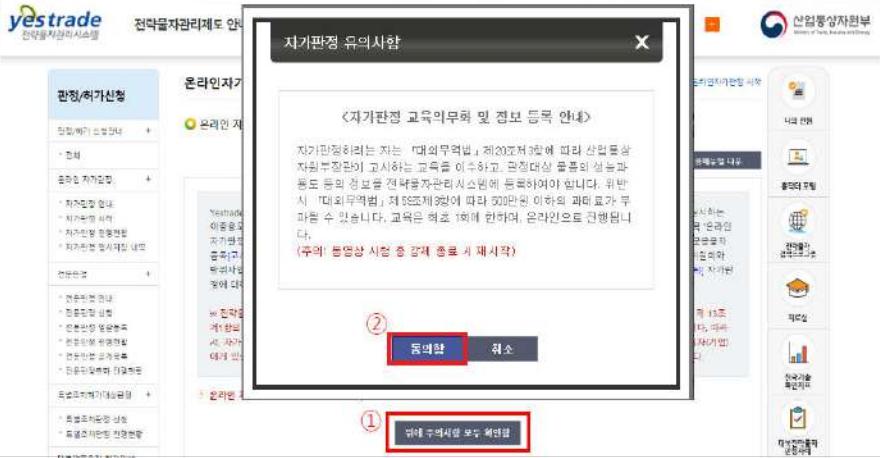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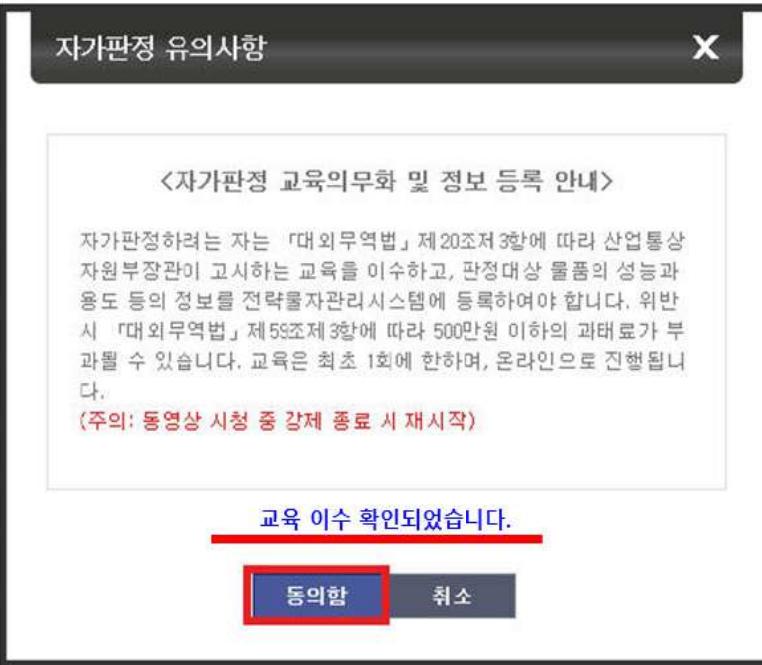
- 자가판정의 한계

- 전략물자 중 기술에 대한 신청 시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외에는 전문판정만 유효
 - 자가판정 효력의 유효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한 바는 없음

※ 매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의해 통제 품목 및 사양이 일부 변경되고 있어, 고시 개정 전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던 품목이 통제사양 변경, 신규 통제품목 등재 등으로 고시 개정 후 전략물자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러므로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온라인 자가판정은 산업부 소관 품목 중 별표 2(이중용도 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만 지원

- 자가판정 신청 방법

단계	방법
2	<p>✓ 자가판정 시 온라인 교육 필수 진행 팝업창 ① ‘주의사항 모두 확인함’ 클릭 → ② ‘동의함’ 클릭</p> 
3	<p>✓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확인창 팝업 ✓ ‘동의함’ 클릭</p> 

▶ 교육이수 동영상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들었던 사용자도 재시청을 해야될 수 있음

단계	방법
4	<p>① 온라인 자가판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품목 중 물품 선택 ② 물품 검색을 위해 아래 선택 목록 중 검색할 카테고리 선택 - 품목명 : 자가판정하려는 물품의 명칭 또는 관련 명칭 - 통제번호 : 자가판정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통제번호 또는 이전에 판정한(받은) 통제번호. 물품 자가판정 시에는 물품 통제번호만 판정이 가능하며, 기술 통제번호 입력 시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옴 - HSK번호 : 자가판정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HSK번호 ③ 품목명의 음절을 작성하면 입력 음절과 관련된 물품 목록 리스트가 선택 목록으로 나타남 - 품목명 선택 : 입력 음절에 따른 품목명이 자동완성으로 제공 - 통제번호 선택 : 통제번호 입력 음절에 따른 통제번호가 자동완성으로 제공 - HSK번호 선택 : HSK번호 입력 음절에 따른 HSK번호가 자동완성으로 제공 ※ 키워드 검색 시 자동완성 또는 결과가 없는 경우가 전략물자 '비해당'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유의어', '동의어' 등의 추가 검색 필요 ④ 물품의 품목명 입력 및 선택을 마친 후 '다음' 클릭</p> 
5	<p>✓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관련 키워드 선택 화면에서 판정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키워드 선택 후 '다음' 클릭 - 관련 키워드 선택 : 선택한 키워드로 판정이 되면 '결과보기' 화면 이동 : 선택한 키워드로 판정이 안 되면 '질의응답' 화면으로 이동 - 판정 물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없는 경우 : 입력 키워드와 관련된 '질의응답' 화면으로 이동 ✓ 관련 키워드 선택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간소화되며, 선택한 키워드만으로 전략물자 판정이 가능한 경우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감</p> 

단계	방법
6	<p>① ‘출력’을 누르면 물품의 통제번호와 통제번호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내용이 미리보기 화면의 팝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보기 창을 통해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 <p>② ‘응답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응답 버튼 가 모두 로 초기화 되며 특성기재 편집 텍스트 박스도 사라짐</p> <p>③ ‘원문보기’는 특성기재에 대한 국제 표준 원문(영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생성, ‘출력’을 클릭하면 원문보기 화면 출력 가능</p> <p>④ 질의응답 내용의 하위 질의가 있는 경우 ▼ 클릭하여 하위의 질의응답 내용을 확인 후 응답. ▲ 클릭해서 하위의 질의 내용을 접을 수 있음. 질의응답의 하위 응답에 따라 상위 질의응답은 자동 작성</p> <p>⑤ 질의응답 화면의 초기 응답 버튼은 이며, 내용에 부합할 경우 응답 버튼을 클릭하면 로 변환되며 특성기재에 대한 설명을 편집 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타남</p> <p>⑥ ‘품목해설서’를 누르면 판정 품목에 대한 해설과 사진이 담긴 팝업이 생성되며 ‘출력’을 클릭하면 내용 출력 가능 ※ 각 통제번호별 질의응답 시 통제번호의 품목해설서를 참고</p> <p>⑦ 질의응답한 통제번호에 대한 특성기재 내용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값으로 질의응답의 내용이 작성되며, 사용자가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기재를 작성 <p>⑧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 질의응답한 내용이 임시 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저장된 내용은 ‘판정/허가 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 자가판정 임시 저장 내역’에서 확인 가능 - 계속 판정을 진행하려면 ‘질의응답’버튼 클릭 <p>⑨ ‘판정’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질의응답에 대한 판정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해당’으로 판정 시 ‘해당’ 판정 통제번호와 관련된 전략물자에서 통제하지 않는 사항(예외사항 확인)에 대해 확인하는 화면 나타남 <p>※ 답변 시 ‘모름’을 선택하는 경우, 최종 결과가 전문판정 등록화면으로 전환되므로, 판정을 위한 자료 확보 先 필요</p>

단계	방법
6	 <p>자사제품(or 신청품목)과 비교해 주세요</p> <p>[5A002.] 정보보안 시스템, 장비, 구성을 및 부속품</p> <p>[5A002.a.] a. 기술된 보안 알고리즘을 가진 정보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되고, 그 암호 기능이 사용할 수 있거나 활성화 되었거나 또는 보안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암호 활성화 수단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것</p> <p>[5A002.b.] b. 암호 활성화 토큰 기술해설</p> <p>[5A002.c.] c. 암호화 키를 사용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기술해설</p> <p>[5A002.d.] d. 초광대역(ultra-wideband) 변조기술 시스템을 위한 채널코드, 스크램블링코드, 또는 네트워크식별코드를 생성하는 암호화기법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p> <p>[5A002.e.] e. 주파수 흐름(frequency hopping) 시스템을 위한 흐름 코드(hopping code)를 포함하여 5A002.d.에서 통제되지 않는 할산 스크립트 등 부호를 생성하기 위한 암호화기술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p> <p>특성기재</p> <p>예) 우리장품은 나홀소재의 3인치 구강을 가진 제품입니다.</p> <p>7</p> <p>8</p> <p>9</p>
7	<p>✓ 전략물자 ‘해당’, ‘비해당’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어 : 판정하기 위해 처음 입력하신 키워드가 표시 - 통제번호 : 판정하는 통제번호가 표시 - 국제체제 : 판정하는 통제번호의 국제체제가 표시 <p>① 질의응답 화면의 6단계 ⑥과 동일한 내용을 기술, 판정한 통제번호와 관련된 품목해설서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남</p> <p>② ‘사례집’을 누르면 판정 통제번호의 대북 전략물자 판정사례 확인 가능</p> <p>③ ‘등록’ 버튼을 눌러 판정등록 화면으로 이동해 판정결과를 시스템에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결과를 등록해야만 판정서 출력 가능 - ‘등록’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관련 판정 정보의 결과 내용은 ‘판정/허가 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 자가판정 임시저장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p>8</p> <p>9</p>
7	<p>▶ 산업용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가 비해당이라 하더라도, 러시아/벨라루스 향 수출 시 다음 섹션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이 필수</p> <p>해당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①</p> <p>검색어 : 라우터 통제번호 : 5A002.d.1. 국제체제 : WA</p> <p>[5A002.d. 초광대역 변조기술 시스템을 이용한 채널코드, 스크램블링코드, 또는 네트워크 식별코드를 생성하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p> <p>②</p> <p>③</p> <p>전략물자 INFOHUB</p> <p>등록</p>

단계	방법
8	<p>① HS번호는 반드시 조회를 통해서 입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HS정보 검색창 활성화 - HS번호 또는 HS품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HS번호가 입력됨 - 클라우드 SaaS 등 무형의 SW의 경우 조회화면 하단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를 선택 - 향후, HS 오입력/변경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판정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자가판정을 변경된 정도로 새로 실시하여야 함 <p>※ HS번호 검색 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무역안보관리원(02-6000-6400)으로 문의 필요</p> <p>② 제품의 물품명 입력</p> <p>※ 제품의 물품명은 신청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기재 가능</p> <p>③ 제품 모델명, 시리얼 넘버, 상세 제품명 등 제품 정보 입력</p> <p>※ 제품의 모델명은, 신청 품목의 사양(Specification)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여야 하며, 없는 경우 자체 부여 필요(첨부파일에도 반영 필수)</p> <p>④ 제품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한 상세 내용 기술</p> <p>⑤ 제품의 용도에 대해 상세 내용 기술</p> <p>⑥ 자가판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상세 근거를 기재</p> <p>⑦ 자가판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근거문서, 사양서 등을 등록</p> <p>※ 전문판정 신청에 준하는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략물자수출 입고시」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비할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하여 교육, 오류 정정요구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p> <p>⑧ 등록 버튼 누르기</p> <p>※ 다음 장에서 그림</p>

단계	방법															
	<p>① 품목정보</p> <p>(*)필수입력 항목</p>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30%;"> 1 HS번호 * <input type="text"/> </td> <td style="width: 7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청 제출자료와 동일한 HS번호로 입력 <input type="checkbox"/>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td> </tr> <tr> <td colspan="2"> 2 물품명 * <input type="text"/> </td> </tr> <tr> <td colspan="2"> 3 모델번호 모델명 * <small>형식 및 규격</small> <input type="text"/> </td> </tr> <tr> <td colspan="2"> 4 규격 * <input type="text"/> </td> </tr> <tr> <td colspan="2"> 5 용도 * <input type="text"/> </td> </tr> <tr> <td colspan="2"> 6 판정 상세근거 * <input type="text"/> </td> </tr> </table> <p>② 첨부파일</p> <p>첨부파일</p> <p>■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략물자 관정서에는 ECON 코드(奥)와 같은 타정부기관에서 판정받은 결과 또는 동일모델의 전문관정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판정 대상 물품 관련 정보를 불성실하게 등록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7 파일추가</p> <p>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첨부파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양서 등이 없을 경우, 삽물양식을 참고하여 첨부바랍니다. WPS</p> <p><small>주의) 첨부파일의 파일명에는 특수문자 (&, #, - 등) 사용 불가</small></p>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30%;">파일유형 선택</td> <td style="width: 30%;">제출예정</td> <td style="width: 40%;">첨부된 파일명</td> </tr> </table> <p>8 등록</p>	1 HS번호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청 제출자료와 동일한 HS번호로 입력 <input type="checkbox"/>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2 물품명 * <input type="text"/>		3 모델번호 모델명 * <small>형식 및 규격</small> <input type="text"/>		4 규격 * <input type="text"/>		5 용도 * <input type="text"/>		6 판정 상세근거 * <input type="text"/>		파일유형 선택	제출예정	첨부된 파일명
1 HS번호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청 제출자료와 동일한 HS번호로 입력 <input type="checkbox"/>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															
2 물품명 * <input type="text"/>																
3 모델번호 모델명 * <small>형식 및 규격</small> <input type="text"/>																
4 규격 * <input type="text"/>																
5 용도 * <input type="text"/>																
6 판정 상세근거 * <input type="text"/>																
파일유형 선택	제출예정	첨부된 파일명														

단계	방법																																																																								
9	<p>✓ 상단 메뉴 판정/허가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진행현황을 클릭하면 진행 현황의 전체 화면으로 이동</p> <p>① 의 검색 양식에 따라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p> <p>② 영역에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리스트로 나타남</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th> </tr> <tr> <th colspan="6">▶ 판정/허가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 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6"> ① ·판정결과 검색 ·증명/기술 검색 ·제조 선택 ·HS 선택 ·증명번호 선택 ② ·업체명 선택 ·선택 선택 ·생성자 선택 ·증명/기술명 선택 ·사용자번호 선택 ③ ·모델명 선택 </td> </tr> <tr> <td colspan="6"> ④ 총 10 개 / 처리되었습니다 [1/1] 선택 </td> </tr> <tr> <td colspan="6">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번호</th> <th>업체명</th> <th>증명/기술명</th> <th>모델</th> <th>규격</th> <th>판정결과</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선풍기</td> <td>선풍기</td> <td>HS</td> <td></td> <td></td> <td></td> <td>등록번호</td> </tr> <tr> <td>2320406572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6598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제품111</td> <td>제품11</td> <td>비해당</td> </tr> <tr> <td>2320408052 2023-10-19</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SERV641.3T291 WATER FLOWSENSOR</td> <td>0.5~1.0 L/MIN 3201000000</td> <td>SERV641.3T291 SERV641.3T2...</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8270 2023-06-28</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test 061500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						▶ 판정/허가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 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						① ·판정결과 검색 ·증명/기술 검색 ·제조 선택 ·HS 선택 ·증명번호 선택 ② ·업체명 선택 ·선택 선택 ·생성자 선택 ·증명/기술명 선택 ·사용자번호 선택 ③ ·모델명 선택						④ 총 10 개 / 처리되었습니다 [1/1] 선택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번호</th> <th>업체명</th> <th>증명/기술명</th> <th>모델</th> <th>규격</th> <th>판정결과</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선풍기</td> <td>선풍기</td> <td>HS</td> <td></td> <td></td> <td></td> <td>등록번호</td> </tr> <tr> <td>2320406572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6598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제품111</td> <td>제품11</td> <td>비해당</td> </tr> <tr> <td>2320408052 2023-10-19</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SERV641.3T291 WATER FLOWSENSOR</td> <td>0.5~1.0 L/MIN 3201000000</td> <td>SERV641.3T291 SERV641.3T2...</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8270 2023-06-28</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test 061500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body> </table>						제품번호	업체명	증명/기술명	모델	규격	판정결과	기타	선풍기	선풍기	HS				등록번호	2320406572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6598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제품111	제품11	비해당	2320408052 2023-10-19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SERV641.3T291 WATER FLOWSENSOR	0.5~1.0 L/MIN 3201000000	SERV641.3T291 SERV641.3T2...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8270 2023-06-28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test 061500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																																																																									
▶ 판정/허가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 온라인자기판정 진행현황																																																																									
① ·판정결과 검색 ·증명/기술 검색 ·제조 선택 ·HS 선택 ·증명번호 선택 ② ·업체명 선택 ·선택 선택 ·생성자 선택 ·증명/기술명 선택 ·사용자번호 선택 ③ ·모델명 선택																																																																									
④ 총 10 개 / 처리되었습니다 [1/1] 선택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번호</th> <th>업체명</th> <th>증명/기술명</th> <th>모델</th> <th>규격</th> <th>판정결과</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선풍기</td> <td>선풍기</td> <td>HS</td> <td></td> <td></td> <td></td> <td>등록번호</td> </tr> <tr> <td>2320406572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6598 2023-11-17</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td> <td>7600620000</td> <td>제품111</td> <td>제품11</td> <td>비해당</td> </tr> <tr> <td>2320408052 2023-10-19</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SERV641.3T291 WATER FLOWSENSOR</td> <td>0.5~1.0 L/MIN 3201000000</td> <td>SERV641.3T291 SERV641.3T2...</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r> <td>2320408270 2023-06-28</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td> <td>test 0615000000</td> <td>test</td> <td>비해당</td> <td>상세보기</td> </tr> </tbody> </table>						제품번호	업체명	증명/기술명	모델	규격	판정결과	기타	선풍기	선풍기	HS				등록번호	2320406572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6598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제품111	제품11	비해당	2320408052 2023-10-19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SERV641.3T291 WATER FLOWSENSOR	0.5~1.0 L/MIN 3201000000	SERV641.3T291 SERV641.3T2...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8270 2023-06-28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test 061500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제품번호	업체명	증명/기술명	모델	규격	판정결과	기타																																																																			
선풍기	선풍기	HS				등록번호																																																																			
2320406572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6598 2023-11-17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	7600620000	제품111	제품11	비해당																																																																			
2320408052 2023-10-19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SERV641.3T291 WATER FLOWSENSOR	0.5~1.0 L/MIN 3201000000	SERV641.3T291 SERV641.3T2...	비해당	상세보기																																																																			
2320408270 2023-06-28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선풍기자판기점 박슬민	test 0615000000	test	비해당	상세보기																																																																			

단계	방법
10	<p>① 9단계 ①의 검색 조건 사용 여부에 따라 버튼이 바뀜 - 사용 선택 시 ‘미사용’ 버튼이 활성화되고, 미사용 선택 시 ‘사용’ 버튼이 활성화 -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판정결과를 선택한 후 ‘미사용’ 또는 ‘사용’을 클릭하면 각각의 상태로 변환 - 전체 선택 시 버튼은 나타나지 않음</p> <p>② 9단계 ①의 검색 조건 자사 공개 여부 선택에 따라 버튼이 바뀜 - 자사 공개여부는 기업 마스터 회원 권한 사용자만 설정 가능 - 전체 선택 시 버튼은 나타나지 않음</p> <p>③ 10단계 ④의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판정 목록이나 검색한 판정 목록을 엑셀(Excel)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p> <p>④ 10단계 ⑤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판정 품목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상세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판정서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팝업 생성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정보 입력 화면으로 전환 - 현재 등록된 판정 정보는 유지되며 등록정보를 수정해서 신규 판정 등록 가능</p> <p>⑤ 10단계 ⑥의 ‘서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정보가 입력된 자가판정서 양식이 팝업으로 생성 -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자가판정서 인쇄 가능</p> <p>⑥ 10단계 ⑦의 ‘전문판정’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판정 신청 양식 화면 전환 - 전략기술 자가판정서는 자율준수기업(AA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회원의 경우 예만 등록 및 출력 가능</p> 

- ▶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24.9' 마지막 개정되었으며 지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동향을 주시해야함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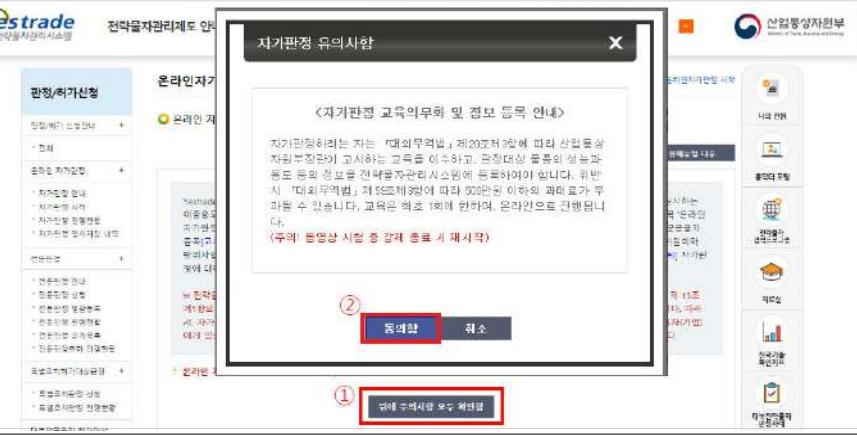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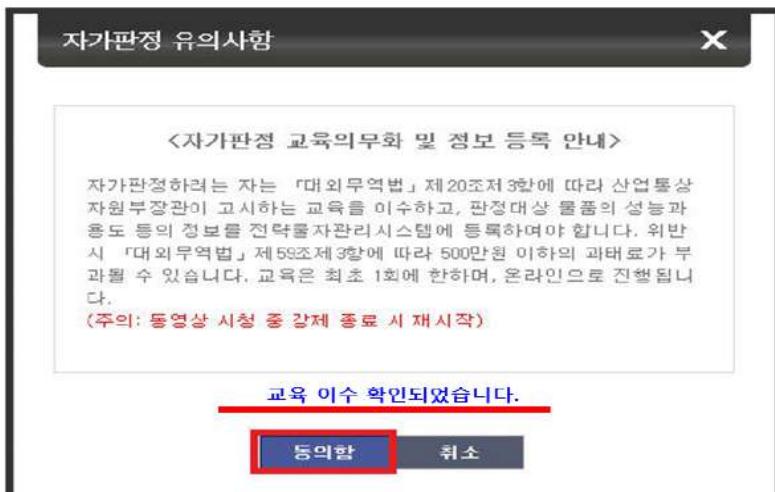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WMD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나지역' 군으로 수출할 때,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의 판단을 위해 수출기업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을 이용할 수 있음
 - ① (Know 요건)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WMD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안 경우
 - ② (Suspect 요건)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WMD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4조(상황허가의 대상) 참고

상황허가 의심사유

- | |
|---|
| ①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③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 ④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 ⑤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 ⑥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 ⑦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 ⑧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 ⑨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 ⑩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 ⑪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⑫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 ③ (Inform 요건) 수출허가 당국으로부터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 ④ (기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거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단계	방법
1	<p>✓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 접속 →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자가판정 마우스 위치 ③(상황허가 전략물자) 자가판정 클릭 또는 ③ 판정/허가신청 > 상황허가 대상판정 > (상황)자가판정 등록</p> 
2	<p>✓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시 온라인 교육 필수 진행 팝업창 ① '주의사항 모두 확인함' 클릭 → ② '동의함' 클릭</p> 
3	<p>✓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확인창 팝업 ✓ '동의함' 클릭</p> 

▶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 이수해야 하는 동영상과 동일한 동영상

- 연계표를 검색하여(물품명, HSK 등)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화면에 띄워둠(후속 단계에서 번호 입력 필요)

단계	방법													
	<p>①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은 반드시 상단의 “상황허가 품목 핵심키 워드 및 HS 연계표 다운(별표2의2 관련)”을 클릭하여 확인하여야 함</p> <p>(상황허가대상품목) 온라인자가판정 시작</p> <p>▶ 관정/허가 신청 > 상황허가대상판정 > (상황)자가판정 등록</p> <p>● 온라인 자가판정이란?</p>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고객 동영상 시청 자가판정 이용매뉴얼 다운(별표 2 참조) 상황허가 품목 핵심키워드 및 HS 연계표 다운(별표 2의2 관련)</p> <p>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3조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 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판정서 반드시 상단의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HS 연계표”를 다운로드 한 후 확인하여야 합니다.</p> <p>연계표 상의 798개 품목은 ①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의 품목(69개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과 ② 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의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③ 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품목은 연계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별도의 색 표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 중 ①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 품목을 수출할 때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며, 이와 달리 ② 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자가판정 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p> <p>상황허가 품목에 해당할에도 불구하고 일의로 비해당으로 자가판정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② 온라인 자가판정의 현계 등 자세히 알아보기</p> <p style="text-align: center;">위에 주의사항 모두 확인함</p> <p>※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 code 연계표</p> <p>4 - 연계표 상 노란색 배경으로 비고란에 “HSK 해당”으로 기재된 품목의 경우 HSK 6자리(앞에서부터)가 일치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임</p> <table border="1"> <tr> <td>④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이 용액 또는 오일 조는 가스 관이 라이프</td> <td>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seamless, of stainless steel</td> <td>7304.10.00</td> <td>—</td> <td>7304.11.0009</td> <td>HSK 해당</td> </tr> </table> <p>- 연계표 상 노란색 배경 이외의 품목의 경우 “HSK”는 참고사항으로, 상세 사양에 따라 판정 하여야 함</p> <table border="1"> <tr> <td>통신 장비</td> <td>별표2 5A001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통신 장비로서 다음의 것</td> <td>Telecommunication equipment, not controlled by 5A001;</td> <td>—</td> <td>8517.61-0000 8517.62-1010 8517.69-3000 8517.69-4000 8517.79-4000</td> </tr> </table> <p>② 1단계 기본정보에서는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가 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음</p> <p>③ 1단계 기본정보 하단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출코자 하는 국가를 5개 중 선택</p> <p>● 거래자정보 등록</p> <table border="1"> <tr> <td>수입국 *</td> <td><input type="radio"/> 이란 <input type="radio"/> 시리아 <input type="radio"/> 파키스탄 <input type="radio"/> 러시아 <input type="radio"/> 벨라루스</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저장 후 다음단계 이동</p>	④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이 용액 또는 오일 조는 가스 관이 라이프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seamless, of stainless steel	7304.10.00	—	7304.11.0009	HSK 해당	통신 장비	별표2 5A001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통신 장비로서 다음의 것	Telecommunication equipment, not controlled by 5A001;	—	8517.61-0000 8517.62-1010 8517.69-3000 8517.69-4000 8517.79-4000	수입국 *	<input type="radio"/> 이란 <input type="radio"/> 시리아 <input type="radio"/> 파키스탄 <input type="radio"/> 러시아 <input type="radio"/> 벨라루스
④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이 용액 또는 오일 조는 가스 관이 라이프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seamless, of stainless steel	7304.10.00	—	7304.11.0009	HSK 해당									
통신 장비	별표2 5A001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통신 장비로서 다음의 것	Telecommunication equipment, not controlled by 5A001;	—	8517.61-0000 8517.62-1010 8517.69-3000 8517.69-4000 8517.79-4000										
수입국 *	<input type="radio"/> 이란 <input type="radio"/> 시리아 <input type="radio"/> 파키스탄 <input type="radio"/> 러시아 <input type="radio"/> 벨라루스													
▶ 수입국가에 따라 통제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달라짐														

단계	방법
5	<p></p> <p>④ 품목/기술정보 등록화면에서 “품목정보”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란에 판정 결과를 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일 경우 4단계의 연계표에서 확인한 번호를 기입 ⑤ HS번호~사용처 입력 방식은 (산업용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동일 ⑥ 무기 구분 항목에 대량파괴무기(WMD)에 해당하는지 재래식무기에 해당하는지 선택 ⑦ 첨부파일도 매뉴얼, 카달로그,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산업용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동일하게 업로드 필요
6	<p></p> <p>⑧ (상황) 자가판정 진행현황에서 판정 목록 및 출력 가능</p>

- ▶ 기업의 전략물자 담당자는 수출 제품 및 기술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정심사자가 판정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면 보다 빠르고 명확한 판정이 가능
- ▶ 매뉴얼, 카달로그, 사양서 등은 기업 홈페이지 내 제품 및 기능의 이해가 가능한 브로슈어, 설명서로 대체 가능
- ▶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전문판정 신청 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분야별 ‘판정 답변자료’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정심사를 진행하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임

- ※ 판정
- 답변자료(사전질의)는 안내서 47~49페이지 참조
- ▶ 판정 소요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미비로 인한 보완요청 시 보완 소요일은 판정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아 완료(예정)일은 해당 소요일 만큼 자동 연기됨
 - ▶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판정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전략물자) 전문판정

-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전문판정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기관에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함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정)
 - 전략물자의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전문판정 신청 업체에게 회신
 - 전문판정 관련 근거
 - ▶ 「대외무역법」 제20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 제16조
- 전문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 전문판정 신청서
 -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험성적서는 품목의 성능 및 규격이 명시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고객전용 홈페이지 <https://customer.ktl.re.kr>
- 전문판정 소요기간 및 유효기간
 -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전문판정일로부터 2년

※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문판정의 효력
 - 전문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
 - ▶ 전문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당초 전략물자로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받은 경우
- 전문판정 기관(전략물자) 및 수수료
 - 무역안보관리원
 - 현재는 무료로 운영

※ 다음페이지에서 서식 안내

전문판정신청서 작성 방법			
〈 전문판정(신청)서 양식 〉			
<p>[별지 제4호 서식] Annexed paper No. 4</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판정(신청)서 Classification (Application) Form</p>			
처리기간 : 15일 Handling Time : 15 days			
① 신청인 Applicant	상호 Name of Company	신청인 Applicant	
	주 소 Address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 화 Telephone	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② HS번호 HS Code	④ 형식 및 규격 Type and Specifications		
모델번호 및 모델명(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		규격/용도 Specifications/Usage	
③ 물품명/기습명 및 기술내용 Item			
⑤ 판정 결과 Classification results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해당/비해당)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Uncontrolled)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해당(Yes) <input type="checkbox"/> 비해당(No) <input type="checkbox"/> 예외적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Item(s))	해당(Yes) <input type="checkbox"/> 비해당(No) <input type="checkbox"/> 예외적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군용물자품목(Munition's)	해당(Yes) <input type="checkbox"/> 비해당(No) <input type="checkbox"/> 예외적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상황허가대상품목(designated Catch-all Item(s))	해당(Yes) <input type="checkbox"/> 비해당(No) <input type="checkbox"/>	
	• 등재번호 Classification No. :		
	• 등재체제 (해당체제 모두 표기) : [WA]민감 <input type="checkbox"/> [WA]초민감 <input type="checkbox"/> [NSG]Part1 민감 <input type="checkbox"/> [MTCR]Cat1 <input type="checkbox"/>		
⑥ 판정 상세근거 Classification comments			
⑦ 유효기간 Validity of Classification	⑧ 발급번호 Issue No.		
⑨ 결과 공개 동의 여부 Consent to share classification results	<input type="checkbox"/> 공개 (With al) <input type="checkbox"/> 일부공개 (With Specified Person)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With None)		
<small>「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등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small> <small>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20(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3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small>			
<small>20</small> <small>신 청 인</small> <small>(서명 또는 인)</small> <small>Name of Applicant</small> <small>Signature</small>			
<small>「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행과 같이 전략물자등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small> <small>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5)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3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small>			
<small>20</small> <small>기관장</small> <small>(인)</small> <small>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small>			

* 주의사항 :

- ⑤ 판정결과가 “해당”인 물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수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잘못된 정보 등에 따른 판정오류 및 그로 인한 무허가 수출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문판정(신청)서는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으로 Yestrade를 통해 전문판정 신청 시 자동으로 양식에 맞게 생성됨

▶ ④형식 및 규격 관련, SW의 경우 버전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며, 버전이 없는 경우 버전을 생성하여 추가하여야 함

▶ 허가 관련, 세관 제출 서류의 제품명(버전포함)과 판정서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통관하지 않더라도 버전 작성 必)

▶ 또한, 판정 제출서류(매뉴얼, 사양서 등)에도 상기 기재한 모델명을 기재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우리 기업에서는 SW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위해 표준화된 버전 체계, 버전 업데이트 기준 등을 수립하는 대응이 필요함

[참고사례]

▶ A기업의 경우
버전관리를
마이너(UI개선, Bug Fix 등)와 메이저(기능 추가, 기능개선 등)로
나누어, 유효기간 2년
간격의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로 버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판정(신청)서 작성 방법 〉

항목	작성요령	참고사항
① 신청인	신청인 상호와 신청인 성명을 기재	
(상호)	신청인의 상호를 기재	
(주소)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	
(전화)	신청인의 전화를 기재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인의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	무역업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미기재
② HS번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稅番)을 10 단위까지 기재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인 경우 미기재
③ 물품명 (기술명 및 기술내용)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물품명을 기재
④ 형식 및 규격	품목의 형식 및 규격을 기재	판정에 필요한 모델명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모델번호 및 모델명)	모델번호가 있는 경우 모델명과 함께 기재	여러 모델명을 기재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규격)	재질, 사이즈, 두께, 전압, 출력 등 물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여러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용도)	신청품목의 고유기능, 목적, 부품의 경우 완제품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	
⑤ 판정 결과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 관련 기재	
(전략물자품목 관련 품목 해당 여부)	발급기관 기재	이중용도 품목, 원자력전용품 목, 군용물자품목 등 해당, 비 해당, 예외적 비해당 중 표기
(상황허가대상 품목 여부)	발급기관 기재	해당 또는 비해당 표기
(통제번호)	발급기관 기재	전략물자 등 해당 시 통제 번호 기재
(통제체제)	발급기관 기재	WA(만감), WA(초만감), NSG(Part1 만감), MTCR(Cat1) 중 해당체제 모두 표기
⑥ 판정 상세근거	발급기관 기재	
⑦ 유효기간	발급기관 기재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기재
⑧ 발급번호	발급기관 기재	
⑨ 결과 공개 동의 여부	판정결과를 공개, 일부공개 및 비공개 중 선택	

판정 답변자료 양식(소프트웨어)				
<p>* 본 질문 답변자는 소프트웨어 품목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정을 위한 질문지입니다.</p> <p>* 정확한 판정을 위해 아래 질문 답변지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가급적이면 꼭 서술형 답변 작성란에 답변 선택(예 또는 아니오)의 이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분	내용	예	아니오	서술형답변
(1)	<p>신청 소프트웨어(S/W)가 아래의 “보안 프로토콜” 또는 “암호 알고리즘”을 하나 이상 “사용” 또는 “지원” 합니까? (예/아니오)</p> <p>a. SSL, TLS, SSH, SSHv2, HTTPS, IPsec, MACsec, VPN, SCP, SFTP, SNMP v3, LTO, IBM IMM, FDE, PGP, WEP, WPA-PSK, WPA-TKIP, WPA-EAP, AES-CCMP, WPA, WPA2, WPA-2PSK, TKIP, HP Insight control, TrustSec, Supervisor Engine, HP iLO4, GETVPN, LDAP, H.235, EMC OneFS OS, SED, wireless HART, SRTP, ZRTP, S/MIME 등의 보안 프로토콜 등</p> <p>b. AES, TEA3, 3-DES, SEED, RSA, ARIA, ECC, ECDH, ECDSA, RC5, Diffie-Hellman over Z/pZ, Diffie-Hellman over an elliptic curve 등의 암호 알고리즘</p>	서술형 답변에 반드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 또는 암호 알고리즘 명시		
상기 (1)번 항목의 답변이 “예”인 경우에만 다음 (2) ~ (9)번 항목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2)	<p>신청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보안 프로토콜 또는 암호 알고리즘을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까? (예/아니오)</p> <p>a. “인증”;</p> <p>b. 디지털 서명;</p> <p>c. 정보 무결성;</p> <p>d. 부인 방지;</p> <p>e. 디지털 저작권 관리(복사방지 “소프트 웨어”의 실행 포함);</p> <p>f. 엔터테인먼트, 대중 상업 방송 또는 의료 기록 관리를 위한 암호화 또는 복호화; 또는</p> <p>g. 위 a.~f.의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위한 키 관리.</p> <p>정의:</p> <p>“인증”은 정보 시스템의 내부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사용자의 신분, 처리 또는 장치를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메시지나 기타 정보의 출처 또는 내용의 입증을 비롯하여 패스워드, 개인식별번호(PIN), 유사 데이터를 비인증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적용된 것을 제외한, 파일(file)이나 문서(text)의 암호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접근제어를 포함한다.</p>	서술형 답변에 반드시 원쪽의 사용목적 (a ~ g) 선택 후 세부내용 작성		

- 판정 답변자료의 다운로드는 전문판정 신청방법의 6단계 참조(안내서 52쪽)
- 또한, 판정 답변자료는 공식적인 서식은 아니라, 전문판정 시 심사판정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참고 자료로, 향후 추가 보완요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1)의 a, b에 해당되는 보안프로토콜, 암호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SW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2)의 경우 5A002.a 기술해설에 해당하는 통제 예외 사항임

- (3)의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이란, 미국의 통제번호 체계로, 한국의 통제번호보다 넓은 범위이며,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 (5)~(8)의 경우, 대중시장(Mass Market)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항임
- 대중시장(Mass Market)은 가격 및 제품설명, 기능 등이 공개되어 있고, 대부분의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설치가 가능해야함
-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클라우드 마켓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 시 대중시장(Mass Market)의 예외범위에 포함됨

(3)	(Option 질문) 신청 품목의 ECCN 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4)	<p>아래의 4 가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규제 없이 대중적으로 "소매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합니까? (예/아니오)</p> <p>a.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 b. 우편 주문 거래 c. 전자 상거래 d. 전화 주문 거래</p>	서술형 답변에 반드시 왼쪽 구입 방법 (a ~ d) 선택하고 세부내용을 작성		
(5)	<p>소비자가 신청 품목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에게 가격 및 주 기능 정보를 "문의할 필요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 가능합니까? (예/아니오)</p> <p>a.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및 주 기능 정보가 표기된 "catalog (인쇄물)" b. 가격 및 주 기능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한 "URL 주소" (예를 들어, 지마켓, 11 번가, 아마존 등에서 신청 품목의 가격과 주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c.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단순 전화상담 등 단순 가격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p>	서술형 답변에 반드시 가격공개 방법 (a ~ c) 선택하고 세부내용을 작성	a 를 선택한 경우에는 가격정보가 포함된 카탈로그 제출 b 를 선택한 경우 가격정보 확인 가능한 URL 작성 c 를 선택한 경우 가격 제공 방법에 대해 기술	
(6)	신청 품목에 사용된 "암호화 기능(보안 프로토콜 또는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7)	신청 품목은 사용자가 제품 "공급자의 추가 도움 없이"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예/아니오) (필수) 매뉴얼 등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공개된 매뉴얼을 제출			
(8)	신청품목이 상기에 서술된 (4) ~ (7) 조건의 층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출국 해당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이 입수할 수 있고 구체적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9)	<p>신청 소프트웨어는 공개 상용 암호화 표준(프로토콜 또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암호화 기능을 OAM* 목적으로만 사용합니까? (예/아니오)</p> <p>※ 공개 상용 암호화 표준은 (1)번 항목을 참고</p>	하단의 OAM 기능 정의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OAM 목적으로 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서술형 답변 란에 상세히 기술		

* OAM(Operations, Administration or Maintenance)은 다음 기능을 의미합니다.

- a. 다음의 설정이나 관리
- 1.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계정이나 권한
- 2. 품목의 세팅
- 3. 위 a.1, a.2 업무(tasks) 지원을 위한 인증 데이터
- b. 품목의 운영상황이나 수행능력 모니터링 또는 관리
- c. 위 a, b에 언급된 업무(tasks) 지원을 위한 로그(log) 및 감사(audit) 데이터의 관리

* "OAM"에 다음의 어느 업무(tasks) 또는 관련 키 관리 기능(functions)¹⁾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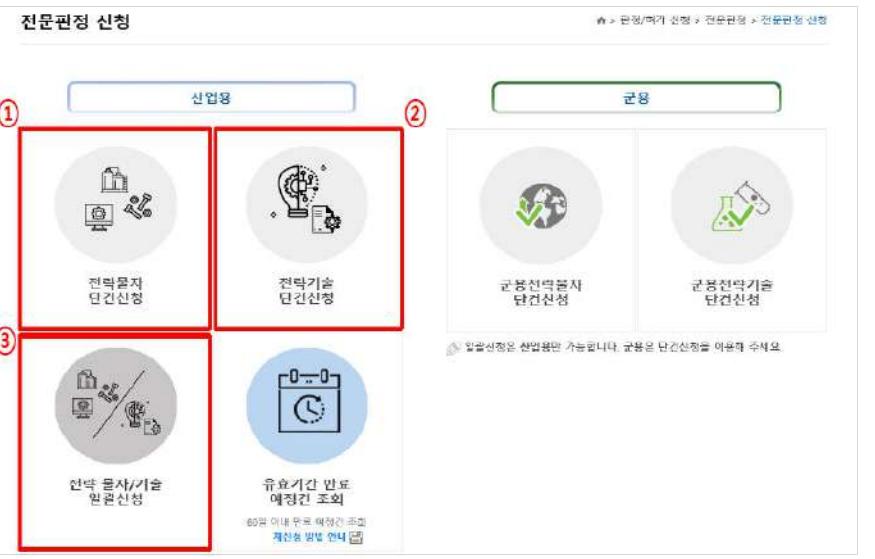
- d. a.1. 또는 a.2.에 언급된 업무(tasks) 지원을 위한 인증 데이터(authentication data)²⁾의 설정 또는 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암호 기능(cryptographic functionality)의 제공이나 업그레이드³⁾
- e. 품목의 포워딩 혹은 데이터 플레인 상의 암호화 기능 수행⁴⁾

※ 문구 설명

- 1) 키 관리 기능 : 데이터 암호화/복호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칭/비대칭 키를 생성, 분배, 관리하는 기능
- 2) 인증 데이터(authentication data) : 인증 데이터는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함. 인증이란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제어로 사용자 인증 (하나의 세션 동안에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서버, 장비 등의 거래 당사자간 신원 주장 (Identity Claim)에 대해 유효성을 성립시키는 것)과 메시지 인증 (교환되는 매 정보 마다 진위 확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3) 암호화 기능의 업그레이드 : 암호화 기능의 동작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 (예 :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변경 등)
- 4) 포워딩 혹은 데이터 플레인 상의 암호화 기능 수행 : 메시지 전달 경로 설정 등의 설정이나 제어를 위한 관리용 데이터 암호화 이외의 사용자가 보내고 받는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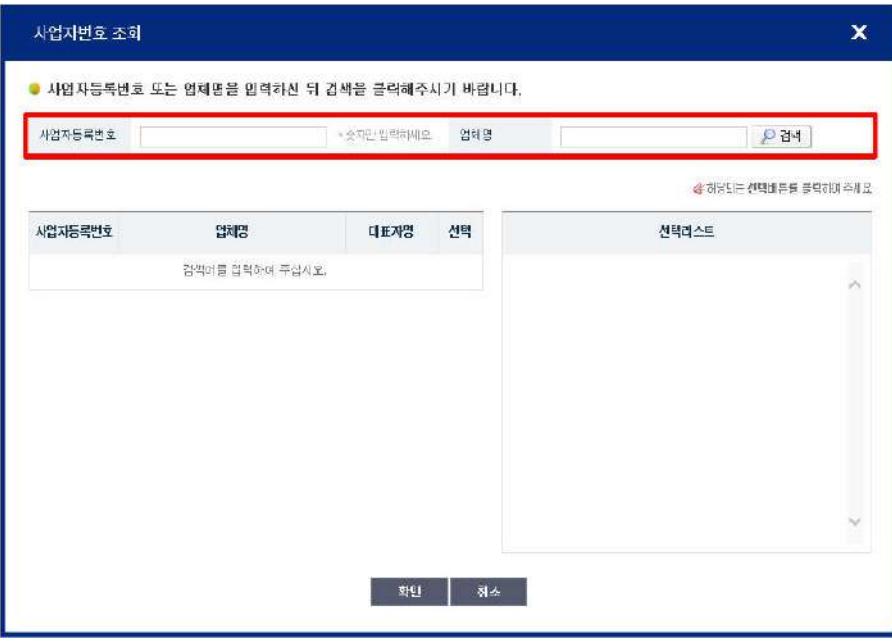
- ▶ 전문판정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전문판정” 신청 클릭

● 전문판정 신청방법

단계	방법
1	<p>✓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p> <p>① ‘전문판정 신청’ 클릭 또는 ② 상단 메뉴의 ‘판정/허가신청’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전문판정 신청’ 클릭</p> 
2	<p>① 전략물자 관련 1건 품목의 전문판정 신청 시 클릭 ② 전략기술 관련 1건 품목의 전문판정 신청 시 클릭 ③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 관련 다수 품목의 전문판정 신청 시 클릭</p> 

단계	방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판정 신청 시 유의사항 팝업창 ✓ 확인 후 '닫기'클릭 <p>전문판정 신청 시 유의사항 X</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정확한 전문판정서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종 등의 성능, 용도, 기술적 특성을 표시한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매뉴얼, 상품안내서, 사용서 외 상기 내용 기울한 문서(형식 부판)) (2) 물품 사전만 첨부하거나 형식 및 규격 예만 사양을 표기하는 경우, 전문판정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 판정과 결과가 다른 경우,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정보 모델명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기하신 모델명은 특정 1개 품목만을 지정해야 합니다. (2) 기성품은 Model no., Part no., 주문번호 등을 기준으로 모델명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제조사 별기 불가) (3) 기공품은 Drawing no., Item no., 사내 관리번호 등을 기준으로 모델명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제조사 별기 불가) (4) 사용이 유사한 복수의 품목을 1건에 신청하실 때에는 모든 신청품목의 모델명을 '모델 및 형식란에 각각 표기하시기 바랍니다.(300자 미내) (5) 상기 (4)에 따라 기재하신 모델명이 300자기 넘는 경우 전문판정을 건너 신청하시야 합니다. (6) 저조사명, 품목명은 모델명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별기 불가) (7) 품목정보의 '모델 및 형식'에 기재한 모델명은 첨부하신 제출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닫기</p> </div> <p>① 필수정보로 업체 및 담당자 정보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초기 회원가입 시의 정보와 동일하게 나타나며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변경 입력 (담당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보완 요청 및 판정 완료 시 알람 전송) ② 선택사항은 판정서 발급 시 활용되므로 필요 시 작성 (미작성 가능) ③ '저장 후 다음단계 이동' 버튼 클릭</p>																																				
4	<p>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산업용) ▶ 판정/허가 신청 > 전문판정 >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산업용)</p> <p>※ 원료예정일 : 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법적공휴일 제외)</p> <p>1단계 기본정보 → 2단계 품목/기술정보 (바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정보 (확인 후 제출) → 경도판정 이용메뉴얼 다운</p> <p>기본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세요!</p> <p>업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①</td> <td>사업자등록번호 *</td> <td>12082003002</td> <td style="text-align: right;">+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필수정보</td> <td>상호 *</td> <td>전략물자관리원</td> <td>+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변경</td> <td>대표자 성명 *</td> <td>이근호</td> <td>+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td> <td>주소 *</td> <td>00164</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1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원 16</td> </tr> <tr> <td></td> <td>전화번호 *</td> <td></td> <td>+ 대표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td> <td>담당자 성명 *</td> <td></td> <td>*이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자주 쓰는 담당자 목록</td> </tr> </table> <p>담당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②</td> <td>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td> <td></td> <td>+ 대표가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필수정보</td> <td>담당자 휴대폰 *</td> <td></td> <td>*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변경</td> <td>담당자 E-mail *</td> <td></td> <td>*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주소를 기재해주세요.</td> </tr> </table>	①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03002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필수정보	상호 *	전략물자관리원	+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변경	대표자 성명 *	이근호	+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 *	00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1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원 16		전화번호 *		+ 대표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성명 *		*이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자주 쓰는 담당자 목록	②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		+ 대표가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필수정보	담당자 휴대폰 *		*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변경	담당자 E-mail *		*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①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03002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필수정보	상호 *	전략물자관리원	+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변경	대표자 성명 *	이근호	+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 *	00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1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원 16																																		
	전화번호 *		+ 대표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성명 *		*이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자주 쓰는 담당자 목록																																		
②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		+ 대표가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필수정보	담당자 휴대폰 *		*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변경	담당자 E-mail *		*판정 진행현황(보완요청, 한도서)을 안내 받을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단계	방법																								
5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② 선택사항</div> <p>*본경서 발급대 활용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무역업 등록번호(고유번호)</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21314</td> <td style="width: 40%;">*무역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상호(영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KOSTI</td> <td>*영문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대표자(영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영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주소(영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담당자 성명(영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워임 받은업체의 실무담당자 영문 이름을 기재해주세요.</td> </tr> <tr> <td>SMS 참조수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SMS 참조 수신자 휴대폰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010-0000-0000, 011-1111-1111 (도구분)</td> </tr> <tr> <td>E-mail 참조수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참조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aaa@aaa.com, bbb@bbb.com (도구분)</td> </tr> <tr> <td>FAX</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FAX번호를 기재해주세요.</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10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0;">③ 저장 후 다음단계 이동</div>	무역업 등록번호(고유번호)	21314	*무역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영문)	KOSTI	*영문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대표자(영문)		*영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영문)			담당자 성명(영문)		*워임 받은업체의 실무담당자 영문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SMS 참조수신		*SMS 참조 수신자 휴대폰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010-0000-0000, 011-1111-1111 (도구분)	E-mail 참조수신		*참조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aaa@aaa.com, bbb@bbb.com (도구분)	FAX		*FAX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무역업 등록번호(고유번호)	21314	*무역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영문)	KOSTI	*영문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대표자(영문)		*영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영문)																								
	담당자 성명(영문)		*워임 받은업체의 실무담당자 영문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SMS 참조수신		*SMS 참조 수신자 휴대폰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010-0000-0000, 011-1111-1111 (도구분)																						
	E-mail 참조수신		*참조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aaa@aaa.com, bbb@bbb.com (도구분)																						
FAX		*FAX번호를 기재해주세요.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판정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 전문판정 결과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음 - 전체공개 : 모든 대상에게 전문판정 결과 공개 - 일부공개 : 특정 대상만 지정하여 전문판정 결과 공개 																									
6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신청서 제출 정보 (확인 후 제출) </div> <p>※ 원료예상일 : 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법적공휴일 제외)</p> <p>● 판정결과공개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공개여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공개여부란? 전문판정 결과를 전체 또는 특정 업체에 공개하는 가능입니다. 공개된 전문판정 데이터는 (전체 또는 공개하도록 설정된) 업체가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2단계 품목/기술정보 단계의 "판정발급번호"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div>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radio"/> 전체공개 <input type="radio"/> 일부공개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이력보기"/>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접수 신청서 복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신업종 전략별자 전문판정 신청</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소재 □ 협회 □ 상표 □ 기계 □ 건자 □ 원자력</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 유사한 품목분류로 선택</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조합 ④ 한글판 제출자로와 동일한 HS번호 입력</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한 소프트웨어</div> </td> </tr> <tr> <td colspan="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div> </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공개여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공개여부란? 전문판정 결과를 전체 또는 특정 업체에 공개하는 가능입니다. 공개된 전문판정 데이터는 (전체 또는 공개하도록 설정된) 업체가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2단계 품목/기술정보 단계의 "판정발급번호"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div>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radio"/> 전체공개 <input type="radio"/> 일부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이력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접수 신청서 복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신업종 전략별자 전문판정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소재 □ 협회 □ 상표 □ 기계 □ 건자 □ 원자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 유사한 품목분류로 선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조합 ④ 한글판 제출자로와 동일한 HS번호 입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한 소프트웨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공개여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공개여부란? 전문판정 결과를 전체 또는 특정 업체에 공개하는 가능입니다. 공개된 전문판정 데이터는 (전체 또는 공개하도록 설정된) 업체가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2단계 품목/기술정보 단계의 "판정발급번호"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div>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radio"/> 전체공개 <input type="radio"/> 일부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이력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접수 신청서 복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신업종 전략별자 전문판정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소재 □ 협회 □ 상표 □ 기계 □ 건자 □ 원자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 유사한 품목분류로 선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조합 ④ 한글판 제출자로와 동일한 HS번호 입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한 소프트웨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border-radius: 5px; font-size: small;">□</div>																									

단계	방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판정 결과 공개 여부에서 일부공개 선택 시 전문판정 결과를 공개할 대상 검색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물품 관련 분야 및 품목을 선택 ✓ 암호화 포함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자' 선택 → '정보보안(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 클릭 ✓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정 답변자료가 필요한 품목으로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야 함 (보완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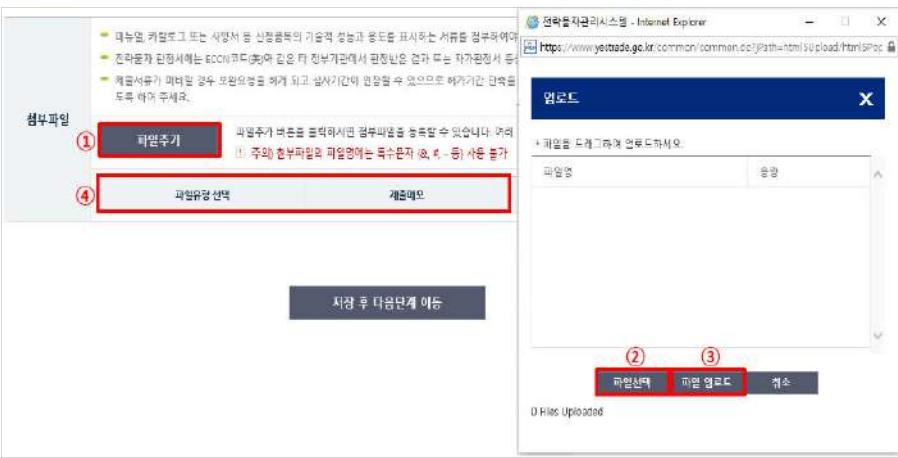
▶ 신청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재분류를 진행하나, 분야별 필수 사전 질문지가 달라 보완요청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분류 선택 필요

- ▶ 클라우드 SaaS의 경우 HS번호 조회 하단, 무형 소프트웨어란에 체크하여 HS번호 입력 생략

단계	방법
9	<p>① HS번호는 조회 버튼을 클릭, HS번호를 직접 기재하거나 ② HS품명을 검색 후 선택</p> <p>※ CD, 컴퓨터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형 소프트웨어인 경우 'V'체크하면 HS번호 생략됨</p> 

- ▶ 물품명은 일반적으로 모델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델명은 제품의 성능을 유일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해야 하며, 제출하시는 매뉴얼, 카달로그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별도의 모델명이 없는 경우, 임의로 부여하고 관련 자료 제출 시에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보완요청 등의 행정소요가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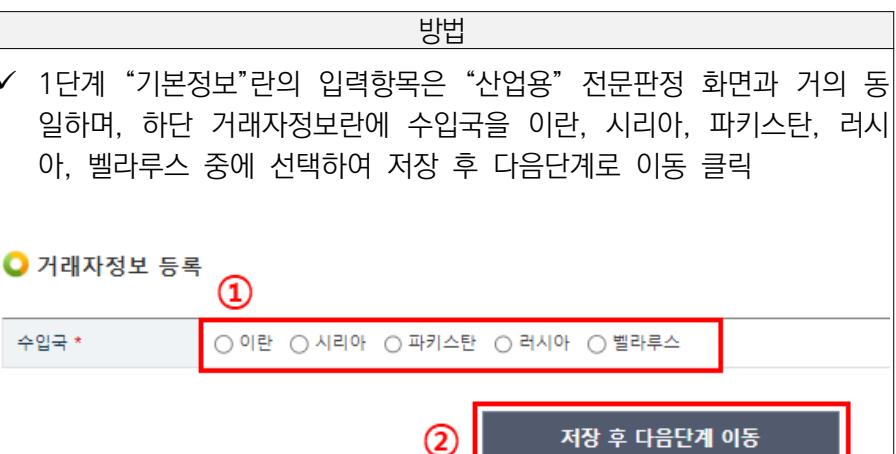
단계	방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한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사양서, 브로슈어 등을 첨부 (판정 답변자료가 필요한 품목은 판정 답변자료도 반드시 첨부) ✓ 판정 답변자료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작성 후 첨부해야 보완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단계	방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한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사양서, 브로슈어 등을 첨부 (판정 답변자료가 필요한 품목은 판정 답변자료도 반드시 첨부) ✓ 판정 답변자료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작성 후 첨부해야 보완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품목/기술정보에서 신청서 제출을 원할 경우 :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1단계 및 2단계 기재 내용 확인 후 제출을 원할 경우 : '저장 후 다음단계 이동' 버튼 클릭 :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판정 내역과 심사중/보완요청 상태의 전문판정 신청 건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메뉴 판정/허가신청 → 전문판정 진행현황 클릭 → 전문판정 진행현황 확인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

- 전술한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과 같이 비전략물자임에도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신청하는 것을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이라고 함
 - 기존 “전략물자” 전문판정과의 차이점은, 최종목적지 국가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에 있으며, 국가에 따라 통제되는 품목이 다름
-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신청방법

단계	방법
1	<p>✓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 접속 → ① 공인 인증서 로그인 ② 전문판정 마우스 위치 ③(상황허가 전략물자) 전문판정 클릭 또는 ③ 판정/허가신청 > 상황허가 대상판정 > (상황)전문판정 등록</p> <p>① 관리자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p> <p>②</p> <p>③</p>
2	<p>✓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전문판정인지, “기술”의 전문판정인지에 따라 맞는 분류를 선택</p> <p>(상황허가대상품목) 전문판정 신청</p> <p>산업용</p> <p>상황허가대상품목 전문판정 신청</p> <p>상황허가대상기술 전문판정 신청</p>

단계	방법
3	<p>✓ 1단계 “기본정보”란의 입력항목은 “산업용” 전문판정 화면과 거의 동일하며, 하단 거래자정보란에 수입국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중에 선택하여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클릭</p> 
4	<p>✓ 2단계 “품목/기술정보” 입력항목도 “산업용” 전문판정 화면과 동일하며, 품목정보에서 “무기구분”란에 대량파괴무기(WMD) 또는 재래식무기 중에 선택</p> 
5	<p>✓ 3단계에서 최종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p>
6	<p>✓ 이후, 진행현황 확인, 인쇄 등의 모든 절차는 “산업용” 전문판정과 동일하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수출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품목정보 입력을 수출 품목 개수 만큼 반복하여 입력하여야 함

02 전략물자 수출허가

-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에 대하여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불법 수출이며, 수출이후의 수출허가는 의미가 없음
- ▶ 웹사이트, 플랫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시점, 또는 하드웨어(서버, PC, 장비 등)에 설치하는 시점 등을 수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음
- ▶ 현재 SaaS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계정”을 열어주는 시점(접근권한 부여)이 수출시점임.

수출허가 개요

-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 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 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
- 전략물자와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가 있으며,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됨

수출허가의 종류

구분	설명
개별 수출허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함
사용자 포괄수출 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 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기술 제외)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품목 포괄수출 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중개허가	전략물을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함.
재수출 허가	수입한 전략물을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경유· 환적허가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 소프트웨어 수출허가 기관
 - 산업통상부(장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 ~ 제9부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허가, 상황허가
- 수출허가 처리 기간
 -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단, 기술적 심사나 수요자에 대한 현지조사,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요기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경우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 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6 전략물자수출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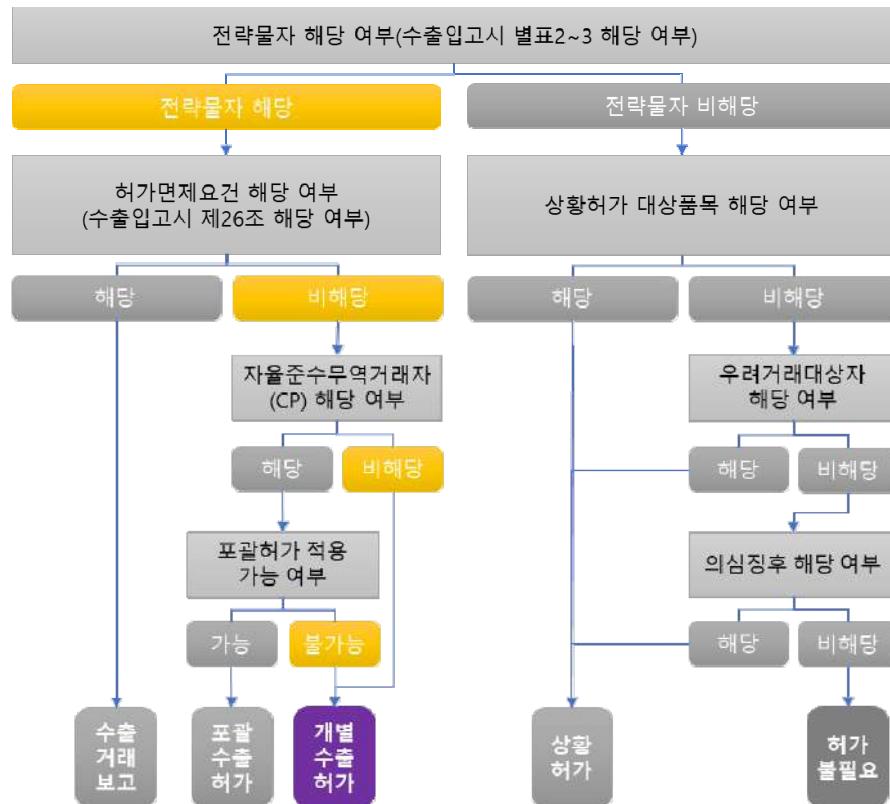
구분	지역명	해당 국가
가	가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미국 4개 자치령 포함 :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29개국)
나	나의1 지역	가지역 및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나의2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11개국)

- ▶ 개별수출허가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거나 수출 물량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경우 개별수출허가가 유리함
- ▶ 직접수출로 최종사용자가 확정된 수출의 경우 개별수출허가가 유리함
- ▶ 개별수출허가는 수출 전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개별수출허가

- 산업통상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
- * 개별 수출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절차도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지역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면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출자 서약서	면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최종사용자 서약서	면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 최종수하인 진술서의 경우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양식

수출자서약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Annexed paper No. 3

수출자 서약서

1. 수출 내용

① 수출자 :

② 수출품/수량 :

③ 구매자 :

④ 최종 수하인 :

⑤ 최종사용자 :

⑥ 최종사용자 홈페이지 :

⑦ 사용 목적 :

2. 최종사용자 확인 방법(✓ 체크 및 상세내역 기재, 근거 자료 별첨)

정부발행 공식 문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기타 방법 :

3. 서약 내용

당사는 본 건을 수출함에 있어 상기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도 수출을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
- 최종사용자로부터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

20 . .

서약자(수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1번 항목은 수출내용을 확인하는 칸으로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는 정부발행 공식 문서 기준 회사명으로 기재

▶ 수출품은 허가 대상 전략물자의 품명과 수량을 모두 기재

▶ 사용목적은 전략물을 최종사용자가 어떠한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상세히 기재(※가장 중요)

▶ ⑥번 항목의 홈페이지란은 없으면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

▶ 2번 항목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를 확인한 방법을 표시하는 칸으로 해당칸에 체크표시하고 확인방법을 기재하며, 확인한 내용은 모두 별첨으로 제출

▶ 수출자 서약서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인감날인하며, 이미지파일/명패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회사 직인은 가능함

▶ 본 문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Yestrade상에 입력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함

- ▶ 최종사용자서약서는 전략물자 제도의 핵심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선행하는 절차로, 소프트웨어 거래의 투명성을 보기 위함임
- ▶ 이에 최종사용자서약서는 반드시 필요함
- ▶ 「대외무역법」제19조(개별 수출허가)제3항에 의하여 해당 수출국가의 현지 법인 및 파트너를 통한 수출의 경우 최종사용자서약서의 경우 최종수하인으로 대체 가능함
- ▶ 다만,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은 수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은 최종수하인(해외 법인, 파트너 등)이 판매한 최종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차후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정부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제19조(개별수출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조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기를 받아 2년 이상 도·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기를 받아 1년 이상 정상 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기를 받아 2년 이상 도·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기를 받아 1년 이상 정상 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수출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사용자서약서 양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Annexed paper No. 2-2			
END-USER STATEMENT(최종사용자 서약서)			
① END-USER (최종사용자)			
NAME OF FIRM	공식 업체명 (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약자 등 사용 불가)		
ADDRESS	주소(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CITY	도시	COUNTRY	국가명
② REPRESENTATIVE OF THE FIRM (대표자 정보)			
NAME	대표자명	TITLE	대표자직책
③ CONTACT PERSON (실무자 정보)			
NAME	실무자명	TITLE	실무자직책
TELEPHONE	연락처	E-MAIL	이메일주소
④ TYPE OR NATURE OF BUSINESS (업태)			
⑤ PURCHASE CONTRACT (구매계약서)			
ITEM (Including Software & Technology)	품목명(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QUANTITY	수량		
PURPOSE OF USE	사용목적 *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로 어떠한 제품을 제조할 것인지 구체적 기재		
PLACE OF STORAGE (Specifically with address)	사용 용도 * 상세주소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 기재		
⑥ STATEMENT OF END USER(최종사용자 서약사항)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ol style="list-style-type: none"> will use it only for the purpose described above, and will not use it or its derivatives for the development or manufactur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or missiles.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If it should be resold or reexported with appropriate reasons, we will get the prior approval from the exporter.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exporter's government written permission is provided.) 			
당사는 상기 품목의 최종사용자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술한 목적을 위해서만 품목을 사용할 것이며, 핵, 생물 및 화학 무기 또는 미사일과 같은 "대량화폐무기"의 개발 또는 제조를 위해 해당 품목이나 그 파생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허가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개인/법인에게 해당 품목 또는 그 파생 품을 재판매하거나 재수출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사유로 재판매 또는 재수출해야하는 경우, 당사는 수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NSG Guideline Part 1에 명시된 원자력 전용 품목의 경우, 수출자와의 정부 서면 허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⑦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OR OFFICIAL SEAL)		최종사용자 서명 또는 직인 * ②번 항목에 기재된 대표자가 직접 확인 서명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서명자명 (대표자 서명이 원칙)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서명자 직책	DATE(mm dd yyyy) 서명일 (월, 일, 년)	
<small>* Note to the exporter: In case of the Item-based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please leave "quantity" and "value" blank.</small>			
<small>*수출자 공지사항: 품목포괄수출허가의 경우, 수량과 가격을 공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mall>			
<p>✓ 최종사용자가 작성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번 항목은 최종사용자의 계약 담당자를 기재 - ⑤번 항목은 "Purpose of Use"에 최종사용자가 제조할 최종 제품을 상세히 기재하며, "Place of Storage"에는 전략물자가 보관될 상세 주소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해야 함 			

최종수하인진술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Annexed paper No.2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 진술서
*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제출면제

① Ultimate Consignee 최종수하인		② Exporter 수출자	
Name 최종수하인 공식 업체명 (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Name 수출자 공식 업체명 (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Address 공식주소 (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Address 공식주소 (정부발행 공식문서 기준)	
City 도시	Country 국가	City 도시	Country 국가
③ Commodities 물품			
We have placed orders with the person or firm named in ② for commodities indicated below. 당사는 ②에 기재된 업체 또는 개인에게 하기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			
ITEM(Model No. and Type)	제품 모델번호 및 제품유형	QUANTITY	수량
④ Disposition or use of items by ultimate consignee named in ① (check and complete appropriate box(es)) ①의 최종수하인이 품목을 사용 또는 처분할 용도 (직접한 사항에 체크하시고, 기입을 완성해주세요.)			
We certify that the item(s) listed in ③ : 당사는 ③에 기재된 품목이 다음에 해당함을 보증합니다. (a.직접사용, b.중간재로 사용, c.유지보수, d.재판매, e.재수출, f.기타)			
<p>a. <input type="checkbox"/> Will be used by us (as capital equipment)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ountry named in ① and will not be reexported or incorporated into an end product.</p> <p>b. <input type="checkbox"/> On ①에 기재된 국가에서 당사에 의하여 인수된 형태 그대로 제조공장에 (자본설비로서) 사용될 것이며 재수출되거나 별도의 완제품에 편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수하인이 최종사용자인 경우)</p> <p>c. <input type="checkbox"/> Will be processed or incorporated by us into the following product(s) _____ (Specify) to be manufactured in the country named in ① for distribution in _____. (Name of country or countries)</p> <p>d. <input type="checkbox"/> 당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품목명 기재)으로 가공 또는 편입될 것이며 이 품목은 ①에 기재된 국가에서 제조되어 (국가명 기재, 복수 기재 가능)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p> <p>e. <input type="checkbox"/> Used to service the following commodities _____ (Specify computers, aircraft, etc.) in the following destinations</p> <p>f.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목적지(목적지기재)에서 다음의 물품(컴퓨터, 항공기 등 구체적으로 기재)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될 것입니다.</p> <p>g. <input type="checkbox"/> Will be resol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the country named in ① for use or consumption therein. The specific end-use by my customer will be _____ (Specify, if known)</p> <p>h. <input type="checkbox"/> 당사에 의하여 인수된 형태 그대로 ①에 기입된 국가에서 재판매 될 것이며, 해당국가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것입니다. 당사 고객의 구체적인 최종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입니다.</p> <p>i. <input type="checkbox"/> Will be reexporte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to _____ (Name of country or countries).</p> <p>j. <input type="checkbox"/> 당사에 의하여 인수된 형태 그대로 (국가명 기재, 복수 기재 가능)으로 재수출될 것입니다.</p> <p>k. <input type="checkbox"/> Other (Describe fully)</p> <p>l.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기재)</p>			
⑤ NATURE OF BUSINESS OF ULTIMATE CONSIGNEE 최종수하인의 업태			
<p>A. The nature of our business is(eg distributor, manufacturer, wholesaler, value added original equipment retailer, etc)</p> <p>B. 당사의 업태는 (예: 유통업, 제조업, 도매업, 부가가치 판매업 등)입니다. (상기 팔로 안에 제시된 업태 중 하나에 동그라미표기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기재)</p> <p>C. Our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exporter is(eg contractual, franchise, distributor, wholesaler, regular customer, etc) and we have had this business relationship for 00 years,</p> <p>D. 한국 수출자의 당사의 관계는 (예: 계약관계,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도매업체, 경기고객)이며, 당사는 이러한 거래관계를 00년 동안 맺어왔습니다. (상기 팔로 안에 제시된 관계의 형태 중 하나에 동그라미표기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기재)</p>			
⑥ STATEMENT OF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p>We certify that all of facts contained in this statement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and we do not know of any additional fac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statement. We shall promptly send a supplemental statement to the person named in ②, disclosing any change of facts or intentions set forth in this statement which occurs after the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nd forwarded.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Foreign Trade Act , we will not reexport,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commodities listed in ④ above: (1) to any country not approved for export as brought to our attention by means of a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or any other means ; or (2) to any person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it will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in disposition of the commodities contrary to the representations made in this statement or contrary to the Foreign Trade Act .</p> <p>⑥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 서약 사항 당사는 이 진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상기 진술서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추가적인 사실도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당사가 작성 및 제작된 이후로는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④에 언급된 차이에 이를 안내하는 보증 진술서를 동부록으로 첨부하거나 「대외우역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수출된 경우에 제작하고는 당사는 상기 ④에 명기된 물품의 대상에게 제작을 통해 또는 청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수출이 송입되지 않은 국가로의 이동을 전송증권, 상업증권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또는 (2) 최종수하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⑥항목에 구매자가 서명합니다.</p>			
⑦ SIGNATURE OF OFFICIAL OF ULTIMATE CONSIGNEE (OR COMPANY SEAL) 최종수하인 서명		⑧ NAME OF PURCHASER 구매자 공식명칭 구매자가 최종수하인과 동일하다면 작성 불필요 최종수하인 입장에서 구매자(최종사용자)가 아니라, 국내 수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구매자로 기재	
NAME OF OFFICIAL	서명자 이름	SIGNATURE OF PURCHASER (OR COMPANY SEAL)	구매자 서명(또는 직인)
TITLE OF OFFICIAL	서명자 직책	NAME OF OFFICIAL	서명자 이름
DATE(mm dd, yyyy)	서명일(월, 일, 년)	TITLE OF OFFICIAL	서명자 직책
		DATE(mm dd, yyyy)	서명일(월, 일, 년)
⑨ CERTIFICATION FOR USE OF REPUBLIC OF KOREA EXPORTER We certify that no corrections, additions, or deletions were made on this form by us after this form was signed by the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⑩ 대한민국 수출자의 확인사항 본 진술서가 최종수하인과 구매자에 의해 서명된 이후, 당사에 의한 수정, 추가 또는 삭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SIGNATURE OF PERSON AUTHORIZED TO CERTIFY FOR EXPORTER (OR OFFICIAL SEAL)	수출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서명자명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서명자 직책	DATE(mm dd, yyyy) 서명일(월, 일, 년)	

▶ 최종수하인은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자’로서 최종사용자와 같을 수 있음

▶ 수출자(A)-현지법인(B)-현지기업(C)의 수출인 경우, 현지법인(B)가 최종수하인, 현지기업(C)가 최종사용자임

▶ ①~⑦번 까지는 최종수하인이 작성

▶ ①, ②번은 거래의 주체를 기재(작성자 정보가 아니라 대표자 정보이며, 회사명은 인정됨)

▶ 각 서명란은 대표자 직접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수출자 명의의 공문을 추가로 첨부

- 대리서명자 신원(직책, 성명 등 명시)

-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사유 기재

- 대리서명자를 확인 후 “대리서명자가 전략물자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수출자가 직접 확인하였습 니다” 문구 기재

▶ 회사 인감(Company Seal) 인정

▶ 회사 명판은 인정되지 않음

▶ 구매자는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 후 ⑧번에 확인인 서명

▶ 수출자는 진술서가 더 이상 정정, 추가, 삭제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 후 ⑨번에 확인인 서명

- 개별수출허가 면제 시 수출 후 7일 이내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건
 - 소프트웨어의 개별수출허가 면제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개별수출허가 면제 시 수출자는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산업통상부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
 - 수입한 전략물자 반송 시 수입 당시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소프트웨어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 최종적인 면제 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에 문의할 것을 권고함
- 개별수출허가 면제라고 해도 허가 불필요가 아니라 수출 후 거래 실적 보고를 진행해야 함
- 전략물자 대상이나, 수출허가 면제인 경우 수출거래보고를 진행해야 함
-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

-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 반출하는 공용물품
- 수입한 전략물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을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을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을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을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암호화품목 허가면제 특례국가)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바세나르체제 가입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몰타,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 러시아의 경우 분쟁지역으로 확인 필요

암호화 품목 허가면제 특례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
- 가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수출거래보고 절차도



수출거래보고 서류 양식

사전신고서 양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사전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출자(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⑤ 최종수하인(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 ③과 같을 시 “③과 동”으로 기재				
② 실무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최종사용자 ※ ③과 같을 시 “③과 동”으로 기재 ※ 최종사용자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참조”로 기재하고, 별지에는 모든 최종사용자의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③ 구매자(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중개허가의 경우 수입국 및 수출자					
④ 제조사(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중개허가의 경우 수출국 및 수출자					
⑦ 수출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수출 <input type="checkbox"/> 중개수출				
⑧ 판정번호	⑨ HS 번호	⑩ 통제번호	⑪ 품명 및 규격	⑫ 단위 및 수량	⑬ 수출액(USD)

■ 최종사용자 정보

⑭ 회사명 ⑮ 주소지 ⑯ 업종/업태 ⑰ 자본금 ⑱ 고용인원 ⑲ 주요 고객사

■ 사전신고 대상 거래 유형

⑳ 허가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번호:)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번호:)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드레 중

■ 수출거래내역(※ 수출 후 작성 필요)

㉑ 선적일 ㉒ B/L 번호 ㉓ 수출신고수리번호

위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사전신고서는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기타민원 신청-
사전신고서 작성”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수출거래보고서는 개별수출허가의 면제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조항등을 활용해 사전 허가 면제를 받은 경우 수출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 수출거래보고서는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 ▶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기타민원 신청- 수출거래보고”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사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 수출거래보고서로 갈음하게 된 사유를 “5. 해당 수출 거래유형”에서 체크
- ▶ 수출허가 면제 사유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서”, “~으로”, “다만” 등의 용어에 주의하여 해석 필요

수출거래보고서 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Annexed paper No. 16					
수출거래 보고서					
1. 회사명					
2. 대 표 자	직 명			성 명	
3. 주 소					
4.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5. 해당수출 거래유형 (✓ 체크)	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③ 제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④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⑤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⑥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박람회, 전시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제반입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I,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⑩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수출 거래유형 (✓ 체크)	⑪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제10조제1호의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⑭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⑯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⑰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⑱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⑲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⑳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인 기술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㉑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의1”지역 수출 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자의 최대주주/수출자의 해외본점/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㉒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 수출 시, 최종사용자는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이고,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인 경우	
	㉓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로 수출하여 허가면제 받은 경우	

<p>②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받은 경우</p> <p>③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초민감 기술을 “의1” 지역에 전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관련 품목의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한다.</p> <p>④ (제53조 1항 1호 중개허가 면제 관련)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p> <p>⑤ (제53조 1항 2호 중개허가 면제 관련)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6 제1호 가 목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p> <p>⑥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중개허가 면제</p>																																												
<p>6. 수출거래내역</p> <table border="1"> <tr> <td>구매주문 번호</td><td>품(기술)명 (모델명)</td><td>통제번호</td><td>HS번호</td><td>수입국</td><td>선적일 (예정일)</td><td>단위 및 수량</td><td>수출액 (US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구매주문 번호	품(기술)명 (모델명)	통제번호	HS번호	수입국	선적일 (예정일)	단위 및 수량	수출액 (USD)																												
구매주문 번호	품(기술)명 (모델명)	통제번호	HS번호	수입국	선적일 (예정일)	단위 및 수량	수출액 (USD)																																					
<p>7. 수출참조번호</p> <table border="1"> <tr> <td>B/L 번호</td><td colspan="7"></td></tr> <tr> <td>수출신고수리번호</td><td colspan="7"></td></tr> </table>									B/L 번호								수출신고수리번호																											
B/L 번호																																												
수출신고수리번호																																												
<p>8. 수요자</p> <table border="1"> <tr> <td>구분</td><td>상호</td><td>대표자</td><td>전화번호 (Fax번호)</td><td colspan="5">주소</td></tr> <tr> <td>구매자</td><td></td><td></td><td></td><td colspan="5"></td></tr> <tr> <td>최종수하인</td><td></td><td></td><td></td><td colspan="5"></td></tr> <tr> <td>최종사용자</td><td></td><td></td><td></td><td colspan="5"></td></tr> </table>									구분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구분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p>「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에 의거 수출허가 면제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출하였기에 동 조항에 따라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보고서에 허위사항을 기재시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p>																																												
<p>20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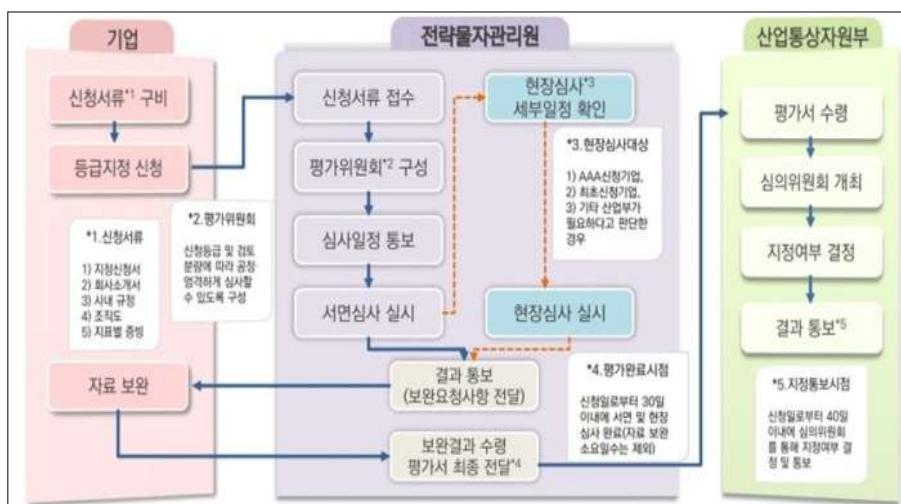
포괄수출허가

- 포괄수출허가란 1회의 허가로 특정기간 동안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음
- 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함

사용자 포괄 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 CP)에게 해당 품목(기술 제외)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품목포괄 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자율준수제도(CP)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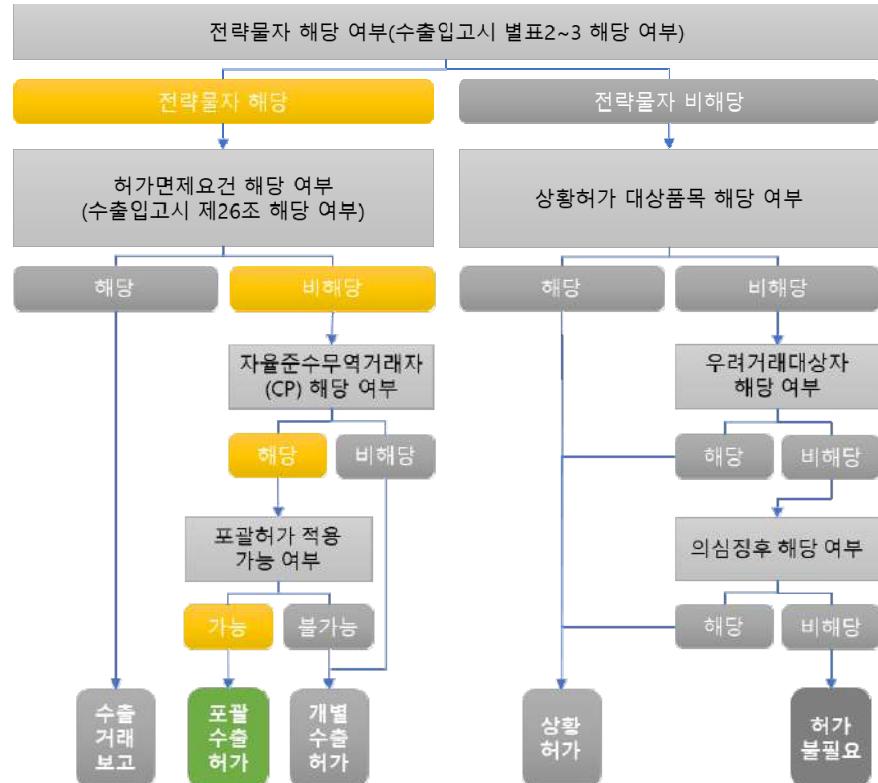
- 수출관리법규 준수를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교육, 감사 등 체제를 갖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이행하는 내부 프로그램
- CP 기업 요건(운영 필수 요소)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1조 참조
 -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선언,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 관리, 감사, 교육, 문서관리,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정보보안관리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의 등급심사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0 참조
- CP 인증 절차



- CP 인증 혜택
 -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자격 부여
 -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3년 내지 2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 → 5일), 또는 허가심사 면제
 - 동일품목을 동일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면제
 -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

- 포괄수출은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 파트너(총판) 등을 통한 수출 시 최종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유리함
- △ 시급하게 수출하는 경우 처리기간 단축 또는 허가심사 면제가 되어 유리함
- 수출량이 많고 이에 따른 업무량이 많은 경우 수출 시 일부 서류(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제출 면제로 인하여 유리함
- 규모가 작은 기업은 CP 인증 시 관련 기구 결성을 위한 조직 인원(기구장, 판정, 출하, 영업 등 7명 내외 구성)의 구성 등으로 CP 인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괄수출허가로 진행하기가 어려움
- 사후(실적보고 시)에 면제 서류(최종사용자 서약서 등)를 제출하기 때문에 차후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별수출허가 상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사후에 제출하기 때문에 CP 인증 기업에 대한 서류 관련 특혜는 없음
- CP 인증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으나, 컴플라이언스를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인식이 필요함
- CP 제도는 수출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파트도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감사가 필요함 (최종사용자 서약서 관리를 위하여)

포괄수출허가 절차도



•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가지역	나의1 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	-
신청품목 관련 서류	-	-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	-
최종사용자 서약서	-	-	○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	-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 최종수하인 진술서 및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와 동일

상황허가

-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받는 것을 말함
 - 나의1 지역 및 나의 2지역 수출 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1항의 제1호~12호)
 - ▶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 해당 물품 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수출물품 및 수출지역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게재하고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측 품목은
현재('23.11 기준)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므로,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판정/허가
신청 > 수출허가
안내>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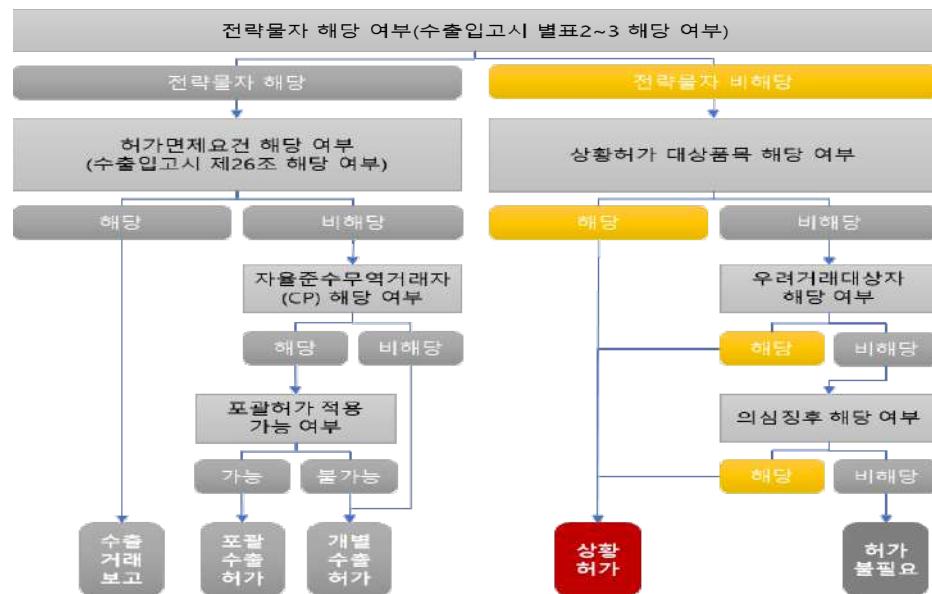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관련 상황허가 대상품목

대상품목	상세사양	수출지 역
전자소자 및 전자장비 <u>소프트웨어</u>	별표2의2 1,2,4,5에 의해 통제되는 전자 소자, 부품 또는 구성품, 장비, 시험장비 등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러시아, 벨라루스
프로그램 증명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증명 및 검증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자동 생성을 하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실시간 처리 장비를 위해 “전용설계”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증명 및 검증 소프트웨어	a. 500,000개 이상의 “소스 코드” 명령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되고 수학 및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증명 및 검증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자동생성 프로그램	b. 별표2, 별표 2의2에 의해 통제되는 외부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을 하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	c. 20 마이크로 초 미만의 “전역 인터럽트 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실시간 처리” 장비를 위해 “전용설계”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별표2 4D001에서 통제되는 것 이외의 소프트웨어로 별표2 4A101, 별표2의2 9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 소프트웨어	별표2의2 14, 15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 및 동적 적응 라우팅 소프트웨어	
정보 암호화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별표2 5D002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로 별표2의 5부 2장 주3: 암호화 기술해설에 따라 대중적으로 소매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 주: 단, 민수용으로서 모기업 전액 출자 자회사로 수출시 상황허가 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센서, 카메라, 음향장비, 자기계, 중력계,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별표 2 6A002, 6A003, 별표2의2 22, 27, 28, 29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들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으로서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영상증배관, 광학필터 및 광섬유, 레이저 관련 소프트웨어	별표2의2 23, 25, 26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항공교통 관제, 지진 침범 감시 관련 소프트웨어	별표 2 6D003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 (이하 생략)	
항법, 항공기 통신 및 항공전자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항법, 항공기 탑재 통신 및 기타 항공전자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것으로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선박, 해양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별표2의2 44에서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사용되는 무인잠수정용 소프트웨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무인잠수정의 운행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진동시험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별표2의2 48, 51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을 위한 것으로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블레이드 관련 소프트웨어	별표2의2 49, 52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대상품목	상세사양	수출지역
오일 및 가스 개발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오일 및 가스 개발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하 생략)	
석유가스 시추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석유가스 시추 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폭동 또는 군중 통제를 위한 물대포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용 설계된 폭동 또는 군중 통제를 위한 물대포 시스템과 부품 및 구성품을 위한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중성자, 방사선 수송, 유체역학 계산/모델링용 소프트웨어	중성자 계산/모델링용 소프트웨어 방사선 수송 계산/모델링용 소프트웨어 유체역학 계산/모델링용 소프트웨어	
특정 소프트웨어	194에 의해 통제되는 산업공정 제어용 하드웨어/시스템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194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용 복합소재, 섬유, 프리프레그 및 프리폼 생산을 위한 장비용으로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폭발물 또는 기폭장치 탐지 장비 소프트웨어	205에 기술된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공간 분해능을 갖는 은폐된 물체감지 장비 소프트웨어	206에 기술된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러시아, 벨라루스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치수검사, 치수측정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212, 214~217에 기술된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유연생산유닛에 설명된 치수측정장비 또는 기타 디지털 콘트롤 측정장비로 구성된 유연생산유닛을 위한 것 실시간 처리에서 2가지 이상의 탐지기술을 통해 동시에 획득한 신호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 (예: 머신비전, 적외선 이미징, 촉각측정...)	
	208, 209에 기술된 물품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210에 기술된 휴대용 발전기의 개발, 생산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본 부록의 단란 775부터 782까지에 명시된 물품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 설계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	
	적층 제조 제품의 디지털 트윈(DT) 또는 적층제조 제품의 신뢰성 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 ▶ 상황허가 신청여부 판단을 위한 우려거래자 검색은 Yestrade(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의 “수출허가 신청-우려거래대상자 목록”에서 확인해야 함

상황허가 절차도



우려거래대상자

-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 거래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회원국에 통보한 자
 - 해외에 소재한 수출자로서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려거래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우려거래자 검색 방법(의무)

- ▶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단체(개인)명, 국가, 소재지, 별칭 등을 모두 검색하는 방법 보다, 단체(개인)명 또는 별칭으로 먼저 검색 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권고
- ▶ Yestrade에 등록된 정보 중 특히 소재지(주소) 등의 경우 입력된 단어와 정확히 매칭이 안되는 경우 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단계	방법
1	<p>✓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접속 → 자주찾는 서비스</p> <p>① ‘우려거래자 검색’ 클릭 또는 ② 상단 메뉴의 ‘판정/허가신청’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우려거래자 검색’ 클릭</p> <p>The screenshot shows the Yestrade homepage with a search bar at the top. Below it, there's a section titled '자주 찾는 서비스' (Frequently Used Services) with a red box highlighting the '우려거래자 검색' (Search for Concerned Trading Counterparties) button. Other buttons include '수출허가' (Export License), '수입허가' (Import License), and '포괄수출허가' (General Export License).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for '공지사항' (Notices), '자주 찾는 서비스' (Frequently Used Services), and 'FAQ'.</p>

단계	방법
2	<p>① 단체(개인)명, 국가, 소재지, 별칭 등을 입력하여 검색 ② 입력은 가능하면 영문 Full Name을 기준으로 입력 권고</p> 
3	<p>①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하단 '결과'에 "검색하신 키워드는 우려거래자가 아닙니다." 문구 확인 ② 검색 결과가 있는 경우, 하단 결과에 "검색하신 키워드는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를 요하는 단체·개인일 수 있으므로, 무역안보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시 아래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구 확인 - 추가로 거래기업명, 국가, 소재지, 기타정보, 문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 "문의하기" 버튼 클릭 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내용 전송</p> 

▶ 처음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색 기록이 남지 않으며, 특히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일 경우 지정 연장 등의 증빙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주의 요망

- ▶ 무역안보관리원의 답변 내역은 문자 및 이메일로 동시 통보
- ▶ 해당되는 우려거래자 출처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음

단계	방법																																																																
	<p>① 전송된 내용에 대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답변한 경우, 검색화면 하단에서 확인가능하며 “답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답변 내용 열람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검색일</th><th>업체(개인)명</th><th>대상여부</th><th>한글기간</th><th>문의상태</th></tr> </thead> <tbody> <tr> <td>2019-03-11</td><td>Samsung</td><td></td><td></td><td></td></tr> <tr> <td>2019-02-08</td><td>Developed Industries</td><td></td><td></td><td></td></tr> <tr> <td>2019-02-08</td><td>Developo</td><td></td><td></td><td></td></tr> <tr> <td>2019-02-08</td><td>Develope</td><td></td><td></td><td></td></tr> <tr> <td>2018-04-25</td><td>Change</td><td></td><td></td><td></td></tr> <tr> <td>2017-07-21</td><td>Pak Elektron Limited</td><td>대상</td><td></td><td></td></tr> </tbody> </table> <p>문의내용</p> <table border="1"> <tr> <td>거래기업명(영문)</td><td>test</td></tr> <tr> <td>국가</td><td></td></tr> <tr> <td>소재지</td><td></td></tr> <tr> <td>기타 필요한 정보</td><td></td></tr> <tr> <td>문의내용</td><td></td></tr> </table> <p>답변내용 : (대상여부 : 대상) 해당 기업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 국제체제 의무 이행을 위해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서 전략물자 대상여부에 대해서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허가 신사를 통해 수출 여부를 결정되오니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라도 체제에서 우려거래대상자로 지정된 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제2호 내지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특별히 주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2017-05-22</td><td>Pak Elektron Limited</td></tr> <tr> <td>2017-05-22</td><td>PAK ELEKTRON LIMITED</td></tr> <tr> <td>2017-05-22</td><td>Pak Elektron Limited</td></tr> <tr> <td>2017-05-22</td><td>pak elektron limited</td></tr> </table>	검색일	업체(개인)명	대상여부	한글기간	문의상태	2019-03-11	Samsung				2019-02-08	Developed Industries				2019-02-08	Developo				2019-02-08	Develope				2018-04-25	Change				2017-07-21	Pak Elektron Limited	대상			거래기업명(영문)	test	국가		소재지		기타 필요한 정보		문의내용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검색일	업체(개인)명	대상여부	한글기간	문의상태																																																													
2019-03-11	Samsung																																																																
2019-02-08	Developed Industries																																																																
2019-02-08	Developo																																																																
2019-02-08	Develope																																																																
2018-04-25	Change																																																																
2017-07-21	Pak Elektron Limited	대상																																																															
거래기업명(영문)	test																																																																
국가																																																																	
소재지																																																																	
기타 필요한 정보																																																																	
문의내용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2017-05-22	pak elektron limited																																																																
4	<p>① 공개된 우려거래자 목록(UN제재, 미국 등)의 경우 검색화면 하단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원문 확인/검색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출처</th><th>목록설명</th><th>홈페이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14">UN안보리 결의</td><td>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Somalia and Eritrea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ISIL 알카에다 제재(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이라크 제재(Iraq Sanctions Committee (Iraq))</td><td>?</td><td>GO</td></tr> <tr><td>콩고민주공화국 제재(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수단 제재(The Sudan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레바논 제재(Lebanon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북한 제재(1718 Sanctions Committee (DPRK))</td><td>?</td><td>GO</td></tr> <tr><td>리비아 제재(Libya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탈레반 제재(1998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기니-비사우 제재(Guinea-Bissau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예멘 제재(2140 Sanctions Committee (Yemen))</td><td>?</td><td>GO</td></tr> <tr><td>남수단 제재(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td><td>?</td><td>GO</td></tr> <tr><td>이란 제재(Resolution 2231)</td><td>?</td><td>GO</td></tr> <tr> <td rowspan="4">미국 상무부</td><td>말리 제재(Resolution 2374)</td><td>?</td><td>GO</td></tr> <tr><td>Denied Persons List</td><td>?</td><td>GO</td></tr> <tr><td>Entity List</td><td>?</td><td>GO</td></tr> <tr><td>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td><td>?</td><td>GO</td></tr> <tr> <td>미국 국무부</td><td>Debarred List</td><td>?</td><td>GO</td></tr> </tbody> </table>	분류	출처	목록설명	홈페이지	UN안보리 결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Somalia and Eritrea Sanctions Committee)	?	GO	ISIL 알카에다 제재(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GO	이라크 제재(Iraq Sanctions Committee (Iraq))	?	GO	콩고민주공화국 제재(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nctions Committee)	?	GO	수단 제재(The Sudan Sanctions Committee)	?	GO	레바논 제재(Lebanon Sanctions Committee)	?	GO	북한 제재(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GO	리비아 제재(Libya Sanctions Committee)	?	GO	탈레반 제재(1998 Sanctions Committee)	?	GO	기니-비사우 제재(Guinea-Bissau Sanctions Committee)	?	G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anctions Committee)	?	GO	예멘 제재(2140 Sanctions Committee (Yemen))	?	GO	남수단 제재(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	?	GO	이란 제재(Resolution 2231)	?	GO	미국 상무부	말리 제재(Resolution 2374)	?	GO	Denied Persons List	?	GO	Entity List	?	GO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	GO	미국 국무부	Debarred List	?	GO
분류	출처	목록설명	홈페이지																																																														
UN안보리 결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Somalia and Eritrea Sanctions Committee)	?	GO																																																														
	ISIL 알카에다 제재(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GO																																																														
	이라크 제재(Iraq Sanctions Committee (Iraq))	?	GO																																																														
	콩고민주공화국 제재(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nctions Committee)	?	GO																																																														
	수단 제재(The Sudan Sanctions Committee)	?	GO																																																														
	레바논 제재(Lebanon Sanctions Committee)	?	GO																																																														
	북한 제재(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GO																																																														
	리비아 제재(Libya Sanctions Committee)	?	GO																																																														
	탈레반 제재(1998 Sanctions Committee)	?	GO																																																														
	기니-비사우 제재(Guinea-Bissau Sanctions Committee)	?	G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제재(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anctions Committee)	?	GO																																																														
	예멘 제재(2140 Sanctions Committee (Yemen))	?	GO																																																														
	남수단 제재(South Sudan Sanctions Committee)	?	GO																																																														
	이란 제재(Resolution 2231)	?	GO																																																														
미국 상무부	말리 제재(Resolution 2374)	?	GO																																																														
	Denied Persons List	?	GO																																																														
	Entity List	?	GO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	GO																																																														
미국 국무부	Debarred List	?	GO																																																														
5																																																																	

단계	방법										
6	<p>①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자 검색의 경우, 2번째 탭을 클릭하여 확인 ② UN안보리 결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금동결을 동반하므로 거래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p>  <p>문의내용</p> <table border="1"> <tr> <td>거래기법명(영문)</td> <td>test</td> </tr> <tr> <td>국가</td> <td></td> </tr> <tr> <td>소재지</td> <td></td> </tr> <tr> <td>기타 필요한 정보</td> <td></td> </tr> <tr> <td>문의내용</td> <td></td> </tr> </table> <p>답변내용 : (대상여부 : 대상)</p>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p>해당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허고자 할 때 국제체제 의무 이행을 위해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해서 반영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허가 심사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라도 체제에서 우려거래대상자로 지정된 전략물자 수출금고시 제50조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제2호 내지 제3호 항에 하 당하는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특별히 주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div> 	거래기법명(영문)	test	국가		소재지		기타 필요한 정보		문의내용	
거래기법명(영문)	test										
국가											
소재지											
기타 필요한 정보											
문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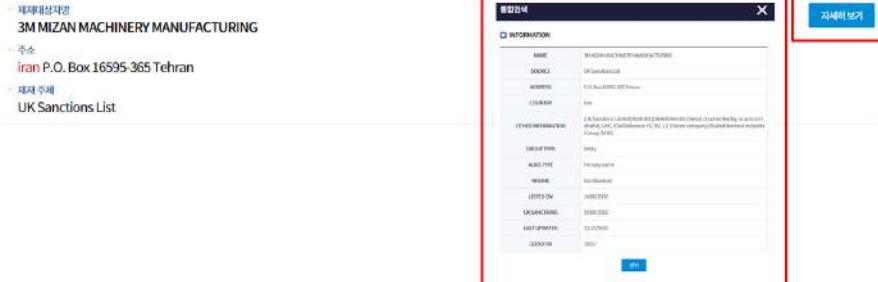
● 우려거래자 검색 방법(권고)

- 무역안보관리원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근거한 우려거래자 이외에 일본, 미국 등의 기타 우려거래자 정보도 취합하여 별도의 사이트에서 제공 중

단계	방법
1	<p>✓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우려거래자 검색 시스템 접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dl.kosti.or.kr 접속 우측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후 로그인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 확인 가능 
2	<p>✓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문구 확인 가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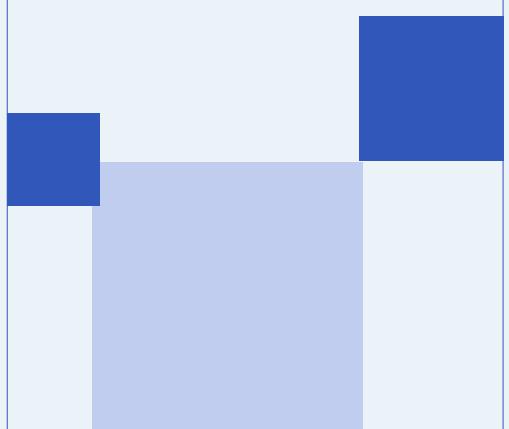
- ▶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대상자의 경우, 1번째 탭의 우려거래자 검색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음

- ▶ Yestrade와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야 이용 가능

단계	방법
3	<p>✓ 검색결과가 있는 경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기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 가능</p>  <p>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 for '3M MIZAN MACHINERY MANUFACTURING'. The result includes the company name, address ('iran P.O. Box 16595-365 Tehran'), and subject ('UK Sanctions List'). To the right is a detailed view of the company information, including fields like Name, Address, and Sanctions. A red box highlights the '자세히 보기' (View Details) button.</p>

부

로



부록1 질의 및 응답 (Q&A)

번호	구분	질의내용
Q01	제도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02		전략물자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적용되는 기준은 뭘까요?
Q03	판정	전문판정 신청은 누가 하게 되나요?
Q04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번들형식으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05		암호화 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 가능하면 비해당 요건인가요?
Q06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품목의 판정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Q07		A업체에서 B운송업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B운송업체가 자가판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Q08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관련 교육은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09		자가판정 진행시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 및 판단하며, 실제 판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Q10		심사 중인 판정 건이 있는데 사업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1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판정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Q12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받은 전문판정서를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13		타 업체에서 등록한 자가판정서에 대해 판정 활용동의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14		총판의 경우에도 전략물자가 해당되는지요?
Q15		해외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Q16		총판으로 판매했으나, 총판 판매 대상이 구매자고, 그 구매자가 방위산업으로 최종판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7		영상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필요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요?
Q18		2018년에 동일제품은 비해당으로 전문판정을 받았었는데, 동일한 결과 판정이 있을 확률이 있을지요?
Q19		새로운 버전마다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버전이 바뀌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Q20		대중시장(mass market) 예외사항을 적용받으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스마켓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21		SHA-256와 같은 오픈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어도 전략물자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Q22		라이센스가 추가로 나갈 때도 전략물자 판정 받아야 하나요?
Q23		디스플레이 장비와 제어 소프트웨어 연동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전략물자에 해당하나요?

Q24	허가	꼭 수출계약이 된 상태에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Q25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판매사 중 어느 기업에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Q26		우려거래대상자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27		우려거래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수출을 못하는 것인가요?
Q28		최종사용자가 미정(다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9		허가 받은 물품의 유지보수 목적의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지요?
Q30		수입한 물품을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진행해 되나요?
Q31		국가별 수출통제 제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Q32		실제 계약 체결 전 체험판(Trial License) 제공 시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33		해외 현지 법인에 전략물자인 소프트웨어의 복제·배포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34		허가를 득한 SW의 사용권(License) 추가도 허가 대상인지?
Q35		SW라이센스 기간 연장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6		해외 고객 대상 웹서비스 제공 시 수출허가 대상여부?
Q37	클라우드	일반 대중용 무료 클라우드 메신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서버에 서버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출허가는?
Q38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서비스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요?
Q39		클라우드에 올릴 때 리전(region)은 상관없는지요?
Q40		클라우드 서버는 한국에 있고 서비스만 해외로 제공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나요?
Q41	AI SW	LLM 같은 AI 모델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요?
Q42		AI SW에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요?
Q43		AI SW에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요?
Q44		AI SW가 전략물자 비해당이면 허가 절차가 필요없나요?
Q45	벌칙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46		무허가 수출시 제재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47		무허가 수출을 하게 되면 법인 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Q48		조사와 단속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49		전략물자 제도를 수출 이후 인지한 경우 기 수출에 대한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Q50	CP제도	CP기업으로서 수출할 때 장점은 무엇인지요?
Q51		CP와 사용자 포괄허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Q01. (제도)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전체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22~24 [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참조

Q02. (제도) 전략물자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P. 15 [대응포인트] 참조

Q03. (판정) 전문판정 신청은 누가 하게 되나요?

- ▶ 전략물자 전문판정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하는 개발사에서 신청을 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또는 유통 관계사들은 전문판정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아서 개별수출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P. 31 [전략물자 판정 방법] [대응포인트] 참조

Q04. (판정)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번들형식으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외에 수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패키지로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함께 판매될 때에도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해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Q05. (판정) 암호화 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 가능하면 비해당 요건인가요?

- ▶ 오히려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 기술 해설에서는 암호화 기능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 바,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정보보안 통제예외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P. 25~26 [대중시장(Mass Market) 해당여부 정리], 부록 3 참조

Q06. (판정)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품목의 판정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 ▶ 판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제품목이 같다면 당해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는 인정됩니다.

Q07. (판정) A업체에서 B운송업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B운송업체가 자가판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 ▶ 자가판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수출허가와 관련된 경우 모든 책임을 자가판정을 진행한 기업이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P. 31~43 [전략물자 판정 방법] [자가판정] 참조

Q08. (판정)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관련 교육은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 또는 무역안보관리원 교육관 홈페이지(edu.kosti.or.kr)에 접속하시어 유/무료 교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09. (판정) 자가판정 진행시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 및 판단하며, 실제 판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전문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 또는 무역안보관리원 교육관 홈페이지(edu.kosti.or.kr)에 접속하시어 유/무료 교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10. (판정) 심사 중인 판정 건이 있는데 사업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단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이 변경되어도 무방하나, 수출허가와 연관되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

Q11. (판정)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판정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 ▶ 개별수출허가 또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대신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판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받은 판정서를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동일한 품목의 전문판정서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받은 전문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면 수출업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받은 판정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P. 45 [전문판정(신청)서], P. 52 [전문판정 방법 6단계] 참조

Q13. (판정) 타 업체에서 등록한 자가판정서에 대해 판정 활용동의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자가판정서는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 동의서를 통해 공유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P. 31 [대응포인트] 참조

Q14. (판정) 총판의 경우에도 전략물자가 해당되는지요?

- ▶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전략물자 제품/최종사용자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총판의 경우 최종사용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총판을 최종사용자로 하여 수출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조건부 수출허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허가 후 총판 수출 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P. 59 [대응포인트] 참조

Q15. (판정) 해외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 해외지사로 제품이 나가는 경우, 해외지사의 경우에도 총판에 해당됩니다.

P. 59 [대응포인트] 참조

Q16. (판정) 총판으로 판매했으나, 총판 판매 대상이 구매자고, 그 구매자가 방위산업으로 최종판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산업청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재문의 및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17. (판정) 영상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필요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요?

- ▶ 정보보안의 경우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 정도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판정시, 제품에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프로토콜, 전략물자 예외처리 항목 등의 질의응답 작성이 중요하며 제출 자료 및 제품을 대조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예외사항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이 의료용 목적인지, 의료용 데이터만 처리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P. 26 [통제번호 5A002.a 기술해설 및 5A002.a 주2에 의한 예외] 참조

Q18. (판정) 2018년에 동일제품은 비해당으로 전문판정을 받았었는데, 동일한 결과 판정이 있을 확률이 있을지요?

- ▶ 판정 기준과 제품 변경이 적은 경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판정 신청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대비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판정시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충실한 신청서가 요구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버전 명시)

Q19. (판정) 새로운 버전마다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버전이 바뀐 기준은 무엇인지요?

- ▶ 버전이 변경될 때마다 기능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버전별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암호화가 가장 큰 사항으로, 기능을 추가했더라도 암호화 내용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하고 싶을 경우 전문판정을 다시 받길 권장합니다.

대다수 메이저 소프트웨어 버전 변경은 앞자리나 버그 패치 등은 뒷자리가 변경되며, 메이저 기능이 변경되면 버전이 바뀐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판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 버전 변경은 기존 기능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 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 45 [대응포인트] 참조

Q20. (판정) 대중시장(mass market) 예외사항을 적용 받으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스마켓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방식은 대중시장(mass market) 기준 적용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가격공고, 주요기능 정보가 제공되고 판매자에게 추가문의 없이 정보를 취급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중시장(mass market)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 25~26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통제 예외사항] 참조

Q21. (판정) SHA-256와 같은 오픈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어도 전략물자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 공개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기술이 암호화 모듈이고, 암호화 키의 길이가 대칭일 경우 56비트 초과, 비대칭일 경우 일정 수준(타원곡선 상의 이산로그의 경우 128비트 또는 정수의 인수분해의 경우 512비트 등)을 초과하면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2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참조

Q22. (판정) 라이센스가 추가로 나갈 때도 전략물자 판정 받아야 하나요?

- ▶ 수출 승인된 사용자 수를 초과한 라이센스 추가 제공의 경우도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제품의 버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에도 다시 전략물자 판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3. (판정) 디스플레이 장비와 제어 소프트웨어 연동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전략물자에 해당하나요?

- ▶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일 경우는 3부(전자)을 확인해야 하고, 제어 소프트웨어가 암호화 모듈을 포함하는 경우 5부2장(정보보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 비해당일 경우는 전체 제품이 비해당으로 나올 가능성 이 있습니다.

Q24. (허가) 꼭 수출계약이 된 상태에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개별수출허가를 취득하는 데 1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계약서에 준하는 견적서, 가계약서를 활용하여 개별수출허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P. 60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참조

Q25. (허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판매사 중 어느 기업에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 수출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 즉 판매사에서 개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사에서는 개발사가 받은 전문판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52 [전문판정 방법 6단계], P. 58 [수출허가 개요] 참조

Q26. (허가) 우려거래대상자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대외무역법에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각 회원국에 통보한 자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등재된 자를 우려거래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P. 74 [우려거래대상자] 참조

Q27. (허가) 우려거래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수출을 못하는 것인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물자 아닌 품목을 등재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할 경우,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P. 71 [상황허가] 참조

Q28. (허가) 최종사용자가 미정(다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수일 경우 다수의 최종사용자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9. (허가) 허가 받은 물품의 유지보수 목적의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지요?

- ▶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일반기술해설”에서는 수출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 64 [소프트웨어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건] 참조

Q30. (허가) 수입한 물품을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진행해야 되나요?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에 의거, 수출허가의 면제사항으로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P. 64 [소프트웨어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건] 참조

Q31. (허가) 국가별 수출통제 제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 ▶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사회 제재정보시스템(sanction.kosti.or.kr)에 접속하시면 국가별 제재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32. (허가) 실제 계약 체결 전 체험판(Trial License) 제공 시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라면, 대가와 무관하게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수출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Q33. (허가) 해외 현지 법인에 전략물자인 소프트웨어의 복제·배포권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SW복제권 등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도 전략물자(기술)로 보아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Q34. (허가) 허가를 득한 SW의 사용권(License) 추가도 허가 대상인지?

- ▶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허가에서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로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수출허가는 변경이 불가하며 신규 수출허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35. (허가) SW라이센스 기간 연장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 추가적인 SW의 이전이 없고(수량, 제품) 사용 기관이 동일한 경우라면 기간 연장은 수출허가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 고시 제26조 제1항 제12호,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 이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6. (허가) 해외 고객 대상 웹서비스 제공 시 수출허가 대상여부?

- ▶ 외국인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내(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인(법인)에게로의 전략물자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출허가 필요

Q37. (클라우드) 일반 대중용 무료 클라우드 메신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서버에 서버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출허가는?

- ▶ CP 특례에 해당하며, 별표2 5부2장의 대중시장예외(Mass Market)를 만족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은 허가 면제사항입니다.

Q38.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서비스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요?

- ▶ 해외 클라이언트 측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통제대상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략 기술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9.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올릴 때 리전(region)은 상관없는지요?

- ▶ 상관없으며, 장비의 위치보다는 사용자의 위치, 국적이 중요합니다.

P. 15 [대응포인트] 참조

Q40.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버는 한국에 있고 서비스만 해외로 제공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나요?

- ▶ 원칙적으로 판정을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클라이언트 측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통제대상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 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P. 15 [대응포인트] 참조

Q41. (AI SW) LLM 같은 AI 모델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요?

- ▶ AI 모델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AI 모델이 고성능 GPU/TPU와 같은 고성능 AI용 컴퓨팅 HW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미국 독자 통제 규정인 4D090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FDPR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P. 33 미국 FDPR 참조

Q42. (AI SW) AI SW에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요?

- ▶ 5D002.c에서 통제하는 대칭/비대칭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판정을 받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3. (AI SW) AI SW를 클라우드/SaaS 형태로 서비스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요?

- ▶ 원칙적으로 판정을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클라이언트 측에 AI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통제대상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 15 [대응포인트] 참조

Q44. (AI SW) AI SW가 전략물자 비해당이면 허가 절차가 필요없나요?

- ▶ 전략물자 비해당이라도 해당 품목의 최종 용도, 수출 대상 국가,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해 상황 허가 신청 및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 78-82 [상황허가] 참조

Q45. (벌칙)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수출 입제한 등의 행정재제 대상이 됩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P. 9-13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처벌규정] 참조

Q46. (벌칙) 무허가 수출시 제재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무허가 수출한 개인에게 우선 책임을 묻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해당 법인에게 적용합니다.

P. 9-13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참조

Q47. (벌칙) 무허가 수출을 하게 되면 법인 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 ▶ 수출에 가장 많이 관여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최종사용자와 소통하고 계약을 이뤄낸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P. 9-13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참조

Q48. (벌칙) 조사와 단속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경찰청에서 공문으로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며, 일정 기간 내 소프트웨어 수출 목록 제출을 요청 받고, 수출된 제품의 판정여부와 수출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를 득했는지 조사받게 됩니다.

P. 9-13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처벌규정] 참조

Q49. (벌칙) 전략물자 제도를 수출 이후 인지한 경우 기 수출에 대한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원칙이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산업통상부 상담 및 자진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다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P. 9-13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처벌규정] 참조

Q50. (CP제도) CP기업으로서 수출할 때 장점은 무엇인지요?

- ▶ CP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등급 별로 다르나 CP 해당 시 수출 허가서 면제 등이 될 수 있어, 허가 면제 혜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P. 69 [자율준수제도(CP) 관련] 참조

Q51. (CP제도) CP와 사용자 포괄허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 허가 특례에 해당하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일반기업이 받으며, 사용자포괄은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기업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P. 69 [포괄수출허가] 참조

부록2 판정사례

(1)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1. 중소기업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SSL, HTTPS, AES, SEED, DHE, RSA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보안 알고리즘 ✓ 예외사항(OAM 목적으로만 사용)에 만족
판정결과	비해당

2. 온라인 통합 보안 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HTTPS 환경지원 ✓ SEED, ARIA, AES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판정결과	5D002.c1(해당)

3. 엔드포인트 중앙관리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SHA : 265비트, MD5 : 128비트, SEED : 256비트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판정결과	5D002.c1(해당)

4. Windows/Linux 서버 대상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접근 제어 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HTTPS, TLS ✓ AES, SEED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기술된 보안 프로토콜 사용 ✓ 예외사항 적용
판정결과	비해당

5. 안드로이드 앱 보안검증 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SEED : 128비트 암호 알고리즘 사용 ✓ MD5, CRC32, 공개키서명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판정결과	5D002.c1(해당)

6. 사용자 입력 정보 보호 프로그램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SSL, HTTPS, AES, Diffie-Hellman, RSA, SHA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프로토콜 사용 ✓ 주3 암호화기술해설 예외조항(대중시장; mass market 조건) 만족
판정결과	비해당

7. PC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솔루션	
HSK번호	없음
품목사양	✓ SSH, SSL, HTTPS ✓ AES, SEED, RSA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판정결과	5D002.c1(해당)

8. 정책 중앙관리 솔루션	
HSK번호	8471499000
품목사양	✓ 한 번의 조작으로 존에 포함된 모든 센서에 대해서 패턴 파일의 일괄 배포가 가능 ✓ 연동 센서 리스트 관리 기능 ✓ 패턴업데이트 모듈(sn_rmsa)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는 기능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다수의 센서를 연동하여 각 센서들의 정책을 중앙관리하는 제품으로 5A002.a.1.에서 통제되는 장비(소프트웨어)임
판정결과	5D002.c1(해당)

9. 로그 통합관리 솔루션	
HSK번호	8471499000
품목사양	✓ 연동센서에서 탐지 이벤트 정보 및 RateLimit 정보를 수집하여 SIEM 데이터를 로그 파일로 저장 ✓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시스템 리소스 및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syslog를 통해 알람 전송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침입탐지 이벤트의 로그 수집이 주요기능인 제품으로 5A002.a.1.에서 통제되는 장비(소프트웨어)임
판정결과	5D002.c1(해당)

10.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	
HSK번호	8523491011
품목사양	✓ 보안프로토콜 SSH, SSL, TLS 등 사용 또는 지원 ✓ 암호 알고리즘 AES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판정결과	5D002.c1(해당)

(2) 非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1.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HSK번호	8523491011
품목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프로토콜 SSL, TLS, HTTPS, LDAP 등 사용 또는 지원 ✓ 암호 알고리즘 AES, 3-DES, SEED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소프트웨어
판정결과	5D002.c1(해당)

2.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HSK번호	8523491011
품목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WAS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토콜 SSL과 HTTPS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알고리즘을 가진 정보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 기능을 수행 또는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 예외사항 적용: 공개 상용 암호화 표준(SSH, SSL, HTTPS 등)으로 구현된 암호화 기능을 OAM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내부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플레인 상 암호화 미사용
판정결과	비해당

3. 전자문서 솔루션	
HSK번호	8523499011
품목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프로토콜 사용 또는 지원하지 않음 ✓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지 않음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판정결과	비해당

4. 전자문서 솔루션 보안 옵션	
HSK번호	8523499011
품목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프로토콜 SSL 사용 또는 지원 ✓ 암호 알고리즘 AES-128, DES-128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프로토콜을 가진 정보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 기능을 수행 또는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판정결과	5D002.c1(해당)

5. 문서보안(DRM) 솔루션	
HSK번호	✓ 8523292111
품목사양	✓ AES Rijndael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판정결과	✓ 5D002.c1(해당)

6. 임베디드 문서보안(DRM)솔루션	
HSK번호	8523292111
품목사양	✓ AES Rijndael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 대중시장(Mass market) 판매제품으로 예외해당
판정결과	비해당

7. 증명서 위변조방지 솔루션	
HSK번호	8523292111
품목사양	✓ AES Rijndael 알고리즘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판정결과	5D002.c1(해당)

8. 문서작성 프로그램	
HSK번호	8523292131
품목사양	✓ 암호 알고리즘 AES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를 초과 ✓ 대중시장(Mass market) 판매제품으로 예외해당
판정결과	비해당

9. 오픈소스 기반 기업용 OS	
HSK번호	8523292111
품목사양	✓ 보안프로토콜 SSH, SSL, TLS 사용 또는 지원 ✓ 암호 알고리즘 AES, 3-DES 사용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A002.a,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판정결과	5D002.c1(해당)

10. ERP 통합 관리 시스템	
HSK번호	8523292111
품목사양	✓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 알고리즘 - SSL, HTTPS, AES, SEED ✓ 전사적인 자원관리(ERP)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판정근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5D002.c.1 및 주3 암호화기술해설
검토의견	✓ 대칭 암호알고리즘으로서 Key 길이가 56비트 초과
판정결과	5D002.c1(해당)

부록3 전략물자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23.5.31) 일부 발췌

<p>제5부 제2장 "정보보안" 주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적으로 소매판매처 여부 판단 시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예, 나라장터), 별도의 권한이 있는 소매상만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중고판매 사이트에서만 가격 공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의 설치 매뉴얼이 공개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공급자의 추가 도움 없이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본다. 단, 단순한 제품 설치 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공급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방화벽 장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주3 암호화 기술해설 중 b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b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구성품이 주3 항에 적용받은 제품의 공장 출고 상태 시 구성품과 동일한 사양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b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구성품 내의 암호화 기능을 삭제하여도 주3 a항에 적용받은 제품의 암호화 기능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p>제5부 제2장 "정보보안" 암호화 기술 해설에 대한 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한 가격 문의"라 함은 구매자의 제한없이 이메일, 전화 등으로 품목의 가격을 문의하여 협상 없이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구매자 및 구매 목적, 수량 등에 따라 공급자 및 판매자의 가격이 변동하거나 협상,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암호화 기술 해설에 대한 주 2의 "판매자의 예외적 관행"은 과거 대중시장 암호 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 또는 출시 이후 가격이 공개될 예정인 제품으로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청인이 직전에 출시한 제품이 암호화기술해설 주3 a.를 만족하여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된 것 나. 판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암호화기술해설 주3 a.를 충족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p>5A002.a 및 5D002.c.1</p>	<p>정보보안 주2 의 기준에 의해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로 부품 및 부분품을 포함 (printers, copiers, scanners, digital cameras, Internet cameras—including parts and sub-assemblies) 2. 가정 용품 및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TV, 보일러 등)(household utilities and appliances(airconditioners, refrigerators, TVs, boilers, etc.)
<p>5A002.a. 기술해설 (Technical Notes)</p>	<p>5A002.a.의 기술해설(Technical Notes)에 따라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프트웨어나 음악의 불법복제 또는 도난방지용 품목(piracy and theft prevention for software or music) 2. 음악, 영화, 라디오, 디지털사진 등의 재생, 녹화, 녹음용 품목(music, movies, tunes/music, digital photos-players, recorders and organizers) 3. 게임 관련 장비, 실행 소프트웨어, HDMI와 다른 구성요소와의 인터페이스, 개발도구(games/gaming devices, runtime software, HDMI and other component interfaces, development tools) 4. LCD TV, 블루레이 · DVD · 주문형 비디오 · 영화 · 디지털 영상 녹화기, 개인용 비디오 레코

	<p>터(LCD TV, Blu-ray/DVD, video on demand(VoD), cinema, digital video recorders (DVRs) / personal video recorders (PVRs) devices) 같은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매체 가이드, 상업용 콘텐츠의 무결성 및 보호, 화상회의를 제외한 HDMI와 다른 구성요소와의 인터페이스(on-line media guides, commercial content integrity and protection interfaces (not videoconferenc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의료 및 임상 관련 진단, 환자 일정관리 및 의료 데이터 기록 기밀 유지 관련 품목 (medical/clinical - diagnostic applications, patient scheduling, and medical data records confidentiality) 6.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및 제도 도구(drafting tools),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정보보안이 목적이 아닌 데이터 분석 툴(Data Synthesis tools), BPA(Business Process Automation) 7. 소프트웨어 자동 설치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IP) 전달 설치용 품목(Secure intellectual property (IP) delivery and installation. Some examples:software download auto-installers and updaters),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라이센스 키 제품 보호 또는 유사한 구매 인증용 키(license key product protection and similar purchase validation),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형태의 저작권 보호 장치(software and hardware design IP protection) 8. 신뢰 플랫폼 모듈(Trusted Platform Module, TPM) 9. 학술 교육 및 테스트, 온라인 교육 도구 및 소프트웨어(academic instruction and testing, on-line training tools and software)
5A002 주2 a	<p>스마트카드와 그 스마트카드에 탑재된 전용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카드 성능은 전적으로 집적회로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스마트카드 전용 집적회로도 스마트카드로 간주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5A002 예외규정에 의해 스마트카드 전용 집적회로도 스마트카드와 동일하게 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스마트카드 전용 집적회로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으나, 5A002.a.1의 집적회로로 간주하여 통제대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A002 주2 c	암호화된 데이터의 전송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A002 주2 e	공개되거나 상업용 암호화 표준이 구현된 민간 용도의 무선 장치로서 제5부, 제2장의 주 3의 a.2. ~ a.4. 단락의 조항을 만족하며 민간 산업 용도에 적용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변조나 개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A002 주2 f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는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IrDA, UWB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작업 공간 내에서 구성된 네트워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A002.a 주2 h	릴레이(relay:중계기)는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리피터(repeater), 브리지(bridge), 무선 릴레이 등을 포함하며 스위치는 Storage Area Network(SAN) 스위치를 포함한다.

5A002.a 주2 i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Dell iDRAC(Integrated Dell Remote Access), IBM IMM(Integrated Management Module), Sun(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ntel AMT(Active Management Technology), HP ILO(Integrated Lights-Out) 는 OAM에 한정된 기능으로 본다.
5A002 주2 j	<p>5A002 주2 j 에 의거 통제 예외에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 모니터링과 온보드 컨트롤러(항공, 철도 및 상용자동차 시스템 포함) (safety and maintenance, systems monitoring and on-board controllers (including aviation, railway, and commercial automotive systems) 2. 스마트 고속도로 기술, 대중교통 운영 및 요금 징수 관련 품목 등 (smart highway technologies, public transit operations and fare collection, etc.) 3. 로봇공학, 플랜트 안전, 유틸리티, 공장 및 기타 중장비, 화재 경보 및 공조시스템(HVAC) 과 같은 시설 시스템 제어기 등 (robotics, plant safety, utilities, factory and other heavy equipment, facilities systems controllers such as fire alarms and HVAC) 4. 광업, 시추, 대기 샘플링, 기상 모니터링, 지도 맵핑, 측량, 댐, 수문학 관련 품목 등 (mining / drilling, atmospheric sampling / weather monitoring, mapping / surveying, dams / hydrology)
5A003.a	부정한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해석 범위는 물리계층(physical layer)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OSI 7 layer의 3~7 계층에서 작동하는 IDS, IPS 장비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부록4 해외 유권해석 등 사례(미/일)

美 상무부 유권해석집(2009.01.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ashington, D.C. 20230

JAN 13 2009



Dear Mr. []

This Advisory Opinion is issued to you in response to your request, received by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on October 15, 2008,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In your letter, you stated that companies have begun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to customers for storing data or running pre-determined programs using data provided by the customer. Two methods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include "grid computing" and "cloud computing." Grid computing allows a customer to run applications on a "group of loosely coupled, sometimes heterogeneous and geographically dispersed computers." Customers use the internet to access the grid. Cloud computing is also accessed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computational capacity under cloud computing is further interconnected via the internet.

In addition, you stated that grid computing and cloud computing require customers to download certain software to enable use, but such software is generally "open source." Also, you stated that the customer may access computational capacity without any information or expertise on grid or cloud computing and that the company offering the service has no visibility to the actual application run by the customer.

On November 14, 2008, you responded to a BIS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In your e-mail, you stated that systems shipped under License Exception APP may be connected to a cloud computing service,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an individual user was accessing a system shipped under License Exception APP due to the nature of the software to seek available resources on a dynamic basis under cloud computing. Consequently, you argued that the computational access restrictions found in § 740.7(b)(2) of License Exception APP apply only to individual systems accessed remotely rather than a group of systems (or which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individual system access).



미국 상무부(DOC)

산업안전국(BIS)

Washington, DC 20230



2009년 1월 13일

수신: []

본 자문의견은 2008년 10월 15일 산업안전국(BIS)에 접수된 귀하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수출관리규정(EAR)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서신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객에게 컴퓨팅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데이터 저장하거나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 실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팅 용량의 제공 방법에는 "그리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드 컴퓨팅의 경우, 고객은 "때로는 이종이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느슨하게 연결된 컴퓨터 그룹"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리드에 접속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컴퓨팅 용량은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상호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언급에 따르면, 고객이 그리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하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보통 "오픈 소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객은 컴퓨팅 용량에 접근 시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이 실행하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산업안전국(BIS)의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하여 귀하는 2008년 11월 14일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메일에서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에 따라 배송된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는데 개별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동적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찾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따르면,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의 섹션 740.7(b)(2)에 있는 컴퓨터 접속 제한은 개별 시스템 접속의 구별이 불가능한 시스템 그룹을 제외하고 원격으로 접속되는 개별 시스템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In your request, you asked BIS to address five questions: (1)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e absence of any transfer of software or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is subject to the EAR under part 734; (2)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constitute an "activity unrelated to exports" under § 744.6 of the EAR; (3)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are "exporters" of any derivative data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and liable for export screening on that basis alone; (4) whether computational access restrictions found in § 740.7(b)(2) of License Exception APP apply to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and (5) whether the grid or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must inquire about the nationality of the customer (or user).



귀하는 산업안전국(BIS)에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1)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이전이 없는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파트 734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수출관리규정(EAR) 섹션 744.6에 따른 "수출과 무관한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가 컴퓨팅 용량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파생 데이터의 "수출업자"인지 여부 및 단지 이로 인해 수출 심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 (4)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의 섹션 740.7(b)(2)에 명시된 컴퓨팅 접속 제한이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5)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문의해야 하는지 여부.



1) "Knowledge of a circumstance... includes not only positive knowledge that the circumstance exists or is
104 AI-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외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Page 2

Advisory Opinion - [REDACTED]

(1)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e Absence of any Transfer of Software or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Is Subject to the EAR.

The service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would not be subject to the EAR as the service provider is not shipping or transmitting any commodity, software, or technology to the user. If the service provider ships or transmits software to enable use of the grid or cloud computing and that software is publicly available under § 734.3(b)(3), the software is not subject to the EAR. However, if the service provider ships or transmits software that is subject to the EAR, an "export" would occur. Similarly, if the service provider ships or transmits technology in the form of technical data (i.e., manuals, instructions, plans, etc.) or technical assistance (i.e., instructions, consulting services, etc.) that is not publicly available in order to give the user knowledge on how to access and use the computational capacity provided by grid or cloud computing, then that technology would be subject to the EAR.

(2)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Constitute an "Activity Unrelated to Exports"⁹⁹ Under § 744.6 of the EAR.

Section 744.6(a)(2) states that a U.S. person must obtain a license from BIS before performing "any contract, service, or employment that the U.S. person knows will directly assist in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missiles in or by a country listed in Country Group D:4" and that a U.S. person must obtain a license from BIS before performing "any contract, service, or employment that the U.S. person knows will directly assist in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or use of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in or by any country or destination, worldwide."

In your request, you describe the activity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as a "service," and BIS does not contest that descrip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Section 744.6(a)(2) can have broad application because it applies to activities unrelated to exports, such as services. Moreover, § 744.6(a)(2) can have broad application because it can apply to item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EAR. Thus, even if one provides a service that is not subject to the EAR, the act of providing the service may st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744.6(a)(2) if one knows¹⁾ that the service will assist in certain activities described in that section. Consequently, providing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set forth in § 744.6(a)(2) of the EAR. However, service providers must have knowledge, as that term is defined in § 772.1, that the service will directly assist in those activities described in § 744.6(a)(2) before that restriction will apply.

substantially certain to occur, but also an awareness of a high probability of its existence or future occurrence." See C.F.R. §772.1.

2페이지

자문의견 - [REDACTED]

(1)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이전이 없는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EAR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배송 또는 전송하지 않으므로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배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섹션 734.3(b)(3)에 따라 일반 대중이 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가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인 소프트웨어를 배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 "수출"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을 배송 또는 전송할 때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없는 기술 데이터(예: 매뉴얼, 지침, 계획 등) 또는 기술 지원(예: 지침, 컨설팅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용량에 접속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은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수출관리규정(EAR) 섹션 744.6에 따른 "수출과 무관한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섹션 744.6(a)(2)에 따르면 미국인은 "국가그룹 D:4에 등재된 국가에서 또는 해당 국가의 미사일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알고 있는 모든 계약, 서비스 또는 고용"을 진행하기 전에 BIS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미국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 또는 목적지에서 화학 또는 생물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모든 계약, 서비스 또는 고용"을 수행하기 전에 산업안전국(BI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에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활동을 "서비스"라고 설명하였는데, 산업안전국(BIS)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섹션 744.6(a)(2)는 서비스 등 수출과 무관한 활동에 적용되므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744.6(a)(2)는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널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가 해당 조항에 설명된 특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knowledge)하고 있는 경우²⁾, 서비스 제공 행위는 여전히 섹션 744.6(a)(2)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관리규정(EAR) 섹션 744.6(a)(2)에 명시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섹션 772.1에 정의된대로 제한이 적용되려면 해당 서비스가 섹션 744.6(a)(2)에 설명된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는 사실을 서비스 공급자가 사전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상황에 대한 인식(knowledge)이란 상황의 존재 또는 실제 발생을 확신하는 긍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해당 상황의 존재 또는 미래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인식도 포함됩니다." 연방규정집(C.F.R.) 섹션 772.1

Page 3**Advisory Opinion - [REDACTED]****(3) Whether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Are " Exporters " of Any Derivative Data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and Liable for Export Screening on that Basis Alone.**

Under § 772.1 of the EAR, an "exporter" is the "person in the United States who has the authority of a principal party in interest to determine and control the sending of items out of the United States." A "principal party in interest" is a party in a transaction that receives the "primary benefit, monetary or otherwise, of the transaction" (see § 772.1). The exporter must determine whether any licensing requirements apply and obtain the proper license or other authorization (see § 758.3 for responsibilities of parties in a standard export and routed export transaction). If a user of the grid or cloud computing service should export data stored on the computational capacity or export data resulting from use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then the user would receive the primary benefit of doing so, as opposed to the provider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Therefore, the user would be the principal party in interest, but cannot be the exporter because the user is not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bsent any agency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and a foreign principal party in interest in a routed export transaction under the EAR, the provider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the "exporter" under the EAR when the user exports data stored on the computational capacity or exports data resulting from use of the computational capacity.

(4) Whether Computational Access Restrictions Found in § 740. 7(b)(2) of License Exception APP Applies to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Section 740.7(b)(2)(i) prohibits nationals of Cuba, Iran, North Korea, Sudan, and Syria from accessing (either physically or computationally) computers and software under License Exception APP. If a computer or software has been exported or reexported to a grid or cloud service provider, and the export or reexport was done under License Exception APP or a license that contains conditions similar to § 740.7(b)(2), then the access restrictions would still apply, even if the computer or software will be used to provide a service that is not subject to the EAR.

3페이지

자문의견 - [REDACTED]

(3)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가 컴퓨팅 용량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파생 데이터의 "수출업자"인지 여부 및 단지 이로 인해 수출 심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

수출관리규정(EAR) 섹션 772.1에 따라 "수출업자"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외부로의 품목 배송을 결정하고 통제할 주요 당사자의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당사자"는 "거래에서 금전적 또는 기타 주요 이익"의 수혜자로서 거래 당사자입니다(섹션 772.1 참조). 수출업자는 협약 조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협약 또는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표준 수출 및 경로 수출 거래에서 당사자의 책임은 섹션 758.3 참조).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가 컴퓨팅 용량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컴퓨팅 용량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주된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이는 컴퓨팅 용량 공급자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해관계의 주요 당사자로 볼 수 있으나,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노선 수출 거래(routed export transaction)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급자와 외국의 주요 당사자 사이에 대리점 관계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저장된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컴퓨팅 용량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출할 때 컴퓨팅 용량 공급자는 EAR에 따른 "수출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 (4)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의 섹션 740. 7(b)(2)에 명시된 컴퓨팅 접속 제한이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되는지 여부.

섹션 740.7(b)(2)(i)은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 국민이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 규정에 따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물리적 또는 컴퓨팅을 통해) 접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가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되었고 수출 또는 재수출의 협약에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 또는 섹션 740.7(b)(2)와 유사한 조건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수행된 경우,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접속 제한이 적용됩니다.

Page 4

Advisory Opinion - [REDACTED]

The access restrictions in § 740.7(b)(2), however, were intended to apply to individual systems for which access on those individual systems can be identified. Since grid and cloud computing utilize a combination of systems at any one time among a larger set of systems, the provisions in § 740.7(b)(2) become impractical as systems that were not exported or reexported under License Exception APP could be impacted by those restrictions. Therefore, § 740.7(b)(2) does not apply to grid and cloud computing when multiple systems may be accessed at any given time, and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individual system access.

(5) Whether the Grid or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Must Inquire About the Nationality of the Customer (or User).

Since the service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through grid or cloud computing is not subject to the EAR, the service provider is not required to inquire about the nationality of the customer. Howev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 744.6(a)(2)(i) restriction affecting countries listed in Country Group D:4, the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location of the user if the service provider knows that the user will be involved in certain missile activities. Please note, though, that the service provider would not be required to inquire about the nationality of the user because § 744.6(a)(2)(i) applies to activities in or by a country in Country Group D:4 and not to nationals of D:4 countries who are located outside of D:4 countries.

Additionally, please note that you may need to obtain a license under the regulations maintained by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to provide services for certain destinations or persons.

In rendering this opinion, BIS has relied upon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s included in your letter received on October 15, 2008 and in your e-mail sent on November 14, 2008. Any deviation from the factual circumstances as slated in this opinion may result in different regulatory obligations.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Advisory Opinion, you may contact me at 202-482-0707 or cpralt@bis.doc.gov.

Sincerely,

C. Randall Pratt

Director, Information Technology Controls Division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4페이지

자문의견 - [REDACTED]

그러나 섹션 740.7(b)(2)의 접근 제한은 각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식별 가능한 개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규모 시스템 세트 중에서 여러 시스템의 조합을 언제든지 활용하기 때문에 "허가 면제-조정된 최고 성능(APP)"에 따라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시스템이 이러한 접근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섹션 740.7(b)(2)의 조항은 적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여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식별할 수 없는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섹션 740.7(b)(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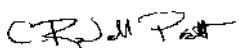
나. (5)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문의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의 국적을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가 특정 미사일 활동에 연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국가그룹 D:4에 등재된 국가에 적용되는 섹션 744.6(a)(2)(i)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섹션 744.6(a)(2)(i)의 적용대상은 국가그룹 D:4 내부 또는 해당 국가의 활동에만 적용되므로, D:4 국가 외부에 위치한 D:4 국가 국민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의 국적을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 목적지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국(BIS)의 이 자문의견은 2008년 10월 15일에 받은 귀하의 서신과 2008년 11월 14일 자의 귀하의 이메일에 포함된 정보와 진술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본 의견에 명시된 실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 규제 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문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02-482-0707 또는 cpralt@bis.doc.gov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 랜달 프랫(C. Randall Pratt)

부장, 정보기술통제부

국가안보 및 기술이전통제실(NSTTC)

美 상무부 유권해석집(2011.01.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ashington, DC 20230

January 11, 2011

Dear Ms. []:

This advisory opinion is issued in response to your March 16, 2010 request to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on behalf of [], for confirmation that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15 CFR Parts 730-774 (2010) do not requir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to obtain deemed export licenses for foreign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IT") administrators who service and maintain their cloud computing systems.

Your letter defines "cloud computing" as a model in which IT applications, such as those offered through [] allow users to access applications from the internet ("in the cloud") without needing to maintain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m. The data, software applications, and computer processing are accessed from "clouds" of online resources (including servers) rather than downloaded and stored locally on hard drives or local servers. These "clouds" consist of many computers spread out in a multitude of locations and include data stored and shared by the users of the service for applications such as e-mail, calendar, messaging, and video. In the cloud ; via data loaded onto web-based programs. Your letter states that does not monitor or screen user-generated content stored and/or shared in the cloud except when required to do so by law (pursuant to a valid law enforcement request), through automated tools such as spam-filtering or spell-checking, or with user consent (e.g., troubleshooting individual accounts). Your letter also notes that certain data stored "in the cloud" may constitute "technology" under the EAR.

As stated in BIS's January 13, 2009 Advisory Opinion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AR to grid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service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through grid or cloud computing is not subject to the EAR, since the service provider is not shipping or transmitting any commodity, software or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to the user. Because the service provider is not an "exporter," [] would not be making a "deemed export" if a foreign national network administrator monitored or screened, as described above, user-generated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DOC,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ashington, DC 20230

2011년 1월 11일

수신: []

본 자문의견은 []을 대신하여 귀하가 산업안전국(BIS)에 제출한 2010년 3월 16일 자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는 미연방규정집(CFR) 제15편 파트 730-774(2010)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유지 관리하는 외국 국적의 정보기술("IT") 관리자에 대해 간주수출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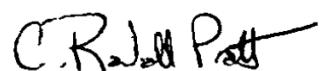
귀하의 서신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넷("클라우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모델이며, 사용자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유지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처리는 온라인 리소스(서버 포함)의 "클라우드"에서 접속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로컬 서버에 다운로드 하여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는 다양한 위치에 분산된 많은 컴퓨터로 구성되며, 웹 기반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를 통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전자 메일, 달력, 메시징 및 비디오 등)에 서비스 사용자가 저장 및 공유하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서신에 따르면, 클라우드에 저장 및/또는 공유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모니터링 또는 검사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유효한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스팸 필터링이나 맞춤법 검사와 같은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예: 개별 계정 문제 해결 시)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서신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특정 데이터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기술"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될 가능성에 관하여 산업안전국(BIS)이 2009년 1월 13일 자문의견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EAR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가 EAR의 적용대상인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사용자에게 배송 또는 전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인 []는 "수출업자"가 아니므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기술(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됨)을 모니터링하거나 검사하더라도 "간주수출"이 아닙니다.

Please note that the analysis above addresses only the facts presented in your March 16, 2010 letter. The analysis does not apply to the release by [] of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to its foreign national employees under other sets of facts. Such release may constitute a "deemed export" or "deemed reexport"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may be subject to licensing requirements.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Advisory Opinion, you may contact me at 202-482-5303 or cpratt@bis.doc.gov.

Sincerely,



C. Randall Pr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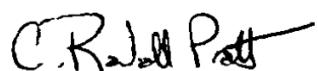
Director, Information Technology Controls Division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위의 분석은 2010년 3월 16일 자 귀하의 서신에서 제시된 사실만을 다룬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은 다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가 외국인 직원에게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인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개는 위치에 따라 "간주수출" 또는 "간주 재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허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자문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02-482-5303 또는 cpratt@bis.doc.gov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 랜달 프랫(C. Randall Pratt)

부장, 정보기술통제부

국가안보 및 기술이전통제실(NSTTC)

美 상무부 유권해석집(2014.11.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ashington, DC 20230

November 13, 2014



Re: Advisory Opinion on Cloud-based Storefronts

Dear [redacted]

This advisory opinion is in response to your email request dated September 25, 2014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cloud-based storefronts. In your email, you noted that in traditional on-line application stores, users purchase/obtain a software application through a download from the server; however, in the cloud-based storefront setting, users do not download a software application from the storefront but instead utilize the software application, including all its features and functions, in the cloud, without downloading the product.

You asked whether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s (BIS's) January 13, 2009 Advisory Opinion, in which BIS determined that the service of providing computational capacity through grid or cloud computing is not subject to the EAR because the service provider is not shipping or transmitting any commodity, software or technology subject to the EAR to the user, would apply to the cloud-based storefront described above. You also asked whether a license would be required to allow government end-users of a country not listed in Supplement No. 3 to Part 740 of the EAR to utilize software classified as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5D002 on the Commerce Control List that are eligible for export under 15 CFR 740.17(b)(2) ("ENC restricted" items).

Consistent with the January 13, 2009 Advisory Opinion, there is no export of software in the cloud-based storefront fact pattern described above. Instead of downloading the software and processing data locally, the foreign user of a U.S. server sends its data to the cloud for processing, and causes its processed data to be transmitted back to it. Although there may be export of technology in this context, there is no export of software.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DOC,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ashington, DC 20230

2014년 11월 13일



제목: 클라우드 기반 매장에 대한 자문의견

수신: [REDACTED]

본 자문의견은 2014년 9월 25일 자 귀하의 이메일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 클라우드 기반 매장에 대한 수출관리규정(EAR)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는 이메일에서 기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는 사용자가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다운로드를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매장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안전국(BIS)의 2009년 1월 13일 자 자문의견에서는 그리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공급자가 EAR이 적용되는 모든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사용자에게 배송 또는 전송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위에 설명한 클라우드 기반 매장에도 BIS의 이러한 자문의견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 중에는 수출관리규정(EAR) 파트 740의 부록 3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 최종 사용자가 상무부 통제목록(CCL)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5D002로 분류되고 미연방규정집(CFR) 제15편 740.17(b)(2)(“암호화 품목(ENC) 제한” 대상 품목에 따라 수출이 허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자문의견에 따르면, 위에 설명된 클라우드 기반 매장의 실제 유형에는 소프트웨어 수출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고 데이터를 로컬로 처리하는 대신 미국 서버를 사용하는 외국인 사용자는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클라우드로 전송 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수출은 있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수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export of software, there is no basis for a license requirement if government end users of a country not listed in Supplement No. 3 to Part 740 of the EAR utilize software described in section 740.17(b)(2) if it is located on a server in the United States. Please also note that software described in section 740.17(b)(2) that has been classified by BIS may be exported under License Exception ENC to a non-government end user in any destination other than Sudan, Syria, Iran, Cuba or North Korea, for purposes of creating a cloud-based storefront. If the software is accessed and utilized by government end users, no reexport of the software would take place, consistent with the analysis above.

Sincerely,



C. Randall Wheeler

Director, Information Technology Controls Division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

202-482-5303

수출관리규정(EAR) 파트 740의 부록 3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 최종 사용자가 미국 서버에 존재하는 섹션 740.17(b)(2)에 설명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수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요건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국(BIS)에 의해 분류되고 섹션 740.17(b)(2)에 설명된 소프트웨어는 "허가 면제-암호화 품목(ENC)"에 따라 수단, 시리아, 이란, 쿠바 또는 북한 이외의 목적지에 있는 비정부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기반 매장 생성 목적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최종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재수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Randall Wheeler)

C. 랜달 휠러(C. Randall Wheeler)

부장, 정보기술통제부

국가안보 및 기술이전통제실(NSTIC)

202-482-5303

日 재단법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13.6.26)

平成25年6月26日

一般財団法人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な技術情報を、外国のサーバーに保管する場合等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

ネットワーク環境やIT技術の進展に伴い、ITコストの削減、IT運用効率の向上、又は災害時に備えた事業継続計画（BCP）の対策の一環として、従来、法人、教育機関等の組織又は個人（以下総称してサービス利用者という）で保有・管理するコンピュータ（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又はサーバー：以下総称してサーバーという）に技術情報を保管していたものを、外部の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等を提供する会社（以下サービス提供者という）が保有・管理している外国のサーバーに技術情報を保管して利用する場合等（以下総称してストレージサービスという）が増える傾向にある。

一方、昨今サイバーテロ攻撃等により、民間企業のみならず官庁においてもサーバーに保管している情報が盗み取られる事象があり、情報流出に対する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下、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な技術情報が、サービス提供者や第三者により不正に閲覧・取得されるリスクの低減策として、下記の通り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を示す。

記

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

経済産業省は、ストレージサービスにおけるサービス利用者とサービス提供者との間の契約について、一般的にはサービス利用者が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に技術情報を預けることを目的とした契約であるとした上で、サービス利用者からサービス提供者への技術提供を目的とした取引ではない限りにおいて、外為法第25条で規定する役務取引には該当しないという解釈をとっている。

しかしながら、サービス提供者が不正に第三者若しくはサービス提供者自身によって容易にサービス利用者の技術情報の閲覧・取得ができるようなストレージサービスの運用を行う場合、又は第三者若しくは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ビス利用者の事前の了承なしに、不正にサービス利用者の技術情報を閲覧・取得する場合には、安全保障輸出管理上、機微な技術情報が流出するおそれがある。

したがって、サービス利用者は、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な技術情報のリスク度合いに応じて、以下の事項に基づきストレージサービスを利用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013년 6월 26일

일반재단법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기술정보를 외국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

네트워크 환경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비용 절감, IT 운용 효율 향상 또는 재해상황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인, 교육 기관 등의 조직 또는 개인(이하 총칭하여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컴퓨터(개인 컴퓨터 또는 서버: 이하 총칭하여 “서버”라 한다)에 기술 정보를 보관하던 기존 방식에서 외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외국 서버에 기술 정보를 보관하여 이용하는 방식 등(이하 총칭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으로 변경되는 추세다.

한편, 최근 사이버테러 공격 등으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도 서버에 보관하던 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기술정보를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취득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유의할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내 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

경제산업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기술 정보를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 한 외환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역무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자신에 의해 용이하게 서비스 이용자의 기술 정보를 열람·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했을 경우, 또는 제3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부정하게 서비스 이용자의 기술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보장 수출통제상 기밀 기술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는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기술정보의 위험도에 따라 다음 사항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サービス利用者は、以下の措置を講じる。

1) サービス利用者とサービス提供者との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係る契約の中で、サービス提供者との取引は

情報の保管であり、犯罪捜査の裁判所命令、サービスを運営するために不可欠等による正当で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サービス提供者はサービス利用者の事前の了承なしにサービス利用者が保管する情報を閲覧・取得することはないことが記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

- 2) ファイヤーウォール等、サービス提供者によって第三者からの情報の閲覧・取得を防止する情報セキュリティ上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
- 3) 懸念のある国・地域にあるサーバーに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度の高い技術情報を置いて、その技術情報が懸念のある国・地域の政府機関等によって閲覧・取得され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も、当該技術情報の安全保障輸出管理上のリスク度合いに応じ、サービス提供者に対し情報を保管する国・地域を指定するなどの対策を講じること。

なお、サービス利用者は上記の1)から3)の全て又は一部に代え、保管対象とする技術情報の重要性、機密性、その他安全保障輸出管理以外の事由も勘案し、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に技術情報を暗号化して保管することも有効な措置である。

(2)サービス利用者は、サービス提供者のストレージサービスの運用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知った場合、ただちにサービス提供者に対し、情報の移転の禁止、廃棄などを命ずるとともに、同サービス提供者との契約を停止してサービスを利用しない、又は同サービス提供者が管理するサーバーから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な情報を削除し、以降保管しないなど適切な対策を講じる。

- 1) サービス提供者が情報を保管するサーバー(情報をバックアップするサーバーを含む)の設置国・地域が懸念国・地域である場合。
- 2) 犯罪捜査に伴う裁判所命令等の正当な理由なしに、当該国・地域の政府機関等が、サーバーの中の情報を自由に閲覧・取得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を知った場合、又は実質上、自由に閲覧・取得できる状態にあることを知った場合。
- 3) サービス利用者の事前の了承なしに、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ビス利用者の情報を閲覧・取得している、又は第三者に対して情報の閲覧・取得をさせていることを知った場合。

(1)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 중, 서비스 제공자와의 거래는 정보의 보관이며, 범죄 수사 관련 법원 명령,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불가결한 상황 등에 의한 정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자가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2)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정보의 열람·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과 같은 정보 보안상의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 3) 불안 요소가 있는 나라·지역에 둔 서버에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정도가 높은 기술정보를 두어 그 기술 정보가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지역의 정부기관 등에 의해 열람·취득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당해 기술정보의 안전보장 수출통제상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1)부터 3) 전부 또는 일부의 대체 방법으로 보관대상인 기술 정보의 중요성, 기밀성, 기타 안전보장 수출관리 이외의 사유도 감안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기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조치이다.

(2)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이전의 금지, 폐기 등을 명함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로부터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고 이후 보관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1)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정보를 백업하는 서버 포함)의 설치국가·지역이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지역인 경우.
- 2) 범죄 수사에 따른 법원 명령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국·지역 정부 기관 등이 서버 안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취득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열람·취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았을 경우.
- 3)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열람·취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

なお、経済産業省は、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に関する規定として、平成25年6月21日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25条第1項及び外国為替令第17条第2項の規定に基づき許可を要する技術を提供する取引又は行為について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を発出し、安全保障貿易管理のホームページ上において本件に関するQ&A（以下URL）を公表しているので、同サービスを利用する際には事前に必ず確認すること。経済産業省のQ&Aは、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の形態や使用技術の変化に伴って随時改正することとされており、また、同様の理由で本ガイドラインも改訂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その点留意されたい。これらを確認してもなお疑義がある場合には、経済産業省安全保障貿易審査課に照会すること。

【経済産業省 安全保障貿易管理ホームページのQ&A（技術関係）】

<http://www.meti.go.jp/Dolicv/anpo/cianda25.html>

以上

또한 경제산업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21일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5조 제1항 및 외국환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일부를 개정하는 통지”를 정리하여 안전보장 무역통제 홈페이지상에서 본건에 관한 Q&A(이하 URL)를 공표하였으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경제산업성의 Q&A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나 사용기술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이유로 본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 바람.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안보무역심사과에 문의할 것.

【경제산업성 안전보장 무역통제 홈페이지 Q&A (기술관련)】

<http://www.meti.go.id/Dolcv/anpo/cianda25.html>

이상

日 CISTEC 수출통제위원회 사무국(2023.11.30. 기준)

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に関する役務通達改正について

CISTEC輸出管理委員会事務局

6月21日に、経済産業省から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に関する「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25条第1項及び外国為替令第17条第2項の規定に基づき許可を要する技術を提供する取引又は行為について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以下、「改正役務通達」と記載)が公布されました。

改正役務通達の内容を4月9日に公示された意見公募の際の内容と比べつつ解説し、さらに新たに経済産業省のホームページで公表されたQ&A、及びCISTEC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安全保障輸出管理に係る機微な技術情報を、外国のサーバーに保管する場合等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以下、「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と記載)について解説します。

1. 改正役務通達

改正役務通達で、1(3)用語の解釈に「タ」が追加され、「タ 提供とは、他者が利用できる状態に置くことをいう。なお、いわゆる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の解釈は、別紙1-2のとおりとする。」と「提供」が定義されました。意見公募では、「タ 提供とは、他者にとって利益となるものをその者が利用できる状態に置くことをいう。なお、いわゆる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の解釈は、別紙5のとおりとする。」となっていましたが、それから「利益となるものを」が削除されました。これは、改正役務通達の「提供」の定義が「他者にとって利益となるもの」以外を提供する場合も規制の対象となり得ることが考慮されたものです。

また意見公募時点での「別紙5」となっていたものが「別紙1-2」になった理由は、改正前の役務通達の別紙1に解釈があり、別紙2-2以降に事務手続き等があることから、別紙1に追加する形で別紙1-2となりました。

この「タ」が追加された主な理由は、いわゆる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サービスのSaaS、つまり「プログラムをダウンロードされることなく他者に利用させること」も規制対象とするためであり、「提供」概念の拡張を意図したものです。

2. ストレージサービス

「国内のサービス利用者が、外国のサーバーに技術情報を保管して利用する場合で、その外国のサーバーを運用するサービス提供者が、その技術情報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サービス利用者から、サービス提供者への技術提供となるのか。」という所謂ストレージサービスの課題は、改正役務通達別紙1-2(1)で規定され、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55、60、61及び62で解説されています。で解説されています。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용역 지침 개정에 대해

CISTEC 수출통제위원회 사무국

6월 21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5조 제1항 및 외국환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일부를 개정하는 지침”(이하, “개정 용역 지침”이라고 기재)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용역 지침의 내용과 4월 9일에 공시된 의견공모 시의 내용을 비교해 해설하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공표된 Q&A 및 CISTEC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전보장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밀 기술정보를 외국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기재)에 대해 해설합니다.

1. 개정 용역 지침

개정 용역 지침에서 1 (3) 용어의 해석에 “너목”이 추가되어 “너 제공이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해석은 별지 1 — 2와 같다”로 “제공”이 정의되었습니다. 의견 공모에서는, “너 제공이란 타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또,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해석은 별지 5와 같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내용에서 “이익이 되는 것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개정 용역 지침의 “제공”的 정의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외의 것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의견 공모 시점에서 “별지 5”로 되어 있었으나 “별지 1 — 2”로 변경된 이유는 개정 전의 용역 지침 별지 1에 해석이 있고, 별지 2 — 2 이후에 사무 절차 등이 있었으므로 별지 1에 추가하는 형태로 별지 1 — 2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너목”이 추가된 주된 이유는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SaaS, 즉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채 타인이 이용하는 것”도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며, “제공”的 개념을 확장하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국내 서비스 이용자가 외국 서버에 기술정보를 보관하여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 외국 서버를 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기술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은 개정 용역 지침 별지 1 — 2 (1)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Q&A 55, 60, 61 및 62에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URL : <http://www.meti.go.jp/policy/anpo/qanda25.html>)

さらに**CISTEC**のホームページに「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を掲載し、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注意事項を提示しています。

(URL : <http://www.cistec.or.jp/export/jisyukanri/index.html>)

(1) 役務通達別紙1 ー2(1)

基本的な考え方は、意見公募で公示されたものと変わりはありません。内容を整理すると以下の通りとなります。

・ストレージサービスを利用するための契約は、サービス利用者が自ら使用するために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に情報を保管することのみを目的とする契約である限りにおいて、(省略)特定技術が保管される場合であっても、原則として外為法第25条第1項に規定する役務取引に該当せず、同条に基づく許可を要しない。

(「特定技術」は外為令別表に該当の技術の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以下同じ。)

・ただし、以下の場合は外為法第25条第1項に定める役務取引に該当する。

- > 保管した特定技術をサービス提供者等が閲覧、取得又は利用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契約を締結する場合
- > 契約を開始した後に、保管した特定技術をサービス提供者等が閲覧、取得又は利用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にもかかわらず、契約関係を継続する場合
- > サービス利用者が第三者に特定技術を提供するためにストレージ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

(2) 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

これら例外的に外為法第25条第1項に定める役務取引に該当する場合に関し、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55、60、61及び62で以下概要の解説が加えられています。

Q&A55 : サービス利用者はサービスを利用する上で「保管する技術情報の機微性、当該サービスの契約文面、セキュリティレベル、サーバーの物理的設置国等に関する公開情報」を契約前に確認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リスト規制に該当するような機微な技術情報を保管する場合は、それらの確認が不可欠となります。

Q&A60 : 「法令に基づく司法機関の要請がある場合、サーバーに保管された情報を開示する可能性が契約書に記載されている場合」は、「閲覧、取得又は利用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当らないとしています。

Q&A61 : セキュリティ対策の目的で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バーに保管された情報を閲覧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契約書に記載されている場合についても、契約が「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ビス利用者の事前の了承を得て、サービス利用者が保管する情報を閲覧する可能性がある旨の契約」であれば、「閲覧、取得又は利用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当らないことが記載されています。

(URL : <http://www.meti.go.jp/policy/anpo/qanda25.html>)

(URL : <http://www.meti.go.jp/policy/anpo/qanda25.html>)

또한 CISTEC 홈페이지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URL : <http://www.cistec.or.jp/export/jisyukanri/index.html>)

(1) 용역지침별지1 – 2 (1)

기본적인 개념은 의견공모로 공시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 한해서, (생략) 특정기술을 보관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외환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조에 근거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기술”은 외환령 별표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로 사용된다. 이하 동일)

- 다만, 이하의 경우는 외환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는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 › 보관한 특정기술을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열람, 취득 또는 이용할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계약을 개시한 후에 보관한 특정기술을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열람, 취득 또는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 서비스 이용자가 제3자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Q&A

예외적으로 외환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Q&A55, 60, 61 및 62에 이하 개요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Q&A55 :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관하는 기술 정보의 기밀성, 해당 서비스의 계약문 측면, 보안 레벨, 서버의 물리적 설치국가 등에 관한 공개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며,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는 민감한 기술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Q&A60 : “법령에 근거한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열람, 취득 또는 이용할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A61 : 보안 대책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도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서, 서비스 이용자가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계약”이라면, “열람, 취득 또는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URL : <http://www.meti.go.jp/policy/anpo/qanda25.html>)

Q&A62 :「保管した特定技術の削除に必要な時間を経過した時点をもって、」の「必要な時間」の程度について、一定の期間の基準はないものの、保管した特定技術情報をサービス提供者等が閲覧、取得又は利用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時点から、直ちに対応を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3) 「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

サービス利用者が、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に保管している技術情報を第三者あるいはサービス提供者に閲覧・取得又は利用されることを防ぐために、どのような点に注意してストレージサービスを利用し、自主管理すべきかを解説する目的で、**CISTEC**のホームページに「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を掲載しました。

これは、経済産業省の改正役務通達及び**Q&A**を補完する意味もあり、経済産業省の意見も取り入れた上で作成しています。

「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の（1）では、サービスを利用する前に、サービス利用者が契約等で確認しておくべき事項等を以下通り、記載しています。

- 1) 正当で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またサービス利用者の事前の了解なしにサービス利用者が保管する情報を閲覧・取得されることがないこと
- 2) 確実な情報セキュリティ上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こと
- 3) サーバー設置国の政府機関等によって閲覧・取得されることのないこと

懸念がある場合は、サーバー設置国をサービス提供者に指定するなどの措置を講じること

また、従来**CISTEC**輸出管理品目ガイダンス（役務取引）の**Q&A**に記載のある「暗号化によって技術が実質的にサーバー運用会社に移転されない場合は許可不要」と記載があることにより、サーバーに保管する技術情報の暗号化によってリスク回避を行っているサービス利用者を考慮し、暗号化によるリスク回避方法も選択肢の一つとして示されています。

（2）では、サービスの利用を開始した後に、以下の場合においては、サービス提供者に情報の移転の禁止、廃棄などを命じ、サービス利用者は契約の停止、機微な情報の削除等の適切な対策を講じることが記載されています。

- 1) 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設置場所が懸念国・地域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場合
- 2) 犯罪捜査等の正当な理由なしに政府機関等が自由に情報を閲覧・取得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あるいは閲覧・取得できる状態にあることがわかった場合
- 3) サービス提供者が情報を閲覧、取得しているあるいは第三者に情報を閲覧・取得させていることを知った場合

Q&A62 : ”보관한 특정기술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경과한 시점을 기점으로”의 “필요한 시간”의 정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기준은 없지만, 보관한 특정기술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열람, 취득 또는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제3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열람·취득 또는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할 목적으로 CISTEC의 홈페이지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성의 개정 용역 지침 및 Q&A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어 경제산업성의 의견도 반영한 후에 작성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의 (1)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 등으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 1) 정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양해 없이 서비스 이용자가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일이 없을 것
- 2) 확실한 정보 보안 조치가 취해야 할 것
- 3) 서버 설치국의 정부 기관 등에 의해 열람·취득 당하는 일이 없을 것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 서버 설치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또한 기존 CISTEC 수출통제품목가이드(용역거래)의 Q&A에 기재된 “암호화함으로써 기술이 실질적으로 서버운영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라는 기재로 인해 서버에 보관하는 기술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해, 암호화를 통한 위험 회피 방법도 선택지 중 한 가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후 이하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이전 금지, 폐기 등을 명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 정지, 민감한 정보 삭제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 1)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설치 장소가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지역임을 알았을 경우
- 2) 범죄 수사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기관 등이 자유롭게 정보를 열람·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 3)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열람·취득하고 있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정보를 열람·취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ここでいう懸念国・地域とは、国連武器禁輸国等の懸念国・地域ではなく、それぞれの国・地域の法令等で、サーバーの中の技術情報を、特定の犯罪捜査等による正当な理由がないまま、自由に閲覧・取得される可能性のある国・地域を指しています。懸念される国・地域を判断するには、サービス提供者との契約内容の確認だけでなく、Web等で一般的に公開されている情報による判断も必要になると考えます。

「ストレージサービス利用における自主管理ガイドライン」にある事項は、例えば情報資産の保全、個人情報保護等の情報セキュリティ上の観点など、安全保障輸出管理以外の観点でも重要となりますので、可能な限り守った上で、ストレージサービスを利用され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3.SaaS(Software as a Service)

「国内のサービス提供者が、外国のサービス利用者にアプリケーションサービスを提供する場合、そのサービスの提供は規制される技術提供となるのか。」という所謂SaaSの課題は、改正役務通達別紙1－2(2)で規定され、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56、57、58、及び59で解説されています。

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に公表されている意見公募の結果で、経済産業省はSaaSを規制する必要性や目的として、「現在のSaaS技術においては、安全保障上懸念のあるプログラムを、ダウンロードさせることなく他者に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ダウンロードを伴わないという提供方式の違いによって、リスト規制及び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る役務提供の安全保障上の懸念が低減することはないため、規制対象であることを明確にするものです。」と説明しています。実態として懸念されるサービスが確認されている訳ではありませんが、何か懸念されるようなサービスが発生、あるいは見つかった場合に対処しうる法令上の措置が必要との考え方に基づいて、役務通達が改正されました。

ただ、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で、誰にでも制限なく提供されるサービスは、役務取引許可が不要となることや、必ずしも全てのプログラムを該非判定の対象としなくても良いこと等、多くのサービスにおいて、産業界の輸出管理の負担を軽減することも考慮されています。

(1) 役務通達別紙1－2(2)

役務取引許可申請の時点が明確になったことや一部の表現は修正されていますが、大きくは意見公募時点の内容と変化はなく、サーバー上に存在するプログラム(アプリケーションソフトウェア等)を、インターネットを介して、他者が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なく利用できる状態にするサービスは、規制の対象となるものの、貿易外省令第9条第2項第十四号イの要件(以下、市販プログラム特例と記載)に該当する場合は、役務取引許可は不要となっています。

여기서 말하는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지역이란, UN의 무기수출 금지국 등의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지역이 아닌 각각의 국가·지역의 법령 등으로, 서버 안의 기술 정보를 특정의 범죄 수사 등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롭게 열람·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국가·지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내용 확인 뿐만 아니라, Web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의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주 관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면 정보자산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보안상의 관점 등, 즉 안전보장 수출관리 이외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러한 사항을 지키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SaaS(Software as a Service)

“국내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서비스 이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제공은 규제되는 기술 제공에 해당하는가?”와 같은 이른바 SaaS 안건은 개정 용역 지침 별지(2)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Q&A56, 57, 58 및 59에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표된 의견공모 결과로 경제산업성은 SaaS를 규제할 필요성과 목적으로 “현재 SaaS 기술에서는 안보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채 타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다른 제공 방식이라 해도 리스트 규제 및 캐치올 규제 대상인 용역 제공 시 안보상의 불안 요소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려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인 형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우려되는 서비스가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령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용역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Q&A에서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용역거래 허가가 불필요해지고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을 그 해당 여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것 등, 많은 서비스에 있어서 산업계의 수출통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용역 지침 별지 1 –2 (2)

용역거래 허가신청 시점이 명확해진 것과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지만 의견 공모 시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버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타자가 다운로드하지 않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서비스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무역외성(省)령 제9조 제2항 제14호 가목의 요건(이하 시판 프로그램 특례와 기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経済産業省ホームページのQ&A

改正役務通達だけではわからない点が**Q&A**で明らかにされており、特に**Q&A58**と**Q&A59**は、規制の対象や該非判定の必要性を理解する上で重要なものになっています。

Q&A56： 経理、会計、人事といった一般事務にのみ用いるプログラムは、大量破壊兵器及び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用途要件に当らず、用途が明らかであるため、需要者要件にも当らないとしています。これは、核兵器等開発等告示第二号、第三号が根拠になっています。

Q&A57： プログラムの機能に本質的な変更のないカスタマイズを行う場合は、市販プログラム特例の対象として良いとしています。例えば、ある企業向けに会計アプリケーションサービスを提供する場合に、経理上使用する帳票類をその企業専用の帳票で出力されるよう、カスタマイズする場合がありますが、その場合においても、会計アプリケーションの本質的な変更はないと見做し、市販プログラム特例が適用されます。

Q&A58： SaaSにおいて、規制の対象となるのは「他者が利用できる状態」にあるアプリケーションプログラムの機能に限定されることが、この**Q&A**で明確になっています。従って国内のサーバーの、os、ミドルウェア、通信用の暗号、サーバー運用の為の暗号等、背後で動作しているプログラムは該非判定の際の対象とする必要がありません。アプリケーションプログラムであっても「他者が利用できる状態」にないものは該非判定をする必要はあります。例えば**Q&A58**にある「人事ソフト」が①勤怠管理、②給与計算及び③経費計算の機能に分かれていたとして、海外の現地法人出向者には、それら機能のうち①勤怠管理の機能しか使わせていないとします。この場合、該非判定が必要となるのは、「他者(=海外の現地法人出向者)が利用できる状態」である①勤怠管理の機能だけとなり、②給与計算及び③経費計算は、該非判定を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また、アプリケーションプログラムの中にある暗号が市販されているものであれば、非該当となります。

Q&A59： どの企業、どの者に対しても制限なく提供されるサービスは、市販プログラム特例によって評価できるとしています。特にコンシューマ向けのショッピングサービスのような多くのサービスは、この**Q&A**によって役務取引許可を取得する必要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4. 結び

今回の改正役務通達及び**Q&A**が出たことにより、ストレージサービスの課題とSaaS等の課題について、一定の解釈が明確になりました。

(2)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Q&A

개정 용역 지침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Q&A를 통해 명확해졌으며, 특히 Q&A58과 Q&A59는 규제의 대상과 그 해당 여부 판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Q&A56 : 경리, 회계, 인사 등 일반 사무에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 캐치올 규제의 용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요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핵무기 등 개발 등 고시 제2호, 제3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Q&A57 : 프로그램의 기능에 본질적인 변경이 없는 커스터마이즈를 실시하는 경우 시판 프로그램 특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회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리 상 사용하는 장표류를 그 기업 전용의 장표로 출력하도록 커스터마이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회계 애플리케이션의 본질적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판 프로그램 특례가 적용됩니다.

Q&A58 : SaaS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이 이 Q&A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서버, OS, 미들웨어, 통신용 암호, 서버 운영을 위한 암호 등 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여부 판정 시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해당 여부 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Q&A58에 있는 ‘인사소프트’가 ①근태관리, ②급여계산 및 ③경비계산의 기능으로 나뉘어 있고, 해외의 현지법인 파견자는 그 기능 중 ①근태관리 기능만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여부 판정이 필요한 것은 “타인(=해외의 현지법인 파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①근태관리 기능만 해당되고, ②급여계산 및 ③경비계산은 해당 여부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암호가 시판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A59 : 어떤 기업,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판 프로그램 특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대상 쇼핑 서비스와 같은 많은 서비스는 이 Q&A를 통해 용역거래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 마무리

이번 개정 용역 지침 및 Q&A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과 SaaS 등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ストレージサービスの課題については、まず信頼できるサービス提供者を選択する等、安全保障輸出管理の面に限らず、情報セキュリティ管理の面でも、十分なリスク管理を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後とも、どのように効率よくリスク管理を行い、どのような状況を捉えて懸念のある場合と見做すのかなど、**CISTEC**委員会活動の中で情報共有を図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また、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の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国際標準化については、**ISO/IEC 27017**（クラウドセキュリティ国際標準）で継続的に議論されており、**2015年**に発効し、それと同時にクラウドセキュリティの国際認証が開始される予定に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国際的にセキュリティの国際標準化が進めば、安全保障輸出管理の規定も、その基準に合わせたものに変わる可能性もあると考えています。この動向についても継続的にフォロー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SaaSについては、一定の解釈が明確になったものの、PaaS（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バー、OS、及びミドルウェアを提供する**Platform as a Software**）やIaaS（サービス提供者がサーバー及びOSを提供する**Infrastructure as a Service**）についても、経済産業省は、ホームページの**Q&A55のA55**で「諸外国の規制の動向等も踏まえつつ、必要に応じて通達及び**Q&A**を改正していく予定」と言っていることもあり、よりはっきりとした形で解釈を提示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昨年**12月**にワッセナーアレンジメント（WA）の規制リストからOS、ミドルウェア等コンピュータの使用のプログラムが除外されました。将来、このWAの規制リスト変更が、貨物等省令等の法令に反映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PaaS、IaaSの解釈にも影響があるものと思われます。

これらの外部環境の変化を見つめ、制度専門委員会や情報通信専門委員会の活動の中で、現状の規制で困る事例、不明確な解釈の事例を積み上げていき、経済産業省とも継続的に協議しながら、より効率的でわかりやすい規制のあり方を追求していきます。

以上

【制度専門委員会、情報通信専門委員会事務局（**CISTEC**調査研究部主任研究員 村井則彦）】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등 안보 수출통제 측면 뿐 아니라 정보 보안관리 측면에서도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야 할지 등 CISTEC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는 ISO/IEC 27017(클라우드 보안 국제 표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2015년에 발효하고, 그와 동시에 클라우드 보안의 국제 인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면 안전보장 수출통제의 규정도 그 기준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aa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명확해졌지만, PaaS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 OS 및 미들웨어를 제공하는 Platform as a Software) 및 IaaS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 및 OS를 제공하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의 Q&A55의 A55에서 “여러 외국의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지침 및 Q&A를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린바 향후 보다 분명한 형태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바세나르 체제(WA)의 규제 리스트에서 OS, 미들웨어 등 컴퓨터 사용의 프로그램이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이 WA의 규제 리스트 변경이 화물 등 성(省)령 등의 법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PaaS, IaaS의 해석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제도전문위원회나 정보통신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규제에서 곤란한 사례, 불명확한 해석의 사례를 축적하고, 경제산업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알기 쉬운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추구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도전문위원회, 정보통신전문위원회 사무국
(CISTEC 조사연구부 주임연구원 무라이 노리히코(村井則彦))】

부록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등급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 지역 나의1, 나의2 지역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심사면제 -	심사면제 -	심사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매 또 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 출자가 외국화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 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 (단 수출자가 본점)	가 지역 나의1 지역	허가면제 허가면제 서류 면제*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서류면제 서류 면제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서류면제 서류 면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 · 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 · 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 기업인 경우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 · 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 · 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 기업인 경우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	
	나의1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10일*)	10일	5일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	○	○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 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 면제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	-	○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 · 초민감 기술을 가 지역에 견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면제.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	-	○		
	사용자포괄허가 (가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사용자포괄허가 (나의1 지역)	기간 3년	3년	3년 ○ 통제번호 5자리		
포괄 수출 허가	품목포괄허가 (나의2 지역 제외)	기간 -	△	○ ○ 통제번호 5자리		
	정기보고 주기	실적보고 운영보고 허가면제 (나의2지역 제외)	반기 연간 -	3년 3년 3년 연간 연간 ○ ○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반기 연간		

* 수출품목 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품 수출시

※ 민감 · 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수출허
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

※ 수출허가 면제일 경우 사전신고 시 수출거래보고 생략 가능

AI·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외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2025년 12월 발행

발 행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기획저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Tel : 02-2188-2428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외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해외진출지원 ▷ 수출정보
- 본 안내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요청드립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팀) Tel : 02-2188-2428